

---

2022년도 영월군 종합감사  
처 분 요 구 서

---



강 원 도  
(감 사 위 원 회)

## □ 처분요구 목록

| 연번 | 소 관           | 시행 연도   | 제 목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요구양형                    |
|----|---------------|---------|-----------------------------------|-------------------------------|---------------------|----------------------------------------------|-------------------------|
|    |               |         |                                   |                               | 내역                  | 금 액<br>(천 원)                                 |                         |
| 계  |               |         |                                   | 계 35<br>시정 27<br>주의 6<br>통보 2 | 계<br>회수<br>감액<br>추징 | 2,210,937<br>783,229<br>1,242,862<br>184,846 | 계 33<br>경징계 1<br>훈 계 32 |
| 1  | ♣과            | '20~'21 | 인사운영 부적정                          | 시정                            | -                   | -                                            | 훈 계 3                   |
| 2  | ♣과            | '19~'22 | 육아휴직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 시정                            | 회수                  | 15,717                                       | -                       |
| 3  | ◎실            | '14~'22 | 소송비용회수 소홀                         | 시정                            | 회수                  | 22,113                                       | -                       |
| 4  | ◇과            | '19~'22 | 노인복지사업 추진부적정                      | 시정                            | 회수                  | 4,914                                        | 훈 계 2                   |
| 5  | ◇과            | '19~'22 | 어린이집 지도감독 및 양육수당 환수 소홀            | 시정                            | 회수                  | 18,598                                       | 훈 계 1                   |
| 6  | ◇과            | '19~'22 | 청소년 업무 추진 소홀                      | 시정                            | 회수                  | 616                                          | -                       |
| 7  | ◎과            | '19~'22 | 수상레저안전법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              | 시정                            | -                   | -                                            | 경징계 1<br>훈 계 1          |
| 8  | ◆과            | '19~'22 | 자동차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                  | 시정                            | -                   | -                                            | 훈 계 1                   |
| 9  | ◎과            | '19~'22 | 선바위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추진 부적정             | 주의                            | -                   | -                                            | -                       |
| 10 | ★과            | '19~'22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통보 의무 이행 소홀            | 시정                            | -                   | -                                            | 훈 계 1                   |
| 11 | △과,<br>♣과     | '19~'22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및 집행 부적정               | 통보                            | -                   | -                                            | -                       |
| 12 | ◎과            | '20~'22 | 법인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주의                            | -                   | -                                            | 훈 계 6                   |
| 13 | ◆실            | '19~'22 | 지목변경 사업 적극 발굴을 통한 군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실현 | 통보<br>(모범)                    | -                   | -                                            | -                       |
| 14 | △과            | '18~'22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실태조사 부적정              | 시정                            | -                   | -                                            | 훈 계 2                   |
| 15 | ▽과            | '19~'22 | 임대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공제 업무 소홀           | 시정                            | 회수                  | 665,144                                      | -                       |
| 16 | ▽과 등<br>9개 부서 | '19~'22 |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소홀         | 시정                            | -                   | -                                            | -                       |

| 연번 | 소 관          | 시행<br>연도 | 제 목                             | 행정상<br>조 치 | 재정상 조치 |              | 요구영향  |
|----|--------------|----------|---------------------------------|------------|--------|--------------|-------|
|    |              |          |                                 |            | 내역     | 금 액<br>(천 원) |       |
| 17 | ◎과           | '19~'2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br>부적정         | 주의         | -      | -            | 훈 계 1 |
| 18 | ▽과           | '17~'22  | 지방세 부과 소홀                       | 시정         | 추징     | 166,920      | -     |
| 19 | ◆과           | '18      |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소홀                  | 시정         | 추징     | 17,926       | -     |
| 20 | △과           | '20~'21  |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br>융자 추진 부적정   | 시정         | -      | -            | 훈 계 1 |
| 21 | ◎과           | '19~'22  | 전국민화공모전 지원 및 수상작품<br>관리 부적정     | 시정         | -      | -            | 훈 계 2 |
| 22 | ❖센터          | '20~'21  | 2020년 노후 양식장 현대화<br>시설지원 추진 부적정 | 시정         | -      | -            | -     |
| 23 | △과           | '19~'21  | 영월군 드론산업 육성 사업<br>추진 부적정        | 시정         | 회수     | 2,296        | 훈 계 4 |
| 24 | ❖센터          | '19      |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지원<br>사업 추진 부적정   | 주의         | -      | -            | -     |
| 25 | △과           | '19~'21  |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br>사업 추진 부적정      | 주의         | -      | -            | -     |
| 26 | △과           | '21      |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br>추진 부적정       | 시정         | -      | -            | -     |
| 27 | ◁과           | '19~'22  | 불법 전용농지 사후관리 소홀                 | 시정         | -      | -            | -     |
| 28 | Ⓜ과           | '19~'22  | 강변저류지 정원 조성사업 추진<br>부적정         | 시정         |        |              | 훈 계 1 |
| 29 | △과           | '20~'22  |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br>부적정        | 시정         | 감액     | 1,147,490    | -     |
| 30 | ●소           | '19~'22  | 무릉도원(토실) 마을하수도 정비<br>사업 추진 부적정  | 시정         | 감액     | 95,372       | 훈 계 2 |
| 31 | ▽과 등<br>9개부서 | '18~'22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br>산 소홀        | 시정         | 회수     | 53,831       | -     |
| 32 | ◎과           | '18~'22  | 봉래산 전망·편의시설 조성사업<br>추진 부적정      | 시정         | -      | -            | 훈 계 4 |
| 33 | ◀과           | '19~'22  | 건축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 주의         | -      | -            | -     |
| 34 | △과           | '19~'22  | 드론비행시험 교육장 조성사업 추<br>진 부적정      | 시정         | -      | -            | -     |
| 35 | △과           | '19~'22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업<br>무 추진 부적정   | 시정         | -      | -            | -     |

[일련번호: 01]

# 강 원 도

##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인사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영월군 ♣과 지방○○ AA

② 영월군 ♠읍(전 ♣과) 지방○○ AB

③ 영월군 ♣과 지방○○ AC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영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운영업무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 직무대리 지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 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서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 이상 파견 등으로 인한 5급 이하 공무원 결원의 보충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54조에 따르면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하, ‘사고’라 한다.), 결원이 발생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61조에 따라 부단체장에게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국장이 대리하고, 실·국·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하며,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고 되어 있고, 직속·소속 기관 등의 장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62조에서는, 위 161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고,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 직제상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과의 직제순위에 의한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군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과가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동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은 부서장들의 공로연수 및 인사발령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 등의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하고, 파견 등에 의해 결원이 발생된 경우 별도정원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했어야 하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및 「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승진소요연수가 부족하여 해당 직급에 승진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대하여 직제 순위에 의한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해야 하고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2]와 같이 부서장들의 공로연수 및 인사발령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 등의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하고, 파견 등에 의해 결원이 발생될 경우 별도정원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하여야 했으며, 승진 소요연수가 부족하여 해당 직급에 승진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 법정 직무대리로 발령하여야 할 뿐아니라, 승진소요연수가 부족한 공무원이 없음에도 임의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임용 발령한 사실이 있다.

[표 2] 영월군 지정 직무대리 운영현황

| 전임자          | 현직급<br>(퇴직일/<br>직급승진일) | 대상공석<br>직위            | 법 정<br>직무대리     | 지정직무대리       |     |              |                                    |               | 5급<br>승진일 |
|--------------|------------------------|-----------------------|-----------------|--------------|-----|--------------|------------------------------------|---------------|-----------|
|              |                        |                       |                 | 직무대리<br>전 직위 | 성명  | 직무대리<br>당시직급 | 기간                                 | 당시승진<br>후보 순위 |           |
| ○○○<br>(퇴직)  | 농업5급<br>(’20.6.30.)    | ○면장<br>직무대리<br>(복수직렬) | ○팀장<br>○○○(시설6) | ○팀장          | ○○○ | 농업6급         | ’20.07.01.<br>~’20.12.31.<br>(6개월) | 1             | 2021.1.1  |
| ○○○<br>(퇴직)  | 시설5급<br>(’21.5.17.)    | ○과장<br>직무대리<br>(단수직렬) | ○팀장<br>○○○(행정6) | ○팀장          | ○○○ | 시설6급         | ’21.01.01.<br>~’21.07.03.<br>(7개월) | 5             | 2021.7.3  |
| ○○○<br>(퇴직)  | 농업5급<br>(’22.1. 1.)    | ○면장<br>직무대리<br>(복수직렬) | ○팀장<br>○○○(세무6) | ○팀장          | ○○○ | 농업6급         | ’21.07.01.<br>~’21.12.31.<br>(6개월) | 1             | 2022.1.1  |
| ○○○도<br>(재직) | 행정6급<br>(’17.8.14.)    | ○과장<br>직무대리<br>(복수직렬) | ○팀장<br>○○○(환경6) | ○팀장          | ○○○ | 행정6급         | ’22.01.01.<br>~현재                  | 2             | -         |

※ ♣과장 ○○○(퇴직)→ 공석→○과장(○○○)→○과장전보/○○○  
(행정6-5급)승진→공석 직위에 전보임용 하여야 함에도 ○로 파견(1)→○○○(행정6)를  
○과장으로 직무대리 지정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특히, 영월군(♣과)은 [표 3]과 같이 과장급(5급) 공무원을 별도 정원(결원보충) 승인 없이 장기간 외부기관에 파견하면서 이에 따른 결원(직위)을 타부서의 과장급을 전보임용 보충하고, 그로 인해 공석이 된 ○면장(행정·농업·시설·사회복지5급) 직위에 ○○○(농업6급)을 직무대리로 발령, 같은 방식으로 ’21.01.01.에는 ○○○(시설6급), ’21.07.01.에는 ○○○(농업6급)을 직무대리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표 3] 5급 과장급 외부기관 파견현황

| 성명  | 직급 | 승진의결일      | 승진임용일     | 파견기관                  | 파견기간                     |
|-----|----|------------|-----------|-----------------------|--------------------------|
| ○○○ | ○급 | 2020.6.23  | 2020.8.22 | 영월산업진흥원 <sup>1)</sup> | 2020.7.1.<br>~2021.12.31 |
| ○○○ | ○급 | 2021.10.27 | 2022.1.1  | 영월체육회 <sup>2)</sup>   | 2022.1.1.<br>~2022.12.31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1) 영월산업진흥원

- 설립(2009. 7. 24.), 원장(○○○), 주요사업(기업일자리 창출, 향토기업 육성,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2) 영월체육회

- 설립(1965. 9. 20.), 회장(○○○, 2020.1.15.민선 초대 취임), 이사진(회장외 32명), 회원종목단체(검도 등 32종목)

'22.01.01.에도 외부단체에 과장급(5급)공무원을 파견하면서 ○○○(행정6급)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 정원으로 승인 받지 않은 파견 공무원으로 발생한 공석에 대해 사실상의 승진임용을 시키기 위해 복수 직렬 직위와 이를 연계한 순환 전보를 이용하여 인사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또한 법정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아닌 승진 임용을 시키기 위한 정황으로 보이는 직렬의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하여 그 공무원이 사실상 차기 승진자로 내정되게 하는 등 정원대비 2명을 초과한 인사 운영으로 인사 질서를 부정하게 운영해 왔다.

## 2. 인사위원회 심의(서면)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항에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제2항에는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자진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고충심사,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심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은 인사위원회의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추진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바와 같이 서면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대면심의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은 [표 4]와 같이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 등 대면심의로 심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6. 24일 감사일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부적정하게 서면심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다.

[표 4] 인사위원회 부적정(서면심의) 운영현황

| 연번 | 개최일자       | 개최목적                                 | 심의방법 | 적당 심의방법 |
|----|------------|--------------------------------------|------|---------|
| 계  |            |                                      |      | 8건      |
| 1  | 2019-11-11 | 2018년도 제1회 영월군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 서면   | 대면      |
| 2  | 2020-09-08 | 2020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           | 서면   | 대면      |
| 3  | 2021-02-09 | 2021년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          | 서면   | 대면      |
| 4  | 2021-02-09 |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 서면   | 대면      |
| 5  | 2021-02-09 | 영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 서면   | 대면      |
| 6  | 2021-09-15 |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 서면   | 대면      |
| 7  | 2021-12-10 | 영월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추천             | 서면   | 대면      |
| 8  | 2022-03-10 |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 서면   | 대면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 3. 직렬 및 직급 불부합 임용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5조·제16조·제20조 및 제29조·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시 본청의 국장, 실과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 등을 규정하고 있고,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별표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6월 24일 감사일 현재 영월군 정원관리 기관별 담당급 이상

직위의 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해당직급에 맞지 않는 직위인 5급 ○과장 직위에 4급 서기관을 발령하여 직급 불부합 상태로 임용하고 있으며, 지도관 직렬의 ●과장 직위에 행정 직렬이 임용되어 있는 등 과장급 직위 1명이 직급 불부합, 담당급 직위 20명이 직렬 불부합 상태로 임용되어 있다.

[표 5] 담당급 이상 직급 및 직렬불부합 임용 현황

| 연번 | 소속       | 직위     | 정원                 |    | 임용사항       |      |    |     |
|----|----------|--------|--------------------|----|------------|------|----|-----|
|    |          |        | 직렬                 | 직급 | 임용일        | 직렬   | 직급 | 성명  |
| 합계 |          | 22개 직위 |                    |    |            |      |    |     |
| 1  | ◎과       | ○장     | 행정                 | 5  | 2022-01-01 | 행정   | 4  | ○○○ |
| 2  | ●과       | ○장     | 지도관                | 5  | 2022-01-01 | 행정   | 5  | ○○○ |
| 3  | ◎실       | ○팀장    | 행정                 | 6  | 2020-07-01 | 공업   | 6  | ○○○ |
| 4  | ♣과       | ○팀장    | 행정, 전산, 방송통신       | 6  | 2021-04-01 | 공업   | 6  | ○○○ |
| 5  | ◎과       | ○팀장    | 행정, 시설             | 6  | 2020-04-01 | 공업   | 6  | ○○○ |
| 6  | Ⓜ과       | ○팀장    | 녹지                 | 6  | 2021-07-01 | 사무운영 | 6  | ○○○ |
| 7  | ◆과       | ○팀장    | 시설                 | 6  | 2022-01-01 | 행정   | 6  | ○○○ |
| 8  | ◁과       | ○팀장    | 농업                 | 6  | 2022-01-01 | 시설   | 6  | ○○○ |
| 9  | ◁과       | ○팀장    | 농업                 | 6  | 2022-01-01 | 행정   | 6  | ○○○ |
| 10 | ◁과       | ○팀장    | 행정, 농업, 수의, 해양수산   | 6  | 2021-07-01 | 환경   | 6  | ○○○ |
| 11 | ○읍       | ○팀장    | 행정                 | 6  | 2021-07-01 | 세무   | 6  | ○○○ |
| 12 | ⊕읍       | ○팀장    | 행정, 세무             | 6  | 2022-01-01 | 녹지   | 6  | ○○○ |
| 13 | ⊕읍       | ○팀장    | 행정                 | 6  | 2022-01-01 | 사회복지 | 6  | ○○○ |
| 14 | ○면       | ○팀장    | 행정, 농업, 지도사, 전문경력관 | 6  | 2022-01-01 | 세무   | 6  | ○○○ |
| 15 | ○면       | ○팀장    | 행정, 세무             | 6  | 2022-01-01 | 사회복지 | 6  | ○○○ |
| 16 | ○면       | ○팀장    | 행정                 | 6  | 2022-01-01 | 세무   | 6  | ○○○ |
| 17 | ○면       | ○팀장    | 행정, 농업, 지도사, 전문경력관 | 6  | 2022-01-01 | 녹지   | 6  | ○○○ |
| 18 | ○면<br>○소 | ○팀장    | 행정, 농업, 지도사, 전문경력관 | 6  | 2021-07-01 | 녹지   | 6  | ○○○ |
| 19 | ○면       | ○팀장    | 행정, 세무, 농업         | 6  | 2022-01-01 | 시설관리 | 6  | ○○○ |
| 20 | ○면       | ○팀장    | 행정, 사회복지           | 6  | 2021-07-01 | 기계운영 | 6  | ○○○ |
| 21 | ○면       | ○팀장    | 행정, 세무, 농업         | 6  | 2022-01-01 | 시설   | 6  | ○○○ |
| 22 | ○면       | ○팀장    | 행정, 세무, 농업         | 6  | 2020-01-01 | 사회복지 | 6  | ○○○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영월군 ♣과 지방○○ AA는 '20. 2. 10.부터 '21. 12. 31.까지 ○담당으로, 영월군 ♠읍(전 ♣과) 지방○○ AB는 '19. 1. 1.부터 '20. 8. 20.까지, ♣과 지방○○ AC는 '20. 8. 21.부터 '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승진, 전보 등 인사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 및 규정 그리고 영월군 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인사업무를 추진하여야 했으나, 부서장의 사고 발생에 따라 발생한 공석에 대하여 장기간 법정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 부서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위배 되게 임의로 직무대리를 지정운영 하였으며, 직렬 및 직급에 불부합하게 승진 또는 전보 임용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추진하여 영월군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어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직렬 및 직급에 불부합하게 승진 또는 전보 임용된 직위에 대하여 규정에 맞도록 전보 임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아울러,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대면심의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업무 연찬을 통해 향후 직무대리 지정, 인사위원회 심의, 직렬 및 지급 불부합 임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2]

##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육아휴직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수당지급에 대한 지급대상 결정, 지급액·지급기간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수당 지급내역

(단위: 원)

| 수 당 명         |             | 대 상      | 수당 지급 기간     | 수당 총지급액<br>(‘22년6월 현재) | 비고                                         |
|---------------|-------------|----------|--------------|------------------------|--------------------------------------------|
| 계             |             |          |              | 918,528,090            |                                            |
| 육아휴직수당        |             | ○○○외 54명 | 2012 ~ 현재    | 888,716,040            | 12개월 이상<br>지급 불가                           |
| 파견공무원<br>대상수당 | 특수지<br>근무수당 | ○○○외 80명 | 2019.9. ~ 현재 | 4,770,980              | ◦ ○○○ 138,380원 환수원료<br>◦ ○○○ 130,640원 환수원료 |
|               | 특수직무<br>수당  | ○○○외 80명 | 2019.9. ~ 현재 | 4,620,000              |                                            |
| 휴복직자<br>연가보상비 |             | ○○○외 44명 | 2019.9. ~ 현재 | 20,421,070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1.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으로 산정된 지급총액<sup>3)</sup>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휴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매달 정확한 지급액이 지급되고 있는지와 지급기간이 지났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휴직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과)은 영월군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표 2]와 같이 영양군에서 육아휴직수당을 기수령 후 영월군에 신규임용된 ○○○에 대하여 13,869,670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착오지급 하였다.

[표 2] 육아휴직수당 과·오지급 현황

(단위: 원)

| 수 당 명  | 성 명 | 소속/직급       | 지급기간<br>(개월, 시간)                  | 지급액        |       | 실 회수액      | 비고        |
|--------|-----|-------------|-----------------------------------|------------|-------|------------|-----------|
|        |     |             |                                   | 실지급액       | 정당지급액 |            |           |
| 육아휴직수당 | ○○○ | ◎과<br>/지방○○ | '19. 1.1.~<br>'20. 1.6.<br>(11개월) | 13,869,670 | 0     | 13,869,670 | ○군<br>기수령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휴직수당에 대한 지급 총액기준(2015~ 2021)

| 연도별       | 지급기준                                                                                                              | 비고                                                   |
|-----------|-------------------------------------------------------------------------------------------------------------------|------------------------------------------------------|
| 2015~2017 | • 월봉급액의 40% (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                                                                                  | 총지급액의 15% 공제 후 지급,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공제액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 2018      |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월봉급액의 80%<br>-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br>•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봉급액의 40%<br>- 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 |                                                      |
| 2019~2021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월봉급액의 80%<br>-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br>•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봉급액의 50%<br>- 상한 120만원 ~ 하한 70만원  |                                                      |

## 2. 파견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별표 3에 따르면 탄광지역(「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병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읍면동(보건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에게 월 70,000원 이하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은 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파견공무원 인사발령 시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은 [표 3]과 같이 강원도 파견(2명) 직원에게 5개월간 269,020원<sup>4)</sup>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공로연수 중인 직원(2명)에 대하여는 12개월간 720,000원<sup>5)</sup>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특히, 공로연수자 중 1명에 대하여 12개월간 840,000원의 특수업무(직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파견자에 대한 수당 과·오지급 현황

(단위 : 원)

| 연<br>번 | 수당명         | 소속/직급             | 성명  | 지급기간<br>(개월)                     | 정당<br>지급액 | 실지급액      | 정당<br>환수액 | 실 회수액     | 비고                |
|--------|-------------|-------------------|-----|----------------------------------|-----------|-----------|-----------|-----------|-------------------|
| 계      |             |                   | 5명  |                                  | 30,980    | 1,860,000 | 1,829,020 | 1,560,000 |                   |
| 1      | 특수지<br>근무수당 | ♣과<br>/지방○○       | ○○○ | '22.1.13.<br>~.5.31.<br>(5개월)    | 11,620    | 150,000   | 138,380   | 0         | '22.6.20.<br>환수완료 |
| 2      | 특수지<br>근무수당 | ♣과<br>/지방○○       | ○○○ | '22.1.21.<br>~.5.31.<br>(5개월)    | 19,360    | 150,000   | 130,640   | 0         | '22.6.20.<br>환수완료 |
| 3      | 특수지<br>근무수당 | 퇴직(공로연수)<br>/지방○○ | ○○○ | '19.7.1.<br>~'20.6.30.<br>(12개월) | 0         | 360,000   | 360,000   | 360,000   | '20.6.30.<br>퇴직   |
| 4      | 특수지<br>근무수당 | 퇴직(공로연수)<br>/지방○○ | ○○○ | '19.7.1.<br>~'20.6.30.<br>(12개월) | 0         | 360,000   | 360,000   | 360,000   | '20.6.30.<br>퇴직   |
| 5      | 특수<br>직무수당  | 퇴직<br>/지방○○       | ○○○ | '19.7.1.<br>~'20.6.30.<br>(12개월) | 0         | 840,000   | 840,000   | 840,000   | '20.6.30.<br>퇴직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4) 2022년 6월 20일 감사기간 중 월급여에서 환수액을 제외하고 급여지급(환수 완료)

5) 공로연수자 2명을 퇴직으로 인한 환수 불가

### 3.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한 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에 따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는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연가사용일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산식을 적용하여 적정한 연가보상비를 산출 후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는 휴직 후 복직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신청 시 신청인의 복직한 3개월의 기간을 법정연가일수 및 연가보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연가사용일을 명확히 확인하여 [표 3]과 같이 연가보상시간과 연가보상 단가<sup>6)</sup>를 산출하여 연가보상비를 산출하여야 했으나 착오로 [표 4]와 같이 연가보상비를 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4] 연가보상비 지급신청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 현황

(단위 : 시간)

| 수당명       | 소속/직급                      | 성명  | 법정연가시간<br>(산 출 식)   | 실 연가시간<br>(산 출 식)                                | 복직 후<br>사용한<br>연가시간 | 정당연가<br>보상시간 | 실 연가<br>보상시간 | 비고         |
|-----------|----------------------------|-----|---------------------|--------------------------------------------------|---------------------|--------------|--------------|------------|
| 연가<br>보상비 | ♣읍<br>/지방○○<br>(7시간 시간선택제) | ○○○ | 154<br>(22×35/40×8) | 116<br>(22×35/40×8)<br>-38 <sup>7)</sup> (휴직3개월) | 68                  | 48           | 86           | 38시간<br>초과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6) 단가산출식: (월급여)1,850,710원×86%×1/30×1/7=7,579원

7) 휴직 3개월 적용 제외 연가시간(1월당 12.8시간 / 정규공무원의 경우 12개월 21일 연가사용 기준 1일 14시간 연가시간 적용)

[표 5] 연가보상비 과 지급 현황

(단위 : 원)

| 수당명   | 소속/직급                 | 성명  | 정당보상<br>시간 | 실지급액    | 정당 지급액  | 실 회수액   | 비고          |
|-------|-----------------------|-----|------------|---------|---------|---------|-------------|
| 연가보상비 | 읍<br>/지방○○<br>(시간선택제) | ○○○ | 48시간       | 651,794 | 363,792 | 288,002 | 38시간<br>과지급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시정] 영월군 종합감사기간 동안 회수가 완료된 ○○○과 ○○○의 특수지근무 수당(269 천 원)을 제외한 총 15,717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아울러, 충분한 업무 연찬을 통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수당 과·오지급 현황(총괄)

(단위 : 원)

| 연<br>번 | 수당명         | 소속/직급                  | 성명  | 지급기간<br>(개월, 시간)                  | 정당<br>지급액 | 실지급액       | 정당<br>환수액  | 실환수액<br>(예정) | 비고                        |
|--------|-------------|------------------------|-----|-----------------------------------|-----------|------------|------------|--------------|---------------------------|
| 계      |             |                        |     |                                   | 394,780   | 16,381,470 | 15,986,690 | 14,157,670   |                           |
| 1      | 육아휴직<br>수당  | ◎과<br>/지방○○            | ○○○ | ‘19. 1.1.~<br>’20. 1.6.<br>(11개월) | 0         | 13,869,670 | 13,869,670 | 13,869,670   | ○군<br>기수령<br>(0)          |
| 2      | 특수지<br>근무수당 | ♣과<br>/지방○○            | ○○○ | ‘22.1.13.~<br>.5.31.<br>(5개월)     | 11,620    | 150,000    | 138,380    | 0            | 6.20.<br>환수완료             |
| 3      | 특수지<br>근무수당 | ♣과<br>/지방○○            | ○○○ | ‘22.1.21.~<br>5.31.<br>(5개월)      | 19,360    | 150,000    | 130,640    | 0            | 6.20.<br>환수완료             |
| 4      | 특수지<br>근무수당 | 퇴직<br>/지방○○            | ○○○ | ‘19.7.1.~<br>’20.6.30.<br>(12개월)  | 0         | 360,000    | 360,000    | 0            | ‘20.6.30.<br>퇴직<br>(환수불가) |
| 5      | 특수지<br>근무수당 | 퇴직<br>/지방○○            | ○○○ | ‘19.7.1.~<br>’20.6.30.<br>(12개월)  | 0         | 360,000    | 360,000    | 0            | ‘20.6.30.<br>퇴직<br>(환수불가) |
| 6      | 특수직무<br>수당  | 퇴직<br>/지방○○            | ○○○ | ‘19.7.1.~<br>’20.6.30.<br>(12개월)  | 0         | 840,000    | 840,000    | 0            | ‘20.6.30.<br>퇴직<br>(환수불가) |
| 7      | 연가<br>보상비   | ⊕읍<br>/지방○○<br>(시간선택제) | ○○○ | 86시간                              | 363,800   | 651,800    | 288,000    | 288,000      | 38시간<br>과지급               |

[일련번호: 03]

# 강 원 도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영월군(○실)에서는 「행정소송법」, 「영월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라 소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sup>8)</sup>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월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3장 소송사무, 제1절 소송의 수행,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소송업무는 법무업무부서장이 총괄한다. 다만,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2 이상의 실·과·소에 관련되는 소송,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은 군수가 소송을 수행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8) 「민사소송비용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인지액, 서기로,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 및 여비, 법관등의 일당·여비, 감정·통역·번역·측량에 관한 요금, 통신비, 공고비, 변호사비용 등

또한, 같은 규칙 제43조에 따르면 법무업무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으로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제2절 소송확정 후의 조치,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판결금 등의 추심,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소송비용의 추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추심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에서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법제처 법령해설례(13-0472, 2013. 10. 25.,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채권의 권리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을 준용하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르면,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의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 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하고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에는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의 사유로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선서 거부 하였을 때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실 및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영월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소송비용으로 결정하는 금액을 사건의 상대방에게 부과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채권의 소멸시효<sup>9)</sup> 도래 전에 [표 1]과 같이 소송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표 1]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 절차**

1.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1심 법원) 및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및 증명원正本 수령
  2. 임의변제 최고(소송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안내, 고지서 발급 등)
  3. 납부확인 후 세입처리(기한 내 납부확인 후 세입처리)
- [미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4. 집행문 부여 신청(소송비용액 확정 결정한 법원에 신청)
  5. 재산명시(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6. 재산조회(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

9)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서울고등법원 2002.10.7. 자 2002라450 결정) : 소송비용액 청구는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를 계산

## 7. 압류 등 강제집행

- 예금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 후 제3채무자(은행)에 예금채권 추심 요청)
- 동산압류(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신청)

그런데 [표 2]와 같이 영월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영월군이 승소로 확정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 중 소송비용이 미회수 된 소송 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2] 승소사건 소송비용 미회수 현황

(단위: 원)

| 연번 | 사건번호(사건명 / 당사자)                                      | 주 관 부 서 | 소송비용<br>확정액<br>(확정일)           | 부과(납부)<br>안내여부                                                                                                                              | 납부액 | 미회수액       | 강제집행<br>이행여부                  |
|----|------------------------------------------------------|---------|--------------------------------|---------------------------------------------------------------------------------------------------------------------------------------------|-----|------------|-------------------------------|
| 계  | 8 건                                                  |         | 22,113,880                     |                                                                                                                                             | -   | 22,113,880 |                               |
| 1  | 춘천지법(영월)○카○<br>소송비용액확정<br>(손해배상기))<br>/○발 주식회사       | ○과      | 3,307,280<br>(2014.06.17.)     | 부과(2014. 08. 12.)<br>독촉(2014. 11. 27.)<br>결손처분(2016.10.26.)<br>당사자 주소지 확인<br>및 재산조회(2019.12.12.)<br>재산명사신청(2019.11.24.)<br>재산조회(2022.4.14.) | -   | 3,307,280  | 미이행                           |
| 2  | 춘천지법○아○<br>소송비용액확정<br>(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br>/ 주식회사 ○발      | ▽ 과     | 3,521,410<br>(2020.04.23.)     | 부과(2020.04.27.)<br>독촉(2020.05.18.)<br>압류(2020.07.27.)                                                                                       | -   | 3,521,410  | 미이행<br>(압류<br>진행 중)           |
| 3  | 춘천지법○아○<br>소송비용액확정<br>(행정대집행영장통보처분취소)<br>/ ○경        | ○과      | 소송비용부담<br>및 확정<br>신청사건<br>진행 중 | -                                                                                                                                           | -   | -          | -                             |
| 4  | 춘천지법○아○<br>소송비용액확정<br>(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 취소)<br>/ 주식회사 ○코 | ○과      | 3,185,950<br>(2019.06.17.)     | 부과(2022.04.01.)<br>독촉(2022.05.16.)                                                                                                          | -   | 3,185,950  | 미이행                           |
| 5  | 춘천지법(영월)○확○<br>소송비용액확정<br>(토지인도)/○연                  | ○과      | 소송비용부담<br>및 확정<br>신청사건<br>진행 중 | -                                                                                                                                           | -   | -          | -                             |
| 6  | 춘천지법(영월)○확○<br>소송비용액확정<br>(손해배상기))/○자                | ○과      | 9,361,650<br>(2014.04.24.)     | 회수포기                                                                                                                                        | -   | 9,361,650  | 미이행                           |
| 7  | 춘천지법(영월)○확○<br>소송비용액확정<br>(손해배상)/○상                  | ○과      | 2,426,570<br>(2016.12.26.)     | 부과(2017.01.31.)<br>독촉(2017.02.09.)<br>(2017.03.07.)<br>재산명사신청(2017.07.17.)                                                                  | -   | 2,426,570  | 미이행<br>(재산유무<br>년도별<br>지속 확인) |

| 연<br>번 | 사건번호(사건명 / 당사자)                                       | 주<br>관<br>부<br>서 | 소송비용<br>확정액<br>(확정일)     | 부과(납부)<br>안내여부                                                                                    | 납부액 | 미회수액    | 강제집행<br>이행여부        |
|--------|-------------------------------------------------------|------------------|--------------------------|---------------------------------------------------------------------------------------------------|-----|---------|---------------------|
|        |                                                       |                  |                          | 재산명시신청각하<br>(2017.12.26.)<br>소송비용 납부독촉<br>(2019.09.03.)<br>공시송달(2019.10.14.)<br>결손처분(2020.11.25.) |     |         |                     |
| 8      | 춘천지법(영월)○확○<br>소송비용액확정<br>(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br>/주식회사 ○건 | ○과               | 311,020<br>(2021.05.11.) | 부과(2021.5.18.)<br>독촉(2021.6.21.)<br>압류(2021.7.22.)                                                | -   | 311,020 | 미이행<br>(압류<br>진행 중)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주관부서에서는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독촉 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총 6건 22,113,880원의 채권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춘천지법(영월)○확○(주관부서: ◆과)의 경우 소송비용확정이 2014. 4. 22.임에도 불구하고 2년간 부과, 독촉, 압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만을 확인(소유권 이전)하고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명시신청 등 재산조회 절차 없이 2016. 11. 14에 회수포기를 한 이후 재산명시신청 등 재산조회와 관련된 아무런 행정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시정] 영월군이 승소한 사건 중 2014년부터 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를 포기한 총 8건 중 6건의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22,113천 원에 대하여 조속히 회수하고, 특히 2014년 회수를 포기했던 승소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시효(10년)가 도래하기 전 회수를 완료하도록 하고 회수가 어려울 경우 강제집행 절차 등 소송비용 추심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소송비용 회수 전인 8건의 승소사건 중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진행 중인 2건에 대하여도 소송비용부담액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 회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고, 앞으로 소송비용 확정 후 미납자에 대한 추심절차를 소홀히 하여 채권 소멸 시효완성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회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04]

# 강 원 도

##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노인복지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훈계대상자 ① 영월군 ◆과(전 ◇과) 지방○○ AC

② 영월군 ◇과 지방○○ AD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 기초연금 파오지금액 환수 소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정지 기간중에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시장·군수는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하고 기한내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기초연금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는 환수대상이 확인된 경우 사유 발생일 또는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 처리 또는 정지 등 환수결정 후 납입고지,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압류의 절차로 환수하여야 하고 기초연금 급여액을

환수한 시·군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은 기초연금 부정수급 또는 과오지급이 확인되면 환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은 [표 1]과 같이 ○○○ 외 11명에게 기초연금 총 3,534,630원을 과오지급한 후 사전 안내, 환수 결의만 이행하고 납입고지, 납부 독촉 등 규정에 의한 환수 절차를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기초연금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기초연금 과오지급 및 미환수 현황

(단위: 원)

| 성명  | 생년월일       | 부당이득금<br>결정일자 | 부당이득금액    | 회수금액 | 조치사항     | 비고 |
|-----|------------|---------------|-----------|------|----------|----|
| 12명 | 계          |               | 3,534,630 | 0    |          |    |
| ○○○ | '○○.○○.○○. | '21.10.29.    | 300,000   | 0    | 없음       |    |
| ○○○ | '○○.○○.○○. | '21.10.25.    | 240,000   | 0    | 반납 사전 안내 |    |
| ○○○ | '○○.○○.○○. | '21.09.28.    | 240,000   | 0    | 반납 사전 안내 |    |
| ○○○ | '○○.○○.○○. | '21.07.30.    | 300,000   | 0    | 없음       |    |
| ○○○ | '○○.○○.○○. | '21.05.04.    | 300,000   | 0    | 반납 사전 안내 |    |
| ○○○ | '○○.○○.○○. | '20.07.23.    | 600,000   | 0    | 없음       |    |
| ○○○ | '○○.○○.○○. | '20.07.23.    | 203,800   | 0    | 반납 사전 안내 |    |
| ○○○ | '○○.○○.○○. | '20.07.23.    | 250,000   | 0    | 없음       |    |
| ○○○ | '○○.○○.○○. | '20.07.23.    | 250,000   | 0    | 없음       |    |
| ○○○ | '○○.○○.○○. | '20.07.23.    | 480,000   | 0    | 환수 내부결의  |    |
| ○○○ | '○○.○○.○○. | '20.07.23.    | 250,000   | 0    | 반납 사전 안내 |    |
| ○○○ | '○○.○○.○○. | '20.05.27.    | 120,830   | 0    | 환수 내부결의  |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 2. 노인복지기금 정산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제22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는 지출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시정 및 보완 후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2]와 같이 2021년 ○관에 “○학교”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하면서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 계획보다 낮으므로 총 집행액 16,740천 원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재정산을 요청하여야 했음에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지 않고 정산보고를 하는 등 보조금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 2] 2021년 노인복지기금 정산 부적정 내역

(단위 :천 원)

| 보조사업자 | 사업명 | 사업비    |       |        | 집행(정산서 기준)      |                 |                   | 적정 정산액 |                   |                    |
|-------|-----|--------|-------|--------|-----------------|-----------------|-------------------|--------|-------------------|--------------------|
|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관    | ○학교 | 22,000 | 5,800 | 16,200 | 16,740<br>(76%) | 5,800<br>(100%) | 10,940<br>(67.5%) | 16,740 | 4,420<br>(-1,380) | 12,320<br>(+1,380)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 3. 화장장려금 지원 부적정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및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개장은 유골 1구당 100,000원을 지원하되 화장장 소재지 지역 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 실제 화장요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 및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화장시설 이외 장소에서 화장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영월군 사무위임조례」에서는 매장, 화장, 개장 신고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나 화장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영월군(◇과)은 화장장려금 지원 시 읍면에서 제출된 지원 대상에 대하여 지원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군에서 직접 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3] 및 [표 4]와 같이 2020 ~ 2021년 각 읍면에서 조례에 규정한 화장장려금 기준액보다 총 362건 17,600천 원을 과오지급하였음에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상 군에서 화장장려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임 근거 없이 화장장려금 지급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운영하는 등 화장장려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 3] 2020~2021년 화장장려금 부적정 지급내역

(단위 :천 원)

| 읍면 | 과오지급 건수 | 지급액    | 적정지급액  | 과오지급액  | 비고 |
|----|---------|--------|--------|--------|----|
| 계  | 360     | 35,150 | 17,630 | 17,520 |    |
| ○읍 | 188     | 18,150 | 9,190  | 8,960  |    |
| ◆읍 | 8       | 770    | 390    | 380    |    |
| ○면 | 3       | 300    | 150    | 150    |    |
| ○면 | 16      | 1,600  | 790    | 810    |    |
| ○면 | 27      | 2,700  | 1,350  | 1,350  |    |
| ○면 | 23      | 2,400  | 1,150  | 1,250  |    |
| ○면 | 53      | 5,150  | 2,600  | 2,550  |    |
| ○면 | 29      | 2,810  | 1,420  | 1,390  |    |
| ○면 | 13      | 1,270  | 590    | 680    |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불임 참조

[표 4] 화장장려금(개장) 부적정 지급내역

(단위 :천 원)

| 읍면 | 신청인 |      | 지급액 | 적정지급액 | 과오지급액 | 비고                |
|----|-----|------|-----|-------|-------|-------------------|
|    | 성명  | 거주지  |     |       |       |                   |
| 계  |     |      | 80  | 0     | 80    |                   |
| ○면 | ○○○ | 남양주시 | 40  | 0     | 40    | 영월군 미거주<br>신청인 지급 |
| ○면 | ○○○ | 청주시  | 40  | 0     | 40    |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영월군 ◆과(전 ◇과) 지방○○ AC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과 ○팀장으로 화장장려금 실무를 담당하면서 읍면에서 지급하는 화장장려금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었고, 화장장려금 지급 사무의 읍면 위임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등 화장장려금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영월군 ◇과 지방○○ AD는 2021. 7. 1.부터 2022. 6. 24.감사일 현재까지 ◇과 화장장려금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읍면에서 지급하는 화장장려금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었고, 화장장려금 지급 사무의 읍면 위임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등 화장장려금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기초연금 과오지급 후 환수절차를 미이행한 ○○○ 등 12명에 대한 3,534천 원의 환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산 비율을 미준수한 2021년 ‘○학교’ 사업에 대하여 재정산 실시 후 비율에 따라 미반납한 보조금 잔액 1,380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노인복지사업 업무가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연찬을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장장려금(개장 포함) 과오지급 세부현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일련번호:05]

# 강 원 도

##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어린이집 지도·감독 및 양육수당 환수 소홀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훈계대상자 영월군 ☺단(전 ◇과)

지방○○ AE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적정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sup>10)</sup>,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며 정부(지자체)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사항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공통 적용 사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10) 법인·단체가 설립한 어린이집 중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은 만 65세, 종사자는 만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sup>11)</sup>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서는 70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원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1]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19○○. ○월생으로 2022년 1월부터 만 65세를 초과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려면 실질적인 설립자 여부를 판단 후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검토 또는 판단 없이 인건비 18,598천 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부적정 지원 내역

(단위 :천 원)

| 시설명    | 시설장 |            | 인건비 지원 내역     |        | 비 고                     |
|--------|-----|------------|---------------|--------|-------------------------|
|        | 성명  | 생년월일       | 지원기간          | 지원액    |                         |
| ○○어린이집 | ○○○ | 19○○.○○.○○ | '22.1월~'22.5월 | 18,598 | 인건비 지원 만료 기간 : 2021.12월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 2.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소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11) 원칙적으로 설립자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주체이자 동시에 시설장인 자를 의미하나, 법인 설치 시설의 경우에는 설치·운영 신고 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설립자의 의미에 대해 실질적인 측면(개인재산 출연여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재직 중인 시설장에게 설립자 지위 인정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1인 전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 기타에 대하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전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 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 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 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 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여 보조사업이 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어린이집이 2020년 보조금 총 30,000천 원으로 기능보강사업(개보수)을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했어야함에도 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등 일반 지출 형태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데도 시정 요구 등 적정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어린이집이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보조금을 확정 통보도 하지 않는 등 보조금에 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 2]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부적정 추진 현황

(단위 : 천 원)

| 연도   | 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금액   | 집행금액             | 대금청구자    | 계약  | 정산보고 및 확정 | 비고 |
|------|-------------|--------|--------|------------------|----------|-----|-----------|----|
| 2020 | ○○어린이집 기능보강 | ○○어린이집 | 30,000 | 30,000<br>(100%) | ○설<br>○템 | 미이행 | 미이행       |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 3.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지도·감독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위원은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므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자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차 개선명령, 2·3차는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부를 면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3]과 같이 ○○어린이집이 2020년 2분기부터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음에도 운영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적정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 미 실시 현황

| 시설명    | 위원회 운영 여부 |     |     |     |       |     |     |     |       |     |     |     |
|--------|-----------|-----|-----|-----|-------|-----|-----|-----|-------|-----|-----|-----|
|        |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어린이집 | ○         | ○   | ○   | ○   | ○     | X   | X   | X   | X     | X   | X   | X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 4. 양육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환수 면제 부적정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원하며, 양육수당이 아동에게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시·군에서는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해야 하며 그 환수 절차는 사전처분통지, 환수결정, 환수결정 통지, 독촉, 체납체분의 절차로 진행하며 환수금은 전액 일시납부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양육수당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sup>12)</sup> 완성으로 소멸되며 결손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수당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도내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거나 입양·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아동 사망 및 타 시도 전출 등의 사유 시 수급권을 상실하며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수급권을 상실한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에서는 양육수당 및 육아기본수당의 과오 지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환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4]와 같이 국적 상실로 수급권이 상실된 ○○○ 아동에게 수당 4,500천 원을 과오지급하였으며 환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없는 양육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과오지급액에 대하여는 환수하여야 함에도 영월군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환수 면제로 상정하여 의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 4] 양육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환수 면제 내역

(단위 : 천 원)

| 구분     | 대상자 |         |        | 상실 사유 | 환수 면제 처리 사유 |                           |       |
|--------|-----|---------|--------|-------|-------------|---------------------------|-------|
|        | 성명  | 생년월일    | 과오 지급액 |       | 심의일         | 심의기관                      | 면제 사유 |
| 계      |     |         | 4,500  |       |             |                           |       |
| 양육수당   | ○○○ | '○○.○○. | 1,800  | 국적 상실 | '20.12.03.  | 영월군<br>생활보장·긴급<br>지원심의위원회 | 생활 곤란 |
| 육아기본수당 |     | ○○.     | 2,700  |       |             |                           |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12) 소멸시효 : 지급되지 않아야 할 수당이 지급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영월군 ☺단(전 ◇과) 지방○○ AE는 2020. 3. 23.부터 2020. 12.31.일까지 ◇과 보육 업무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개보수)이 지방계약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고 추진되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 규정을 미준수하여 지급된 18,598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보육 및 양육수당 업무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연찬을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06]

# 강 원 도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청소년 업무 추진 소홀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은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11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판매하였을 경우,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sup>13)</sup>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군수는 이를 위반시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sup>14)</sup>에

13)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1차위반 영업정지 2월', '2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14) 1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쇄

같음하여 과징금<sup>15)</sup>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75조, 제82조에서는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군수는 이를 위반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위반 횟수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sup>16)</sup>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시장·군수는 영업정지 2개월(2차 3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마트,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 담배 등을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어 통보되면 주류 판매는 청소년보호법, 담배 판매는 담배사업법에 따르고, 식품접객업소 및 노래방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은 [표 1]과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국 등 식품접객업소 및 노래방 등 5개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져야함에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감경 조치를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2020. 6. 18. 통보된 ○과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청소년보호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 1]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정적 내역**

| 연번 | 업소명 | 위반내용        | 위반사실<br>공문접수일 | 부적정 조치 내역                           | 적정 조치 내역          |
|----|-----|-------------|---------------|-------------------------------------|-------------------|
| 1  | ○국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 '20.01.02.    | 과징금 부과(500천 원)<br>· 청소년보호법 관련 감경 조치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월 |

15) 식품접객업 과징금 부과 기준 : 전년도 총 매출액에 따라 26등급으로 구분되며 1일 과징금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67 만 원으로 규정

16) 주류 판매·제공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영업정지 3월), 4차 위반(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 연번 | 업소명 | 위반내용           | 위반사실<br>공문접수일 | 부적정 조치 내역                           | 적정 조치 내역                         |
|----|-----|----------------|---------------|-------------------------------------|----------------------------------|
| 2  | ○발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 '20.02.13.    | 과징금 부과(800천 원)<br>· 청소년보호법 관련 감경 조치 | (과징금 최소<br>기준 300만 원)            |
| 3  | ○고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 '19.12.02     | 과징금 부과(700천 원)<br>· 청소년보호법 관련 감경 조치 |                                  |
| 4  | ○식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 '19.10.30.    | 과징금 부과(800천 원)<br>· 청소년보호법 관련 감경 조치 |                                  |
| 5  | ○방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 '19.12.04.    | 과징금 부과(500천 원)<br>· 청소년보호법 관련 감경 조치 | 음약산업진흥에<br>관한 법률에 따라<br>영업정지 10일 |
| 6  | ○퍼  |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 '20.06.18.    | 행정처분 미이행                            | 미이행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 2.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의뢰 미통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문서를 접수한 처리과는 문서와 관련이 있는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접수한 문서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영월경찰서로부터 주류 및 담배 판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공문을 접수하고도 담배사업 소관부서인 △과에 통보하지 않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담배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미이행을 초래하였다.

[표 2] 청소년 담배 판매업소 문서 통보 내역

| 업소명 | 위반내용              | 위반사실 공문 접수일<br>(경찰서→영월군 ◇과) | 담배 사업부서 공문 통보<br>여부      | 비고 |
|-----|-------------------|-----------------------------|--------------------------|----|
| ○퍼  | 청소년에게<br>주류·담배 판매 | 2020.06.18.                 | 미통보(행정처분 미이행)            |    |
|     |                   | 2020.10.16.                 | 미통보<br>(청소년보호법으로 과징금 부과) |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 3. 청소년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및 호봉 확정 부적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장·군수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립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호봉 확정 시 경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여성가족부 고시) [별표 2]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경력 인정 범위를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5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에서는 청소년시설에서 종사자의 임면 보고를 받은 후에는 경력 인정과 호봉 확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력 인정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3]과 같이 ○집 종사자(○○○)의 ○센터 종사 경력은 미인정하고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서 근무한 경력은 50%만 인정하여 최초 호봉을 3호봉으로 확정했어야하나 3개 시설 근무 경력을 80%로 인정하여 7호봉으로 확정 후 2022. 6월까지 616,600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였는데도 시정 요구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집 종사자 경력 인정 부적정 현황

| 시설명 | 대상자                   | 경력인정사항 |                      |          |                |                | 급여지급 내역<br>(‘22.5월~’22.6월) |           |
|-----|-----------------------|--------|----------------------|----------|----------------|----------------|----------------------------|-----------|
|     |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인정<br>기간 | 최초호봉           | 적정호봉           |                            |           |
| ○집  | ○○○<br>(‘○○.<br>○.○.) | ○센터    | ’14.6.2.~<br>’15.6.1 | 1년       | 7호봉<br>(6년 9월) | 3호봉<br>(2년10월) | 차액<br>(회수금액)               | 616,600   |
|     |                       | ○센터    | ’16.5.1.<br>~’17.5.1 | 1년       |                |                | 기지급<br>급여                  | 4,492,000 |
|     |                       | ○센터    | ’17.5.1.<br>~’22.1.1 | 4년8월     |                |                | 적정 호봉에<br>따른 급여            | 3,875,400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 4. ○센터 후원금 사용 부적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41조의7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sup>17)</sup>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이하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업무추진비, 자산 취득비(토지, 건물 등 구입), 잡지출 등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후원금 사용 용도를 준수하고 명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영월군(◇과)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4]와 같이 ○센터가 비지정후원금 1,974천 원을 경조사비와 후원자 선물 등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비지정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에도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적정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센터 비지정후원금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원)

| 시설명 | 집행일자              | 집행액       | 집행내역          | 비 고      |
|-----|-------------------|-----------|---------------|----------|
| ○센터 | 2019.09.05. 외 13건 | 1,974,000 | 경조사비, 직원 선물 등 | 업무추진비 지출 |

※ 영월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17) 후원금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시정]** ① 부적정하게 확정된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의 호봉을 재산정하시고, 호봉 확정 오류로 인해 과다 지급한 급여 616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용도 외 사용한 비지정후원금 1,974천 원은 해당 시설 후원금 전용 통장으로 여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청소년 업무 추진 시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연찬을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07]

# 강 원 도

## 경징계·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수상레저안전법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징계대상자 영월군 ◎과 지방○○ AF

※훈계대상자 영월군 ◎과 지방○○ AG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및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가. 등록 유효기간 관리 및 갱신등록 처리에 관한 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및 제3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의3에 따르면, 내수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 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등록 서류<sup>18)</sup>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시설 및 장비의 등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하고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이하 “등록증” 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18) 사업장 명세서, 기구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서류, 영업구역 표시한 도면, 하천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을 첨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등록 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갱신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갱신할 것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등록갱신에 대한 신청사항이 적합한 경우 등록을 갱신하여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등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등록하되, 영업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등록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사항을 알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5일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이 적합한 경우 해당 등록을 갱신하고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는 등 관내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기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영월군(☎과)에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료[붙임 1]를 근거로 2019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에 등록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총 56건이며, 이 중 2021년 6월에 신규 등록한 1건을 제외한 총 55건의 사업자들 모두 2000년 5월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유효기간은 2030년 2월부터 2032년 5월 사이에 종료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의 자체 보유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법령에 따른 유효기간이 최장 10년이므로 총 55건의 수상레저사업자는 2022년 6월 현재까지 최소 1회 이상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적이 있었고, 최근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은 2020년 2월

부터 2022년 5월 까지로, 이에 따라 영월군에서는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어야 하며, 갱신 등록을 신청한 사실과 이를 처리한 내역 또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금번 감사대상 기간인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위의 총 55건의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갱신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등록갱신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나 내역 또한 없다.

또한, 영월군(☉과)에서는 관내 등록 사업자들의 노후화된 등록증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신고나 절차 없이 55개 업소 중 47개 업소에 대하여 2021년 특정시기에 사업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채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 주면서 자체 보유 전산 자료에는 유효기간을 등록증 재발급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임의로 정해 갱신입력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업소에 대하여도 이들의 휴업신고나 변경등록을 처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고, 등록증에 사업기간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며, 등록 유효기간 역시 등록증 재발급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해 자체 보유 자료를 갱신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관내 사업자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여 왔으며, 그 결과 만료된 사업자들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연장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의무 보험 가입 관리에 관한 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동력기구” 라 한다) 소유자의 경우에는 동력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은 사업기간 또는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의3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또는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협회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및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서는 시장·군수는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업무정지(또는 등록취소) 처분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력기구 소유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는 이용자 등의 피해를 보전 혹은 보상하기 위하여 관내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와 동력기구 소유자의 의무 보험 가입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붙임 2]와 같이 관내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 및 동력기구 소유자에 대하여 감사기간동안인 3년간의 의무 보험 가입 현황을 제대로 조사·관리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등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련 업무를 방치하였다.

#### **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르면 동력기구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동력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 및 제59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동력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기구는 5년마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력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50만 원, 개인에게는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기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은 [표]와 같이 ○호, ○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4대의 검사 만료일이 5년 이상 경과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이행 현황

| 연번 | 검사구분 | 소유자 | 기구명 | 기구종류      | 검사시작일      | 검사만료일      | 비고 |
|----|------|-----|-----|-----------|------------|------------|----|
| 1  | 개인   | ○○○ | ○호  | 모터보트(선외기) | 2007-06-27 | 2012-07-26 |    |
| 2  | 개인   | ○○○ | ○호  | 수상오토바이    | 2007-06-27 | 2012-07-26 |    |
| 3  | 개인   | ○○○ | ○호  | 수상오토바이    | 2015-07-20 | 2020-08-18 |    |
| 4  | 개인   | ○○○ | ○호  | 모터보트(선외기) | 2016-03-18 | 2021-04-16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영월군 ☎과 지방○○ AF는 2021. 1. 1.부터 현재까지 ☎과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관리 및 갱신등록·휴업·폐업 신고 처리, 등록증 재발급 등의 업무가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의무 보험 가입 현황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이에 대한 검토 및 지도, 감독을 태만히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경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영월군 ◎과 지방○○ AG는 2020. 1. 1. 신규 임용되어 2021. 3. 1.부터 현재 까지 ◎과에서 수상레저사업 업무 처리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 등록 유효기간 관리 및 갱신등록, 휴·폐업 신고 처리, 등록증 재발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담당 업무에 대한 업무 연찬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빠른 시일 내에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사항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의무 보험 가입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화하고,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또는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및 의무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월군 수상레저사업자 등록 현황

| 연번 | 상 호    | 대표자 | 최초등록       | 등록갱신<br>신고 | 등록갱신<br>사전고지 | 등록증<br>(재)발급일 | 감사제출자료<br>(등록유효기간) |
|----|--------|-----|------------|------------|--------------|---------------|--------------------|
| 계  | 56건    |     |            |            |              |               |                    |
| 1  | ○츠     | ○○○ | 2001-05-15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2  | ○팅     | ○○○ | 2000-05-30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3  | ○팅     | ○○○ | 2000-05-30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4  | ○팅     | ○○○ | 2000-05-30 | 미신고        | 미이행          | 2017-07-06    | 2031-08-01         |
| 5  | ○팅     | ○○○ | 2000-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0-04-06    | 2030-04-05         |
| 6  | ○팅     | ○○○ | 2000-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7  | ○팅     | ○○○ | 2000-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8  | ○팅     | ○○○ | 2000-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9  | ○팅     | ○○○ | 2000-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10 | ○천     | ○○○ | 2000-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11 | ○팅     | ○○○ | 2000-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12 | ○팅     | ○○○ | 2000-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13 | ○팅     | ○○○ | 2000-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14 | ○대     | ○○○ | 2000-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15 | ○팅주식회사 | ○○○ | 2004-07-12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16 | ○팅     | ○○○ | 2000-06-03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17 | ○팅     | ○○○ | 2000-06-03 | 미신고        | 미이행          | 2022-05-11    | 2032-05-10         |
| 18 | ○팅     | ○○○ | 2000-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19 | ○부     | ○○○ | 2000-06-07 | 미신고        | 미이행          | 2020.03.16    | 2030-03-15         |
| 20 | ○프     | ○○○ | 2000-06-07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21 | ○팅     | ○○○ | 2000-06-15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22 | ○팅     | ○○○ | 2000-05-22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연번 | 상 호 | 대표자         | 최초등록       | 등록갱신<br>신고 | 등록갱신<br>사전고지 | 등록증<br>(재)발급일 | 감사제출자료<br>(등록유효기간) |
|----|-----|-------------|------------|------------|--------------|---------------|--------------------|
| 23 | ○링  | ○○○         | 2000-06-17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24 | ○럽  | ○○○         | 2000-06-17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25 | ○팅  | ○○○         | 2000-06-17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26 | ○팅  | ○○○         | 2000-06-17 | 미신고        | 미이행          | 2022-06-08    | 2031-08-01         |
| 27 | ○팅  | ○○○         | 2000-06-17 | 미신고        | 미이행          | 2020-02-18    | 2030-02-17         |
| 28 | ○팅  | ○○○         | 2000-06-17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29 | ○팅  | ○○○         | 2000-06-22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30 | ○츠  | ○○○         | 2000-06-28 | 미신고        | 미이행          | 2021-11-15    | 2031-11-14         |
| 31 | ○저  | ○○○         | 2000-07-05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32 | ○팅  | ○○○         | 2000-07-08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33 | ○팅  | ○○○         | 2000-08-1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34 | ○팅  | ○○○         | 2000-10-04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35 | ○팅  | ○○○         | 2002-04-16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36 | ○터  | ○○○         | 2000-05-03 | 미신고        | 미이행          | 2021-10-28    | 2031-10-27         |
| 37 | ○팅  | ○○○         | 2001-05-23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38 | ○팅  | ○○○         | 2003-06-   | 미신고        | 미이행          | 2016.08.30    | 2026-08-29         |
| 39 | ○팅  | ○○○         | 2001-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40 | ○팅  | ○○○         | 2001-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41 | ○팅  | ○○○         | 2001-06-05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42 | ○팅  | ○○○         | 2001-06-18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43 | ○팅  | ○○○,<br>○○○ | 2001-07-12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44 | ○팅  | ○○○         | 2001-08-28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45 | ○팅  | ○○○         | 2001-09-13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46 | ○팅  | ○○○         | 2001-09-13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연번 | 상 호       | 대표자 | 최초등록       | 등록갱신<br>신고 | 등록갱신<br>사전고지 | 등록증<br>(재)발급일 | 감사제출자료<br>(등록유효기간) |
|----|-----------|-----|------------|------------|--------------|---------------|--------------------|
| 47 | ○팅        | ○○○ | 2001-12-27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48 | ○럽        | ○○○ | 2002-08-17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49 | ○팅        | ○○○ | 2003-03-22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50 | ○쿨        | ○○○ | 2005-04-22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51 | ○합        | ○○○ | 2005-06-01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52 | ○팅        | ○○○ | 2006-03-27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53 | ○저        | ○○○ | 2011-02-18 | 미신고        | 미이행          | 2021-10-28    | 2031-10-27         |
| 54 | ○츠        | ○○○ | 2011-05-17 | 미신고        | 미이행          | 2021-08-02    | 2031-08-01         |
| 55 | (사)○회(○프) | ○○○ | 2011-07-28 | 미신고        | 미이행          | 2015-12-03    | 2031-08-01         |
| 56 | ○합        | ○○○ | 2021-06-02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1-08-02    | 2031-08-01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붙임 2] 영월군 등록 수상레저사업자 및 동력기구 소유자 의무 보험 가입 현황

| 구분          | 연번  | 상호(또는<br>기구종류) | 대표자<br>(소유주명) | 연도별 의무 보험 가입 기간(감사제출자료)   |               |                           |                           |
|-------------|-----|----------------|---------------|---------------------------|---------------|---------------------------|---------------------------|
|             |     |                |               | '18~'19                   | '19~'20       | '20~'21                   | '21~'22                   |
| 계           | 64건 |                |               |                           |               |                           |                           |
| 수상레저<br>사업자 | 1   | ○츠             | ○○○           | 2018-07-02<br>~2019-08-31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04<br>~2020-08-31 | 2021-07-01<br>~2021-08-31 |
|             | 2   | ○팅             | ○○○           | 2018-07-11<br>~2019-07-07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10<br>~2020-09-30 | 2021-07-09<br>~2021-08-31 |
|             | 3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4   | ○팅             | ○○○           | 2018-07-07<br>~2019-07-07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5   | ○팅             | ○○○           | 2018-07-18<br>~2019-07-18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6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6-02<br>~2020-08-31 | 2021-07-06<br>~2021-08-31 |
|             | 7   | ○팅             | ○○○           | 2018-07-06<br>~2019-07-06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8   | ○팅             | ○○○           | 2018-06-22<br>~2019-06-22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9   | ○팅             | ○○○           | 2018-07-05<br>~2019-07-05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15<br>~2020-09-15 | 2021-06-03<br>~2022-06-03 |
|             | 10  | ○천             | ○○○           | 2018-07-05<br>~2019-07-05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03<br>~2020-08-31 | 미제출<br>(확인불가)             |
|             | 11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12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13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14  | ○대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8-20<br>~2021-08-20 | 2021-08-20<br>~2022-08-20 |
|             | 15  | ○팅 주식회사        | ○○○           | 2018-07-10<br>~2019-07-10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10<br>~2021-07-10 | 2021-07-10<br>~2022-07-10 |
|             | 16  | ○팅             | ○○○           | 2018-06-27<br>~2019-06-27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17  | ○팅             | ○○○           | 2018-07-03<br>~2019-08-31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23<br>~2020-09-15 | 미제출<br>(확인불가)             |
|             | 18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19  | ○부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20  | ○프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21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22  | ○팅             | ○○○           | 2018-06-13<br>~2019-06-13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구분          | 연번 | 상호(또는<br>기구종류) | 대표자<br>(소유주명) | 연도별 의무 보험 가입 기간(감사제출자료)   |               |                           |                           |
|-------------|----|----------------|---------------|---------------------------|---------------|---------------------------|---------------------------|
|             |    |                |               | '18~'19                   | '19~'20       | '20~'21                   | '21~'22                   |
| 수상레저<br>사업자 | 23 | ○링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6-04<br>~2020-08-30 | 2021-06-15<br>~2022-06-15 |
|             | 24 | ○럽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6-01<br>~2020-08-30 | 미제출<br>(확인불가)             |
|             | 25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02<br>~2020-09-30 | 미제출<br>(확인불가)             |
|             | 26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6-04<br>~2021-07-08 | 2021-06-25<br>~2021-08-31 |
|             | 27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28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07<br>~2020-08-31 | 미제출<br>(확인불가)             |
|             | 29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17<br>~2020-08-30 | 미제출<br>(확인불가)             |
|             | 30 | ○츠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10<br>~2020-08-31 | 미제출<br>(확인불가)             |
|             | 31 | ○저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23<br>~2020-09-15 | 미제출<br>(확인불가)             |
|             | 32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5-20<br>~2021-05-30 | 2021-06-11<br>~2022-06-11 |
|             | 33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23<br>~2020-09-15 | 미제출<br>(확인불가)             |
|             | 34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35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36 | ○터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37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23<br>~2020-09-15 | 미제출<br>(확인불가)             |
|             | 38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39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40 | ○팅             | ○○○           | 2018-07-07<br>~2019-07-07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41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42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43 | ○팅             | ○○○,<br>○○○   | 2018-07-20<br>~2019-07-20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8-01<br>~2021-08-01 | 미제출<br>(확인불가)             |
|             | 44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5-08<br>~2020-08-31 | 2021-05-01<br>~2021-08-31 |
|             | 45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01<br>~2020-09-30 | 미제출<br>(확인불가)             |
|             | 46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구분          | 연번 | 상호(또는<br>기구종류) | 대표자<br>(소유주명) | 연도별 의무 보험 가입 기간(감사제출자료)   |                           |                           |                           |
|-------------|----|----------------|---------------|---------------------------|---------------------------|---------------------------|---------------------------|
|             |    |                |               | '18~'19                   | '19~'20                   | '20~'21                   | '21~'22                   |
| 수상레저<br>사업자 | 47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48 | ○럽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8-01<br>~2020-08-31 | 미제출<br>(확인불가)             |
|             | 49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50 | ○쿨             | ○○○           | 2018-06-05<br>~2019-06-05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51 | ○합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01<br>~2020-08-31 | 미제출<br>(확인불가)             |
|             | 52 | ○팅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2020-07-15<br>~2021-07-15 | 2021-07-15<br>~2022-07-15 |
|             | 53 | ○저             | ○○○           | 2018-07-07<br>~2019-07-07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54 | ○츠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55 | (사)○회(○프)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56 | ○합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동력기구<br>소유자 | 1  | 수상오토바이         | ○○○           | 2018-04-09<br>~2019-04-09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2  | 고무보트           | ○○○           | 미제출<br>(확인불가)             | 2019-01-08<br>~2020-01-08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3  | 수상오토바이         | ○○○           | 2017-09-07<br>~2018-09-07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4  | 수상오토바이         | ○○○           | 미제출<br>(확인불가)             | 2019-03-26<br>~2020-03-26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5  | 모터보트(선외기)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6  | 수상오토바이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7  | 모터보트(선내기)      | ○○○           | 2018-03-30<br>~2019-03-30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 8  | 모터보트(선외기)      | ○○○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미제출<br>(확인불가)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08]

# 강 원 도

##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자동차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영월군 ◆과

지방○○

AH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가. 무단방치자동차 처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장·군수는 방치자동차<sup>19)</sup>로 판단된 때에는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15호]에 따른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하여 폐차 요청 혹은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19)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그리고 법 제85조제1항, 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3]에 따르면 법 제26조제1항<sup>20)</sup>을 위반하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범칙금<sup>21)</sup>을 부과하고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통고처분은 방치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치행위자의 성명,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범칙금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이하 “관할 검찰청”이라 한다)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무단방치자동차를 확인하면 소유자 등을 조사하여 자진처리를 명령하고 차종에 따라 명령을 이행한 경우 20~30만 원,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방치행위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범칙금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며,

타 지자체로부터 자동차무단방치 사건을 이첩 받은 경우에도 방치행위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범칙금 부과 또는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붙임 1]과 같이 26건의 무단방치행위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할 것을 통고한 사실이 없고, 범칙금 부과를 위한 조사 혹은 수사 등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도 없으며,

20)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21) 범칙금 부과기준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
|--------------------|-----------------------------------------------|---------------|-------------|------------|
|                    |                                               |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                    |                                               |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 제8호 | 2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 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 1,000,000원    | 1,000,000원  | 1,500,000원 |

무단방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범칙금 납부 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함에도 짧게는 9개월 이상,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붙임 2]와 같이 18건의 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주민 신고 혹은 자체 조사를 통하여 방치 건으로 접수한 후 2022. 6.24. 감사일 현재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9개월 이상 경과 되었는데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를 처리할 것을 명령하거나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나.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법 제72조제2항<sup>22)</sup>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법 제73조제1항제3호<sup>23)</sup>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을 분기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에서는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 여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준수 여부,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관한 검사와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 38개 자동차관리사업자<sup>24)</sup>에 대한 지도·점검 및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아래 [표 1]과 같이 분기마다 실시하지 않고 일부 시기만 실시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2)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3) 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24) 영월군 자동차관리사업자 현황

| 구분       | 합계 | 정비업 |    |    |    | 매매업 | 해체재활용업 |
|----------|----|-----|----|----|----|-----|--------|
|          |    | 소계  | 종합 | 전문 | 소형 |     |        |
| 자동차관리사업자 | 38 | 35  | 1  | 34 | -  | 1   | 2      |

[표 1]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지도·점검 실시현황

| 연 도                     |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   |   |   | 2022년 |
|-------------------------|-------|---|---|---|------------|---|------------|------------|-------|---|---|---|-------|
| 분 기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 실시여부<br>(실시 ○<br>미실시 ×) | ×     | ○ | ○ | × | ×<br>(코로나) | ○ | ×<br>(코로나) | ×<br>(코로나) | ×     | × | × | × |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2020년은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도·점검 보류 요청에 따라 미실시(강원도 교통과-4825 (2020.3.4.)호, 18071(2020.8.27.호))

#### 다. 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4조, 제85조, 제8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제19조, 제21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18조에서는 운송사업자 및 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과 자격 요건 등을 정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령에서 정해진 각종 준수사항 및 자격 요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에 따라 면허나 허가의 취소,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이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 및 운전업무 종사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따라 면허 혹은 허가 취소,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이용 여건이나 당사자 등의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사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토 과정이나 절차도 없이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여 처분하였고, 그 결과 해당 위반행위자가 정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게 된 사실이 있다.

[표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현황

| 구분    | 성명  | 위반내용            | 처분일        | 처분사항            | 처분기준          |
|-------|-----|-----------------|------------|-----------------|---------------|
| 계     | 14건 |                 |            |                 |               |
| 여객자동차 | ○○○ | 운행시간 미준수        | 2019-09-09 | 과징금 부과<br>20만원  | 사업일부정지<br>5일  |
| 여객자동차 | ○○○ | 운행기록계 미작동 상태 운행 | 2019-09-09 | 과징금 부과<br>30만원  | 사업일부정지<br>5일  |
| 여객자동차 | ○○○ | 차고지외 밤샘주차       | 2019-12-13 | 과징금 부과<br>10만원  | 운행정지 3일       |
| 여객자동차 | ○○○ | 차고지외 밤샘주차       | 2020-01-20 | 과징금 부과<br>10만원  | 운행정지 3일       |
| 여객자동차 | ○○○ | 차고지외 밤샘주차       | 2020-01-20 | 과징금 부과<br>10만원  | 운행정지 3일       |
| 여객자동차 | ○○○ | 차고지외 밤샘주차       | 2020-01-20 | 과징금 부과<br>10만원  | 운행정지 3일       |
| 여객자동차 | ○○○ | 부제일 운행          | 2021-06-07 | 과징금 부과<br>120만원 | 사업일부정지<br>20일 |
| 여객자동차 | ○○○ |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2021-09-06 | 과징금 부과<br>90만원  | 사업일부정지<br>90일 |
| 화물자동차 | ○○○ | 차고지외 밤샘주차       | 2020-06-11 | 과징금 부과<br>10만원  | 운행정지 5일       |
| 화물자동차 | ○○○ |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 2020-09-14 | 과징금 부과<br>60만원  | 운행정지 30일      |
| 화물자동차 | ○○○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2020-10-08 | 과징금 부과<br>10만원  | 운행정지 5일       |
| 화물자동차 | ○○○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2021-04-02 | 과징금 부과<br>10만원  | 운행정지 5일       |
| 화물자동차 | ○○○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2021-04-26 | 과징금 부과<br>20만원  | 운행정지 5일       |
| 화물자동차 | ○○○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2021-05-27 | 과징금 부과<br>20만원  | 운행정지 5일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라. 과태료 감경 부과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택시발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및 운전업무 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청문이나 공청회 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의견제출 과정을 통해 처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감경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 자료, 위반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3]과 같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면서 처분 당사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만으로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나 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감경

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폭인 2분의 1까지 일괄적으로 임의 감경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임의 감경 부과 현황**

| 성명            | 위반내용                                 | 처분일        | 처분사항           | 처분기준           | 감경사항        | 관련법        |
|---------------|--------------------------------------|------------|----------------|----------------|-------------|------------|
| ○○○<br>(개인택시) | 부당 운임 또는 요금 수령                       | 2019-09-25 | 과태료 부과<br>10만원 | 과태료 부과<br>20만원 | 2분의 1<br>감경 | 택시<br>발전법  |
| ○○○<br>(개인택시) | 부당 운임 또는 요금 수령                       | 2021-07-27 | 과태료 부과<br>10만원 | 과태료 부과<br>20만원 | 2분의 1<br>감경 |            |
| ○○○<br>(개인택시) | 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요건 위반<br>(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 | 2021-06-30 | 과태료 부과<br>25만원 | 과태료 부과<br>50만원 | 2분의 1<br>감경 | 여객<br>자동차법 |
| ○○○<br>(개인택시) | 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요건 위반<br>(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 | 2021-07-16 | 과태료 부과<br>25만원 | 과태료 부과<br>50만원 | 2분의 1<br>감경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마.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법」 제50조 및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12조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화물자동차법」 제43조 및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6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운행한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위반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4]와 같이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을 하여 운전업무 종사자격 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만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4]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조치 미이행 현황

| 구분    | 성명  | 위반내용                                 | 처분일        | 처분사항           | 유가보조금<br>지급정지 조치 |
|-------|-----|--------------------------------------|------------|----------------|------------------|
| 여객자동차 | ○○○ | 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요건 위반<br>(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 | 2020-09-14 | 과징금 60만원       | 미이행              |
| 화물자동차 | ○○○ | "                                    | 2021-06-30 | 과태료 부과<br>25만원 | 미이행              |
| 화물자동차 | ○○○ | "                                    | 2021-07-16 | 과태료 부과<br>25만원 | 미이행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영월군 ◆과 지방○○ AH는 2021. 7. 1.부터 현재까지 ◆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검토,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 중간 결재권자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관할 검찰청 송치 업무,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조치 등의 업무가 부적정하거나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방치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무단방치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단방치자동차 등 미처리 현황(2019년 9월 ~ 현재까지)

(단위: 천 원)

| 접수일자       | 차량번호 | 차형                    | 소유자 | 자진처리<br>여부 | 범칙금 부과     |          | 검찰송치 | 비고 |
|------------|------|-----------------------|-----|------------|------------|----------|------|----|
|            |      |                       |     |            | 적정<br>부과금액 | 부과<br>여부 |      |    |
| 계          |      | 26건                   |     |            | 25,700     |          |      |    |
| 2019-12-06 | ○사○  | 화물저상형두성26M<br>콘벌크트레일러 | ○○○ | 미이행        | 1,5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19-12-10 | ○오○  | 모닝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19-12-30 | ○너○  | 카렌스2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0-02-21 | ○모○  | SM3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0-04-23 | ○부○  | 포터초장축더블캡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0-05-29 | ○마○  | 래이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0-08-27 | ○마○  | 에쿠스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0-09-01 | ○로○  | 갤로퍼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0-09-01 | ○더○  | 매그너스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0-09-01 | ○다○  | 스타렉스3밴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0-09-01 | ○구○  | 그랜저XG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0-09-10 | ○너○  | 포르테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0-11-16 | ○노○  | 옵티마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1-03-16 | ○오○  | 포터초장축더블캡              | ○○○ | 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접수일자       | 차량번호 | 차형         | 소유자 | 자진처리<br>여부 | 범칙금 부과     |          | 검찰송치 | 비고 |
|------------|------|------------|-----|------------|------------|----------|------|----|
|            |      |            |     |            | 적정<br>부과금액 | 부과<br>여부 |      |    |
| 2021-03-16 | ○나○  | 봉고3 왕바디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1-03-16 | ○가○  | 코란도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1-03-16 | ○오○  | 모닝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1-07-21 | ○서○  | NEW EF 소나타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1-07-21 | ○너○  | SM7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1-08-04 | ○머○  | 무쏘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1-08-26 | ○보○  | 포터2        | ○○○ | 미이행        | 2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1-08-31 | ○조○  | 그랜저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1-08-31 | ○루○  | 그랜저TG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2021-09-06 | ○모○  | 스타렉스       | ○○○ | 미이행        | 1,000      | 미부과      | 미송치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붙임 2] 무단방치자동차 등 처리 지연 현황(2019년 9월 ~ 현재까지)

| 접수일자       | 차량번호 | 차형     | 소유자 | 방치장소                       | 영월군<br>자진처리 명령 | 범칙행위<br>조사 |
|------------|------|--------|-----|----------------------------|----------------|------------|
| 계          |      | 18건    |     |                            |                |            |
| 2020-09-01 | ○우○  | SM3    | ○○○ | 남면 토교리 966                 | 미이행            | 미실시        |
| 2020-09-01 | ○너○  | 아반떼엑스디 | ○○○ | 단종로 105 인근                 | 미이행            | 미실시        |
| 2020-09-01 | ○로○  | 무쏘     | ○○○ | 동강둔치 내                     | 미이행            | 미실시        |
| 2021-08-25 | ○도○  | 재규어    | ○○○ | 영월읍 덕포리 560-5              | 미이행            | 미실시        |
| 2021-09-13 | ○나○  | 타우너    | ○○○ | 영월군 남면<br>북쌍리 916-9        | 미이행            | 미실시        |
| 2021-09-28 | ○두○  | 포터2    | ○○○ | 무릉도원면<br>운학리 481-3         | 미이행            | 미실시        |
| 2021-10-05 | ○두○  | 그레이스   | ○○○ | 영월읍 삼옥리 144                | 미이행            | 미실시        |
| 2021-10-05 | ○고○  | 그레이스   | ○○○ | 영월읍 삼옥리 144-3              | 미이행            | 미실시        |
| 2021-10-05 | ○저○  | 파워콤비   | ○○○ | 영월읍 삼옥리 144-3              | 미이행            | 미실시        |
| 2021-11-11 | ○주○  | 소나타3   | ○○○ | 영월군 남면<br>광천리 19           | 미이행            | 미실시        |
| 2021-11-19 | ○더○  | 체어맨    | ○○○ | 영월읍 연하리<br>신춘터널 입구         | 미이행            | 미실시        |
| 2022-01-05 | ○두○  | 무쏘 스포츠 | ○○○ | 북면 문곡리 535                 | 미이행            | 미실시        |
| 2022-02-08 | ○누○  | sm5    | ○○○ | 영월경찰서 내                    | 미이행            | 미실시        |
| 2022-02-08 | ○루○  | 재규어    | ○○○ | 영월읍 덕포리 575-1              | 이행             | 미실시        |
| 2022-04-13 | ○노○  | 그레이스   | ○○○ | 영월읍 영흥리 833-1              | 미이행            |            |
| 2022-05-02 | ○다○  | 포터2    | ○○○ | 영월읍 하송리 100-6<br>연화연립 옆 노상 | 미이행            |            |
| 2022-05-04 | ○머○1 | 베르나    | ○○○ | 영월읍 문산리 743<br>인근          | 미이행            |            |
| 2022-05-11 | ○거○  | 에쿠스    | ○○○ | 영월읍 영흥리<br>707-41          | 미이행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09]

# 강 원 도

## 주의 요구

제 목 선바위골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추진 소홀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풍부한 산림자원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관광자원개발사업(이하 “지특회계” 라 한다)에 선정되어 ‘선바위골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 [ 사업개요 ]

- 위 치: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80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8. ~ 2019.(2년간)
- 사 업 비: 1,500백만원(국비 750<sup>50%</sup>, 도비 225<sup>15%</sup>, 군비 525<sup>35%</sup>) \*토지매입 별도(군비 542)
- 사업내용: 야영장(10면), 글램핑(10동), 카라반(5대), 쉼터, 주차장, 관리실 등  
-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편의시설 포함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사업 추진 세부현황(붙임) 참조

## 가. 사업대상지 변경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공사를 시행하려면 우선 공사의 필요성,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집행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의 필요성,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지특회계 예산 신청 시 영월읍 상동읍 내덕리 일원에 조성이 완료된 숲마을 부지 내에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2017.4.)」에 따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부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가마(숲 생산시설) 및 숲 치유센터(편의시설)와 연계한 숲힐링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에 준공하겠다고 기본 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이후 예산 편성 및 실시설계 완료, 개발행위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 12월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숲가마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연기가 사업 대상지로 그대로 향하여 향후 조성될 캠핑장의 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2020년 3월 공사를 착공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 부지를 변경할 것을 결정하였고,

사업 부지 변경을 위해 설계를 1차 변경한 후, 부지 변경에 따른 국유지 매입 및 토지 분할, 건축 신고 등의 필요 과정들이 생기자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20년 12월 또다시 설계를 변경(2차)하였고, 2021년 7월이 되어서야 건축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재개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2021년 11월이 되어서야 준공을 완료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기본 구상 단계부터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표 1] 사업대상지 변경 현황

| 구 분 | 소 재 지                    | 면적(㎡) | 예정시설                                  |
|-----|--------------------------|-------|---------------------------------------|
| 당 초 | ① 상동읍 내덕리 80번지(지특 신청 시)  | 2,500 | · 야영장(10면), 글램핑(10동), 카라반(5대)         |
|     | ② 산동읍 내덕리 산12-3(최초 실시설계) |       | · 트리하우스(3동), 글램핑(10동)                 |
| 변 경 | ③ 상동읍 내덕리 80번지 일원        | 5,753 | · 칩보일러, 발전설비, 목재칩 건조시설<br>· 공동창고, 작업장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나. 보조금 정산보고 지연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 또는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3개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국가보조금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교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2]와 같이 국가 및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인 ‘선바위골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2021. 11. 1. 준공을 완료하고 7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2. 6. 17.에서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보조금 교부 결정 현황

| 사업명                      | 보조금 교부액           |         |         | 실적보고서<br>제출                        | 비고                      |
|--------------------------|-------------------|---------|---------|------------------------------------|-------------------------|
|                          | 구분                | 국비      | 도비      |                                    |                         |
| 선바위골<br>국민여가캠핑장<br>조성 사업 | 소계                | 750,000 | 225,000 | 문화관광<br>체육과-16681<br>(2022. 6.17.) | 사업 준공일<br>(2021.11. 1.) |
|                          | 교부결정(2018. 4.30.) | 250,000 | 75,000  |                                    |                         |
|                          | 교부결정(2019. 5. 8.) | 500,000 | 150,000 |                                    |                         |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주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영월군 선바위골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추진경과

- 2017. 9. 22 : 선바위골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
- 2018. 1. 16 : 지특 사업 선정
- 2018. 12. 3 : 실시설계용역 시행(토목분야\_부지조성 2,500㎡)
- 2019. 2. 20 : 실시설계용역 시행(건축분야\_트리하우스 3동, 글램핑 10동)
- 2019. 3. 20 : 실시설계용역 계약기간 연장(55일 연장)
  - 마을에서 트리하우스 등 건축설계 반영을 요청하여 건축설계(안) 확정을 위한 토목 설계(기반, 지형)과업 내용 변경을 위한 추가 용역기간 소요
- 2019. 4. 20 : 실시설계 용역 중지(토목, 건축)
  - 글램핑장(10동), 트리하우스(3동)의 적절한 동선배치를 위해 기초조사 및 중간 설계 중 경사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및 동별 배치에 대한 마을과의 이견이 최종 확정시 까지 용역중지 필요
- 2019. 8. 1 : 실시설계용역 중지 해지
- 2019. 10. 30 :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협의(○리 산○)
- 2019. 12. 16 : 상동 선바위골 조성공사 시행(토목\_○건설)
- 2019. 12. 26 : 상동 선바위골 조성공사 공사중지 동절기(토목)
- 2019. 12. 30 : 상동 선바위골 조성공사 시행(관리동 \_○건설)
  - 건축(전기,통신,기계포함)공사
- 2020. 3. 3 : 사업대상지 변경(안) 검토보고(○리 산○ → 내덕리 80일원)
- 2020. 5. 11 : 상동 선바위골 조성공사 설계변경 시행(사업대상지 변경)
- 2020. 5. 18 : 상동 선바위골 조성공사 재착공
- 2020. 5. 28 :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위한 석축쌓기 긴급시행(선공사\_출장복명)
- 2020. 7. 06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허가 효력 소멸\_○리 산○)
- 2020. 9. 20 : 공사기간 연장(증 49일\_우기로 인한 공기부족)
- 2020. 12. 17 : 상동 선바위골 조성공사 (2차)설계변경 시행(국유지 토지 분할 등)
- 2020. 12. 28 : 상동 선바위골 조성공사\_관리동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 해제
  - 공기연장 등
- 2021. 7. 6 : 건축 신고 협의(허가) 완료
- 2021. 11. 1 : 인허가 준공 및 보존등기 완료

[일련번호:10]

# 강 원 도

##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통보 의무 이행 소홀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영월군 ★과

지방○○○

AI

내 용

영월군(★과)은 개발사업의 인·허가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통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제47조(사업 인·허가 등의 통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전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sup>25)</sup>의 인·허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 규모, 생태계 훼손면적,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내용을 시·도지사(강원도 환경과)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

2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 「광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월군은 2019. 9. 2.부터 2019. 9. 10.까지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영월군 종합감사 결과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인·허가 사항 미통보에 따른 부과금 누락’ 건<sup>26)</sup>으로 ‘시정’ 조치 현지처분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은 [표]의 각 사업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수허가자(사업자)에게 인·허가 처분을 하고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징수권자인 강원도지사(환경과)에게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과)은 [표]와 같이 ‘영월군 국가하천 하상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강원도지사(환경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생태계보전부담금 추정금액 110,957천 원<sup>27)</sup> 이 수허가자에게 부과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통지 미실시 현황**

(단위: m<sup>2</sup>, 천원)

| 사업자 | 사업명<br>(목적)           | 사업위치             | 소규모환경<br>영향평가<br>[협의일] | 인허가<br>증인일<br>[허가면적]                   | 용도<br>지역 | 부과면적<br>(훼손면적) | 생태계보전<br>부담금<br>(추정금액*) | 비고 |
|-----|-----------------------|------------------|------------------------|----------------------------------------|----------|----------------|-------------------------|----|
|     | 합계                    |                  |                        |                                        |          | 173,956        | 110,957                 |    |
| 영월군 | 영월군<br>국가하천<br>하상정비사업 | ○읍 ○리 ○<br>외 8필지 | 2021.10.05.            | 2022.05.06.<br>[84,318m <sup>2</sup> ] | 녹지       | 84,318         | 50,591                  | ○과 |

26) 사업부서: △과, ㉠과, ★과

27) 추정금액 산출 산식(2001.10.8.이후 최초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대상사업 산정기준 적용)

- 훼손면적 m<sup>2</sup> × 300원(1m<sup>2</sup> 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 부과금액

- 지역계수: 계획관리 1, 녹지지역 2, 보전관리 3.5, 농림지역 3, 생산관리 2.5, 자연환경보전 4

| 사업자 | 사업명<br>(목적)                     | 사업위치               | 소규모환경<br>영향평가<br>[협의일] | 인허가<br>증인일<br>[허가면적]     | 용도<br>지역 | 부과면적<br>(훼손면적) | 생태계보전<br>부담금<br>(추정금액*) | 비고 |
|-----|---------------------------------|--------------------|------------------------|--------------------------|----------|----------------|-------------------------|----|
| 영월군 | 영월군 삼화천<br>(지방하천)재해<br>복구사업     | ○면 ○리 산○<br>외 80필지 | 2021.07.13.            | 2021.07.26.<br>[67,087㎡] | 계획       | 30,126         | 9,038                   | ○과 |
|     |                                 |                    |                        |                          | 농림       | 30,642         | 27,578                  |    |
|     |                                 |                    |                        |                          | 보전       | 2,816          | 2,957                   |    |
|     |                                 |                    |                        |                          | 생산       | 78             | 58                      |    |
| 영월군 | 중동면 연상리<br>농어촌도로102<br>호 선형개량공사 | ○면 ○리 ○<br>외 15필지  | 2020.09.02.            | 2021.11.16.<br>[32,213㎡] | 계획       | 4,437          | 1,331                   | ○과 |
|     |                                 |                    |                        |                          | 농림       | 21,407         | 19,266                  |    |
|     |                                 |                    |                        |                          | 보전       | 132            | 138                     |    |

주) 자료 : 영월군(★과) 제출자료 재구성

※ 생태계보전부담금 추정금액은 사업지역이 원형보전지역 없이 모두 개발된다는 전제 조건 및 편입면적 중 미부과 대상 지목(필지)을 제외한 후 훼손면적에 대한 용도지역 지역계수를 적용한 추정금액임.

영월군 ★과 지방○○ AI는 2018. 10. 1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 ○팀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국가하천유지관리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의 추진 시 2019년 영월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소하천(결운천) 정비공사’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현지처분요구(시정)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미통보 유사 사례에 있었음에도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과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인·허가 사항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영월군 국가하천 하상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부과되도록 인·허가 사항을 강원도(환경과)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1]

# 강 원 도 통 보

제 목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및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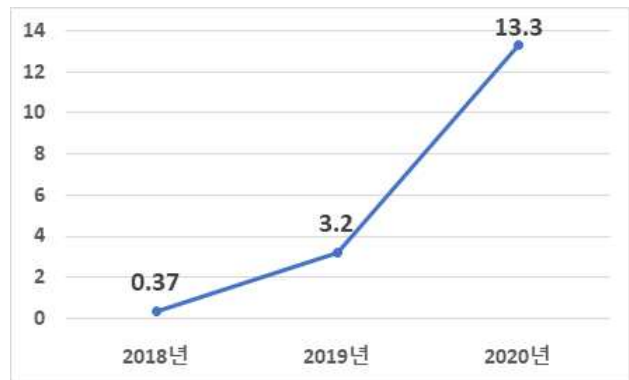
영월군에서는 지역 내에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상품권 판매현황은 [그림 1]과 같이 2018년 0.37조 원에서 2020년 13.3조 원으로, 2018년 대비 2020년에 36배(12.93조)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표 1]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개념)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5.1., 제정)
  - ※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조례를 통해 운영 중
- (사용)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 (혜택) 지자체 자율로 구매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5% 내외~최대 10%)
- (유형) 지류, 모바일, 카드 등 3가지로 분류

[그림 1]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현황 (18~20)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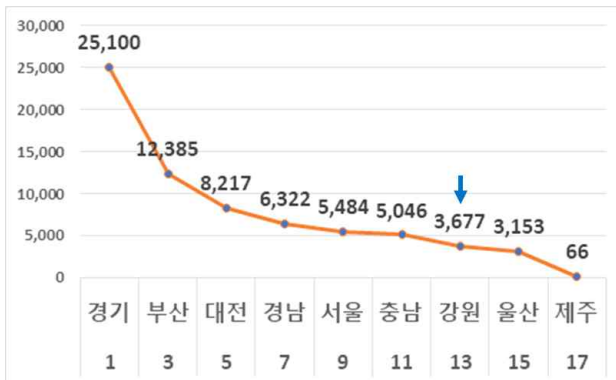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역사랑상품권 13.3조 원 판매(2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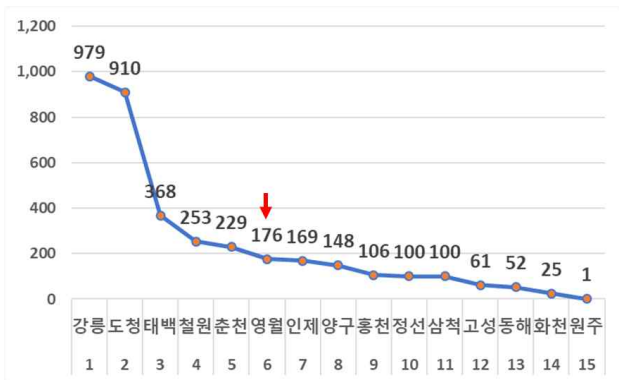
특히 2020년 기준으로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경기도가 25,10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는 3,677억 원으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13번째로 실적이 높았다.

그리고 강원도 관내 15개 시·군의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강릉시가 979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월군은 176억 원으로 6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2020년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단위: 억 원)



[그림 3] 2020년 강원도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단위: 억 원)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역사랑상품권 13.3조 원 판매(21.1월)' 및 영월군 제출 자료 재구성

## 1. 금고 약정 미체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및 「영월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상품권운영자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수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은행을 금고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2019. 9. 1.부터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상품권운영자금(누적발행액 1,060억 원)을 관리하면서 아무런 금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금고 업무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없으며, 금고 지정 관련 법령·조례 등을 위반하였으며, [표 2]와 같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였다.

[표 2] 금고 약정 시 우대 금리 현황

(단위: %)

| 구분   | 기간    | 고시금리(A) | 우대금리(B) | 제안금리(A+B) |
|------|-------|---------|---------|-----------|
| 정기예금 | 1년 이상 | 0.55    | 0.20    | 0.75      |
| 공급예금 | -     | 0.20    | 0.20    | 0.40      |
| 보통예금 | -     | 0.10    | 0.30    | 0.40      |

※ '2022년 영월군 금고업무(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취급 약정서' 재구성

## 2.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관련 심사 업무 소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 및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sup>28)</sup>의 자격 요건으로 “영월군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이거나 “지역사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기업이나 조직(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 및 제9조 2항에 따르면 군수는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영월군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가 아닌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현재 등록된 가맹점에

28)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자

대한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2019. 9. 1.부터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업무를 하면서 자격 요건을 단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영월군 관할 구역이 아닌 ○시 ○구 ○로 ○에 소재한 업체(○츠<sup>29)</sup>)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영리 행위를 하거나,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과 무관한 단란주점, (접대부)주점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표 3] 영월군 지역공동체 발전과 무관한 가맹점 현황

(단위: 건, 원)

| 가맹점명                                               | 주소                | 업종(코드)        | 건수     | 금액          |
|----------------------------------------------------|-------------------|---------------|--------|-------------|
| 영월군 관할 구역 외에 소재한 가맹점에 사용한 현황(1개 업체, 총420,965,700원) |                   |               |        |             |
| ○츠                                                 | ○구 ○로 ○ ○층 (○센터)  | 유통업영리(4110)   | 18,212 | 425,067,300 |
| 가맹점 등록 제한 업체에 사용한 현황(3개 업체, 총6,722,000원)           |                   |               |        |             |
| ○스                                                 | 강원 ○군 ○읍 ○리 ○-○번지 | 단란주점(8201)    | 24     | 2,171,000   |
| ○럼                                                 | 강원 ○군 ○읍 ○리○-○번지○ | (접대부)주점(8013) | 47     | 2,697,000   |
| ○젤                                                 | 강원 ○군 ○읍 ○길 ○     | (접대부)주점(8013) | 9      | 1,854,000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가맹점 등록 관련 규제 완화 및 규제 강화 소홀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표 4]와 같은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되어 있다.

[표 4] 가맹점 자격 요건

|                                           |
|-------------------------------------------|
|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서 소재한 업소                    |
| 2.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사회적경제 조직 |
|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29) 온라인 쇼핑몰에 방문한 고객들이 더 편한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자결제서비스

그리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22.5월)」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따르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게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강원발전 전략과제(22.5월)」의 첫 번째 과제 “규제프리 강원도 실현”에 따르면, 풀 수 있는 규제는 전부 풀고, 풀 수 없는 규제는 상응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혁신적으로 규제가 개혁되도록 목표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앞으로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받아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업종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건전한 시장경제 조성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고, 규제 강화가 필요한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방치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해(害)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2019. 9. 1.부터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영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업체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관광여행(업종코드 1110)부터 초·중·고 교육기관(업종코드 5121)까지 7개 업종에 대하여 영업장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는 위 7개의 가맹점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하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2021년 기준으로 400,511천 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영월군(△과)에서는 [표 5]와 같이 가맹점 등록 제한이 필요한 온라인 오픈마켓상품권이나 안마시술소, 칵테일바 등은 별도로 등록 제한을 하지 않아 위 “2항”과 같이 영월군 지역공동체 발전 등에 해(害)가 될 우려가 있다.

[표 5] 가맹점 등록 필요 및 등록 제한 업종 현황

| 번호 | 등록이 필요한 업종(규제 완화) |         |                                                             | 등록 제한이 필요한 업종(규제 강화) |           |                                               |
|----|-------------------|---------|-------------------------------------------------------------|----------------------|-----------|-----------------------------------------------|
|    | 업종코드              | 업종명     | 비고                                                          | 업종코드                 | 업종명       | 비고                                            |
|    |                   | 7개      |                                                             |                      | 7개        |                                               |
| 1  | 1110              | 관광여행    | 강릉, 청주, 천안, 밀양 등 타 지자체에서는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월군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 4200                 | 상품권       | 인제군 등 타 지자체에서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영월군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음 |
| 2  | 1120              | 고속버스    |                                                             | 4126                 | 오픈마켓상품권   |                                               |
| 3  | 1121              | 철도      |                                                             | 6210                 | 티켓(전자상거래) |                                               |
| 4  | 4030              | 보훈매장    |                                                             | 7104                 | (퇴폐)안마시술소 |                                               |
| 5  | 5306              | 택시      |                                                             | 8201                 | 단란주점      |                                               |
| 6  | 5120              | 대학등록금   |                                                             | 8010                 | 각테일바      |                                               |
| 7  | 5121              | 초중고교육기관 |                                                             | 8013                 | 주점 중 일부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4.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부적정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속 직원에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게 되어 있고, 또한 소속 직원의 의견 수렴 없이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다만 부득이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40%” 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소속 직원의 반대 의견이 많은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지급할 경우에는 개인별 자율항목의 40%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2019. 9. 25. 영월군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2019. 9. 27. “맞춤형복지 기본 포인트 중 200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안)”에 대하여 부서(개인별)의견을 수렴한 결과, “49.13%<sup>30)</sup>”가 반대하여 사실상 소속 직원이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영월군(♣과)에서는 [표 6]과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557,913,690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고, 이 중 72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본인의 복지포인트(100%) 중 40%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총 14,349,880원)으로 지급하였다.

[표 6]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현황

(단위: 명, 원)

| 연도   | 전체 포인트 지급 |             | 전체 포인트 중 40% 초과 지급 |            | 예산항목                      |
|------|-----------|-------------|--------------------|------------|---------------------------|
|      | 인원수       | 금액          | 인원수                | 금액         |                           |
| 합계   | 2,802     | 557,913,690 | 72                 | 14,349,880 | -                         |
| 2020 | 854       | 171,511,670 | 5                  | 1,000,000  | 201-04<br>맞춤형복지제도<br>시행경비 |
| 2021 | 1,008     | 199,802,020 | 41                 | 8,149,880  |                           |
| 2022 | 940       | 186,600,000 | 26                 | 5,200,000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통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상품권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가맹점 등록과 취소 그리고 등록 완화와 제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0) 총 405명이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 206명 반대 199명(49.13%)

[일련번호:12]

# 강 원 도

## 훈계·주의요구·통보

제 목 법인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       |                    |      |    |
|-------|--------------------|------|----|
| 관 련 자 | ① 강원도 영월군 ◎과(전 ◎과) | 지방○○ | AJ |
|       | ② 강원도 영월군 ○실(전 ◎과) | 지방○○ | AK |
|       | ③ 강원도 영월군 ●소(전 ◎과) | 지방○○ | AL |
|       | ④ 강원도 영월군 ◎과       | 지방○○ | AM |
|       | ⑤ 강원도 영월군 ◆과(전 ◎과) | 지방○○ | AN |
|       | ⑥ 강원도 영월군 ◎과       | 지방○○ | AO |

내 용

영월군에서는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책임성을 높이면서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다.

### 1.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과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를 사적

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사용요령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품의를 득(得)하여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법인카드 사용 시 정당한 회계처리 절차

| [①단계 품의행위]                                                          | [②단계 원인행위]                  | [③단계 지출처리]                                                      |
|---------------------------------------------------------------------|-----------------------------|-----------------------------------------------------------------|
|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사전 품의”(결재) | 가격 비교 후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 결정 |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 처리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재구성

#### 가. 화훼업체 관련

영월군(☉과)에서는 2021. 3월경(날짜 모름) ○회 ○장 ○○○가 ○회 ○실 ○서 ○○○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설”에 꽃바구니(10만원)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자, 2021. 3. 13. ○락(강원도 ○군 ○읍 ○로 ○, 꽃집·꽃배달)에 전화로 주문하여 배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위 외상값을 상환하기 위하여 2021. 3. 15. “○회 청사 환경정화용 화분 구입” 명목으로 온나라결재시스템에서 허위 품의를 하고 ○장(○○○) 결재를 득한 후, ○락에 직접 방문하여 법인카드로 20만 원을 결재하여 누적된 외상값에 일부를 상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표 2]와 같이 2021. 1. 4.부터 2022. 5. 4.까지 영월군(☉과)에서는 ○락과 ○위 2개 업체를 이용하여 ○회 ○장 ○○○와 ○장 ○○○의 개인 사용 목적 등으로 외상으로 우선 구매한 후 외상값 상환을 위하여 허위 품의<sup>31)</sup>

31) 허위 품의는 외상 구매 전 또는 구매 후에도 물품 대금 마련을 위하여 하였음

를 하고 최종 결재를 득한 후, ○락과 ○위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법인카드로 외상값을 상환하는 방식 등으로 19건 총 185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표 2] 화훼업체 관련 허위 품의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심 내역

(단위: 천 원)

| 번호                         | 실제(부당) 사용 현황 |                      |      |    |                         |     | 외상금액<br>누적잔액 | 허위 품의 현황  |                                 |                         | 카드<br>결제<br>금액<br>(외상값<br>상환등) | 비고         |
|----------------------------|--------------|----------------------|------|----|-------------------------|-----|--------------|-----------|---------------------------------|-------------------------|--------------------------------|------------|
|                            | 사용<br>날짜     | 명목                   | 품목   | 수량 | 외상 <sup>32)</sup><br>금액 | 사용자 |              | 결재<br>날짜  | 제목                              | 품의 <sup>33)</sup><br>금액 |                                |            |
| ○락 부당 구매 내역(13건, 1,010천 원) |              |                      |      |    |                         |     |              |           |                                 |                         |                                |            |
| 1                          | 21.1.4.      | ○부 ○○○               | 꽃바구니 | 1  | 50                      | ○○○ | -740         | 21.1.11.  | ○회청사 환경정화를<br>위한 화분구입           | 500                     | 500                            | 사적사용<br>의심 |
| 2                          | 21.3.13.     | ○설<br>(축하 명목)        | 꽃바구니 | 1  | 100                     | ○○○ | -583         | 21.5.11.  | ○회 청사<br>환경정화용 화분 구입            | 300                     | 300                            | 사적사용       |
| 3                          | 21.6.27.     | ○○○ ○장<br>재직 ○주년     | 꽃바구니 | 1  | 50                      | ○○○ | -818         | 21.8.6.   | ○회 청사 환경정비용<br>화분 등 구입          | 500                     | 500                            | "          |
| 4                          | 21.9.28.     | ○○○ ○장<br>○전         | 화분   | 1  | 50                      | ○○○ | -598         | 21.9.16.  | ○회청사 환경정비를<br>위한 화분 구입          | 150                     | 150                            | "          |
| 5                          | 21.11.2.     | 사진 전시회<br>○○○        | 화분   | 1  | 50                      | ○○○ | -640         | 21.12.29. | ○회 종무식<br>물품구입비 지출              | 450 <sup>34)</sup>      | 450                            | 사적사용<br>의심 |
| 6                          | 22.1.11.     | ○설<br>관계자            | 꽃바구니 | 1  | 100                     | ○○○ | -735         | 22.1.26.  | 제244차 ○회<br>○회 화분·꽃수반 구입 등 2건   | 700                     | 700                            | "          |
| 7                          | 22.2.5.      | ○트                   | 화환   | 1  | 100                     | ○○○ | -435         | 22.3.23.  |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br>꽃수반 구입           | 400                     | 400                            | "          |
| 8                          | 22.2.10.     | ○서<br>○○○ ○장         | 꽃바구니 | 1  | 100                     | ○○○ | -535         | "         | "                               | -                       | -                              | "          |
| 9                          | "            | ○서<br>○○○ ○장         | 꽃바구니 | 1  | 100                     | ○○○ | -635         | "         | "                               | -                       | -                              | "          |
| 10                         | 22.2.11.     | ○서<br>○○○ ○장         | 꽃바구니 | 1  | 50                      | ○○○ | -685         | "         | "                               | -                       | -                              | "          |
| 11                         | "            | ○청<br>○○○ ○관         | 꽃바구니 | 1  | 60                      | ○○○ | -745         | "         | "                               | -                       | -                              | "          |
| 12                         | 22.2.22.     | ○당<br>(신원미상)         | 근조   | 1  | 100                     | ○○○ | -845         | "         | "                               | -                       | -                              | "          |
| 13                         | 22.4.12.     | ○장<br>○○○            | 근조   | 1  | 100                     | ○○○ | -145         | 22.4.27   |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br>꽃수반 구입           | 400                     | 400                            | "          |
| ○위 부당 구매 내역(6건, 840천 원)    |              |                      |      |    |                         |     |              |           |                                 |                         |                                |            |
| 1                          | 21.10.8.     | ○사 ○사<br>○제          | 동양난  | 1  | 100                     | ○○○ | -340         | 21.12.29. | 사무실 환경정화용<br>화분 구입              | 200                     | 200                            | 사적사용<br>의심 |
| 2                          | 21.11.30.    | ○업 축이전<br>사업번창 축하 화분 | 서양난  | 1  | 100                     | ○○○ | -440         | "         | "                               | -                       | -                              | "          |
| 3                          | 22.1.3.      | ○○○ 등<br>7명 인사발령 전출자 | 꽃바구니 | 7  | 350                     | ○○○ | -620         | 22.2.21.  | 청사환경정비를 위한<br>꽃수반 구입 등 2건       | 600 <sup>35)</sup>      | 600                            | "          |
| 4                          | 22.3.16.     | ○성 ○면<br>○○○ ○장      | 화분   | 1  | 120                     | ○○○ | -210         | 22.3.29.  | 22년 제6차 ○회 정례<br>간담회 경비 지출 등 2건 | 150 <sup>36)</sup>      | 150                            | "          |
| 5                          | 22.5.3.      | ○용 ○ ○○○<br>○장 꽃바구니  | 꽃바구니 | 1  | 70                      | ○○○ | -230         | 22.5.25.  |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꽃<br>수반 구입           | 200                     | 200                            | "          |
| 6                          | 22.5.4.      | ○군 ○장<br>(○회 ○님 ○상)  | 근조   | 1  | 100                     | ○○○ | -130         | "         | "                               | -                       | -                              | "          |

※ 영월군 자료 재구성

32) 외상금액이 “부당 사용 금액”임

## 나. ○식당 관련

영월군(◎과)에서는 2021. 6. 17. ○식당(강원 ○군 ○읍 ○로 ○)에서 회식 후 식대 총 141,000원을 계산하면서 ○회 ○장 ○○○가 “○읍 밖에 사시는 ○원들은 대리비를 챙겨주세요” 라고 지시하여 ○원(이름 모름, ○군 ○면 거주) 대리비 58,000원을 포함하여 총 240,000원(식대 141,000원+대리비 58,000원+장부 저축 41,000원)을 결제하여 대리비 58,000원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표 3]과 같이 2020. 1. 24.부터 2022. 1. 27.까지 영월군(◎과)에서는 ○식당을 이용하여 1년에 두 번 명절에 ○회 소속 직원에게 소갈비 선물 세트 등을 선물하면서 ○회 ○원들에게도 선물을 지급하고 싶으나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없자, 선물 대금 지급 없이 외상으로 먼저 구입 후 ○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배부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명목으로 허위 품의로 결재를 득한 후에 법인카드로 외상값을 상환하는 방법 등으로 6건<sup>37)</sup> 총 3,685천 원<sup>38)</sup>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표 3] ○식당 관련 허위 품의 및 법인 카드 사적 구매 의심 내역

(단위: 천 원)

| 번호                        | 실제(부당) 사용 현황 |                                     |             |    |              |                         | 외상금액         | 허위 품의 현황                |                             |                         | 카드<br>결제<br>(외상값<br>상환등) | 비고         |
|---------------------------|--------------|-------------------------------------|-------------|----|--------------|-------------------------|--------------|-------------------------|-----------------------------|-------------------------|--------------------------|------------|
|                           | 사용<br>날짜     | 명목                                  | 품목          | 수량 | 사용자<br>(구매자) | 외상 <sup>39)</sup><br>금액 | 누적잔액<br>및보유금 | 결제<br>날짜                | 제목                          | 품의 <sup>40)</sup><br>금액 |                          |            |
| ○식당 부당 구매 내역(6건, 3,658천원) |              |                                     |             |    |              |                         |              |                         |                             |                         |                          |            |
| 1                         | 20.1.24.     | 21명(○회직원 14명+○원7명)<br>210만원 명절선물 구입 | 소갈비<br>선물세트 | 21 | ○원<br>○원     | 700                     | -700         | 20.8.28. <sup>41)</sup> | 제269회 ○회 ○회<br>(제4일차) 경비 지출 | 160                     | 160                      | 사적사용<br>의심 |

33) 일부 품의금액에는 부당 사용 금액과 실제 정당하게 사용된 금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34) 품의금액 450천 원 중 330천원은 종무식 물품구입비로 정당금액이고, 남은 120천 원은 외상값 상환을 위한 허위 품의금액임

35) 품의금액 600천 원 중 50천원은 정당하게 집행되었고, 550천 원은 외상값 상환을 위한 허위 품의금액임

36) 품의금액 150천 원 중 30천원은 정당하게 집행되었고, 120천 원은 외상값 상환을 위한 허위 품의금액임

37) 6건 중 5건은 먼저 외상으로 구매한 후에 허위 품의로 외상값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1건은 먼저 허위품위로 선결 재하여 선물구입비를 사전에 마련한 후에 구매함

38) [표 3]에 1번 700천 원 + 2번 800천 원 + 3번 700천 원 + 4번 58천 원(○원대리비) + 5번 700천 원(○원7명 선 물구매비용) + 6번 700천 원 등 총 3,658천 원임

| 번호 | 실제(부당) 사용 현황 |                                        |              |    |              |                         | 외상금액<br>누적잔액<br>및보유금 | 허위 품의 현황 |                               |                         | 카드<br>결제<br>(외상값<br>상환등) | 비고              |
|----|--------------|----------------------------------------|--------------|----|--------------|-------------------------|----------------------|----------|-------------------------------|-------------------------|--------------------------|-----------------|
|    | 사용<br>날짜     | 명목                                     | 품목           | 수량 | 사용자<br>(구매자) | 외상 <sup>39)</sup><br>금액 |                      | 결제<br>날짜 | 제목                            | 품의 <sup>40)</sup><br>금액 |                          |                 |
| 2  | 20.9.28.     | 22명(직원14명+의원7명+모듬1명)<br>220만원 명절 선물 구입 | 불고기<br>선물세트  | 22 | 의원<br>의원     | 800                     | -1,189               | 20.12.9. | 제273회 ○회 ○회<br>(제10일차) 경비 지출  | 228                     | 228                      | 〃               |
| 3  | 21.2.4.      | 21명(○회직원 14명+의원7명)<br>210만원 명절 선물 구입   | 국거리<br>선물세트  | 21 | 의원<br>의원     | 700                     | -1,215               | 21.6.19. | ○회 제278회 ○회<br>1일차 경비 지출      | 150                     | 150                      | 〃               |
|    | 21.4.26.     | 외상값 상환<br>카드 결제                        | -            | -  | -            | -                       | -1,034               | 21.4.27. | 2021년 제10차 ○원<br>정례 간담회 경비 지출 | 56                      | 56                       | 〃               |
|    | 21.5.10.     | 〃                                      | -            | -  | -            | -                       | -964                 | 21.5.11  | 제277회 ○회<br>○회 제1일차 경비 지출     | 70                      | 70                       | 〃               |
| 4  | 21.6.17.     | ○회회식 240천원 결제(식대<br>141+대리비58+장부저축41)  | 식대           | 1  | 의원<br>의원     | 199                     | -859                 | 21.6.18  | ○회 제278회<br>○회 3일차 경비 지출      | 240                     | 240                      | 사적사용            |
| 5  | 21.9.16.     | 21명(○회직원 14명+의원7명)<br>210만원 명절 선물 구입   | 불고기<br>선물세트  | 21 | 의원<br>의원     | 700                     | -340                 | 21.9.28. | 2021년 제23차 ○원<br>정례간담회 경비 지출  | 112                     | 112                      | 사적사용<br>의심      |
|    | 22.1.12.     | 의원 명절 선물<br>준비를 위한 선결제                 | -            | -  | -            | -                       | 360                  | 22.1.13. | 제285회 ○회<br>○회 1일차 저녁 식사      | 120                     | 120                      | 사적사용<br>의심(선결제) |
|    | 22.1.17.     | 의원 명절 선물<br>준비를 위한 선결제                 | -            | -  | -            | -                       | 540                  | 22.1.20. | 제285회 ○회<br>○회 4일차 저녁 식사      | 180                     | 180                      | 〃               |
|    | 22.1.18.     | 의원 명절 선물<br>준비를 위한 선결제                 | -            | -  | -            | -                       | 720                  | 22.1.19. | 제285회 ○회<br>○회 5일차 저녁 식사      | 180                     | 180                      | 〃               |
| 6  | 22.1.27.     | 21명(의원7명+직원14명)<br>210만원 명절 선물 구입      | 소불고기<br>선물세트 | 21 | 의원<br>의원     | 152 <sup>42)</sup>      | -152                 | 22.1.26. | 소속 상근직원<br>명절(설) 선물 구입(○장)    | 140                     | 140                      | 〃               |

## 2. 기부행위 등 위반에 관한 사항

### 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직선거법」 112조 제1항에 따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표 4]와 같은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열거하였다.

39) 외상금액이 “부당 사용 금액”임

40) 일부 품의금액에는 부당 사용 금액과 실제 정당하게 사용된 금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41) 2020.8.28. 이전에도 외상값을 상환하였으나 금액이 크고 대표적인 허위품위 1건만 작성함

42) 의원 7명의 명절 선물금액 70만원 중 기존 장부잔액에서 548천원을 제외하고 남은 152천원은 외상잔액으로 남음

[표 4]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은 항목(제112조 제2항 각 목 관련)

1.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거.생략
2. 의례적 행위  
가 ~파.생략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아.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차.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재구성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 각 목 중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에서는 ○회 ○장 등이 직무상 행위<sup>43)</sup>를 하면서 “○회 ○장 ○○○” 등 “개인명의”로 제공하여 기부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만약 직무상 행위가 아닌데 화환 등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적 행위로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할 수 있음

## 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위반 관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표 5]와 같이 규정된 “직무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 5]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별표 2, 6호~7호)**

- |                                                                                                                                                                                                                                                                                                          |
|----------------------------------------------------------------------------------------------------------------------------------------------------------------------------------------------------------------------------------------------------------------------------------------------------------|
| 1~5. 생략<br>6. 소속 의원·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br>가.~바. 생략<br>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br>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br>가. 생략<br>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취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및 식사 제공<br>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br>8~9. 생략 |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 재구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sup>44)</sup>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2]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표 6]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별표 2, 8호 나목)**

- |                                                                                                                                                                  |
|------------------------------------------------------------------------------------------------------------------------------------------------------------------|
| 1~7. 생략<br>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br>가. 생략<br>나. 축의·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 한다)<br>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br>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br>9. 생략 |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 재구성

따라서 영월군(☉과)에서는 ○회 ○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같은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서 [별표 2] 제8호 나목을 제외하고는 “○회 명의”로 집행하여야 한다.

44)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위 “2. 기부행위 위반에 관한 사항 가항 및 나항” 과 같이 ○회 ○장 등이 직무상 행위를 하면서 개인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5월경(날짜 모름) ○회 ○장 ○○○가 ○용 ○○○ ○○○ ○팀장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기부하면서 “○회 명의”가 아니라 “○회 ○장 ○○○” 개인 명의로 “축하드립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기부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표 7]과 같이 2021. 1. 4.부터 2022. 5. 4.까지 영월군 (☉과)에서는 ○장 ○○○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 등으로 꽃바구니 등을 배달 요청하자 “○회 명의”가 아니라 ○회○장 ○○○ “개인 명의”로 17건 총 175만 원을 부당하게 기부한 것으로 의심된다.

[표 7] ○○○ 개인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황

(단위: 천 원)

| 번호                       | 실제(부당) 사용 현황 |                |      |    |              |                         | 외상금액<br>누적잔액 | 허위 품의 현황  |                               |                         | 카드<br>결제<br>(외상값<br>상환등) | 기부자명        |
|--------------------------|--------------|----------------|------|----|--------------|-------------------------|--------------|-----------|-------------------------------|-------------------------|--------------------------|-------------|
|                          | 사용<br>날짜     | 명목             | 품목   | 수량 | 사용자<br>(구매자) | 외상 <sup>45)</sup><br>금액 |              | 결제<br>날짜  | 제목                            | 품의 <sup>46)</sup><br>금액 |                          |             |
| ○락 부당 구매 내역(11건, 910천 원) |              |                |      |    |              |                         |              |           |                               |                         |                          |             |
| 1                        | 21.1.4.      | ○부 ○○○         | 꽃바구니 | 1  | ○○○          | 50                      | -740         | 21.1.11.  | ○회청사 환경정화를<br>위한 화분구입         | 500                     | 500                      | ○장○○○<br>추정 |
| 2                        | 21.3.13.     | ○설<br>(축하 명목)  | 꽃바구니 | 1  | ○○○          | 100                     | -583         | 21.3.10.  | ○회 청사<br>환경정화용 화분 구입          | 200                     | 200                      | "           |
| 3                        | 21.11.2.     | 사진 전시회<br>○조   | 화분   | 1  | ○○○          | 50                      | -640         | 21.12.29. | ○회 증무식<br>물품구입비 지출            | 450 <sup>47)</sup>      | 420                      | "           |
| 4                        | 22.1.11.     | ○설<br>관계자      | 꽃바구니 | 1  | ○○○          | 100                     | -735         | 22.1.26.  | 제244차 ○회<br>○회 화분·꽃수반 구입 등 2건 | 700                     | 700                      | "           |
| 5                        | 22.2.5.      | ○콘서트           | 화환   | 1  | ○○○          | 100                     | -435         | 22.3.23.  |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br>꽃수반 구입         | 400                     | 400                      | "           |
| 6                        | 22.2.10.     | ○서<br>○○○ ○계장  | 꽃바구니 | 1  | ○○○          | 100                     | -535         | "         | "                             | -                       | -                        | "           |
| 7                        | "            | ○서<br>○○○ ○계장  | 꽃바구니 | 1  | ○○○          | 100                     | -635         | "         | "                             | -                       | -                        | "           |
| 8                        | 22.2.11.     | ○서<br>○○○ 계장   | 꽃바구니 | 1  | ○○○          | 50                      | -685         | "         | "                             | -                       | -                        | "           |
| 9                        | "            | ○청<br>○○○ ○담당관 | 꽃바구니 | 1  | ○○○          | 60                      | -745         | "         | "                             | -                       | -                        | "           |
| 10                       | 22.2.22.     | ○식당<br>(신원미상)  | 근조   | 1  | ○○○          | 100                     | -845         | "         | "                             | -                       | -                        | "           |

| 번호                       | 실제(부당) 사용 현황 |                            |      |    |              |                         | 외상금액<br>누적잔액 | 허위 품의 현황 |                                 |                         | 카드<br>결제<br>(외상값<br>상환등) | 기부자명            |
|--------------------------|--------------|----------------------------|------|----|--------------|-------------------------|--------------|----------|---------------------------------|-------------------------|--------------------------|-----------------|
|                          | 사용<br>날짜     | 명목                         | 품목   | 수량 | 사용자<br>(구매자) | 외상 <sup>45)</sup><br>금액 |              | 결제<br>날짜 | 제목                              | 품의 <sup>46)</sup><br>금액 |                          |                 |
| 11                       | 22.4.12.     | ○식장<br>○○○                 | 근조   | 1  | ○○○          | 100                     | -145         | 22.4.27  |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br>꽃수반 구입           | 400                     | 400                      | "               |
| ○위 부당 구매 내역(6건, 총840천 원) |              |                            |      |    |              |                         |              |          |                                 |                         |                          |                 |
| 1                        | 21.10.8.     | ○사 ○사<br>○문화제              | 동양난  | 1  | ○○○          | 100                     | -340         | 21.12.29 | 사무실 환경정화용<br>화분 구입              | 200                     | 200                      | ○장○○○<br>추정     |
| 2                        | 21.11.30.    | ○업 축이전<br>사업번창 축하 화분       | 서양난  | 1  | ○○○          | 100                     | -440         | "        | "                               | -                       | -                        | "               |
| 3                        | 22.1.3.      | ○군 ○장 ○○○<br>등 7명 인사발령 전출자 | 꽃바구니 | 7  | ○○○          | 350                     | -620         | 22.2.21. | 청사환경정비를 위한<br>꽃수반 구입 등 2건       | 600 <sup>48)</sup>      | 600                      | "               |
| 4                        | 22.3.16.     | ○성 ○면<br>○○○ 회장            | 화분   | 1  | ○○○          | 120                     | -210         | 22.3.29. | 22년 제6차 ○회 정례<br>간담회 경비 지출 등 2건 | 150 <sup>49)</sup>      | 150                      | "               |
| 5                        | 22.5.3.      | ○이(주) ○○○<br>○팀장 꽃바구니      | 꽃바구니 | 1  | ○○○          | 70                      | -230         | 22.5.25. |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꽃<br>수반 구입           | 200                     | 200                      | ○장○○○<br>(사적사용) |
| 6                        | 22.5.4.      | ○군 ○식장<br>(○회 ○님 모친상)      | 근조   | 1  | ○○○          | 100                     | -130         | "        | "                               | -                       | -                        | ○장○○○<br>추정     |

※ 영월군 자료 재구성

영월군 ◎과(전 ◎과) 지방○○ AJ는 2019. 7. 8. 부터 2020. 6. 30. 까지, 영월군 ◎실(전 ◎과) 지방○○ AK는 2020. 7. 1. 부터 2021. 6. 30. 까지, 영월군 ●소(전 ◎과) 지방○○ AL은 2021. 7. 1. 부터 2021. 12. 31. 까지, 영월군 ◎과 지방○○ AM은 2022. 1. 1. 부터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담당으로, 영월군 ◆과(전 ◎과) 지방○○ AN은 2020. 1. 1.부터 2021. 12. 31. 까지, 영월군 ◎과 지방○○ AO는 2022. 1. 1.부터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담당자로 각각 근무하면서 ○회 법인카드로는 규정상 “○원 명절 선물” 과 “개인 용도의 화분 구입” 등을 할 수 없자 다른 명목으로 허위로 품의 후 대금을 변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45) 외상금액이 “부당 사용 금액”임

46) 일부 품의금액에는 부당 사용 금액과 실제 정당하게 사용된 금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47) 품의금액 450천 원 중 330천원은 종무식 물품구입비로 정당금액이고, 남은 120천 원은 외상값 상환을 위한 허위 품의금액임

48) 품의서 상의 품의 금액은 600천 원이나 50천원은 정당하게 집행되어 550천 원을 허위 품의금액으로 작성

49) 품의서 상의 품의 금액은 150천 원이나 30천원은 정당하게 집행되어 120천 원을 허위 품의금액으로 작성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법인카드를 사적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화환 등을 구매·제공하면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위 “1.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인카드 사적 또는 부당 사용 여부 및 “2. 기부행위 위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화환 등을 제공하면서 “○회”가 아닌 “개인명의”로 기부하여 「공직선거법」위반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위반 등을 수사의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3]

## 강 원 도 통보(모범사례)

제 목 지목변경 사업 적극 발굴을 통한 군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실현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종합민원실

내 용

영월군에서는 토지대장 상의 지목과 현실 지목 사이의 불일치가 증가함에 따라 지목불일치의 해소의 일환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사업」을 비예산 지적관리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1.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 적극 발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20 농지업무편람」(농림부) 농지의 전용에서 1973. 1. 1.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음이 공부상 확인될 경우,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법」 제41조의 지목변경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사항도 산지관리법(舊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61. 6. 27. 제정 시행) 시행 전인 62년 이전에는 산지전용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지목변경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 신청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상 전, 답, 임야 등에 건축법(1962년), 농지

법(1792년) 이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항공사진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표 1]과 같이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 716필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였다.

[표 1] 「건축물이 있는 대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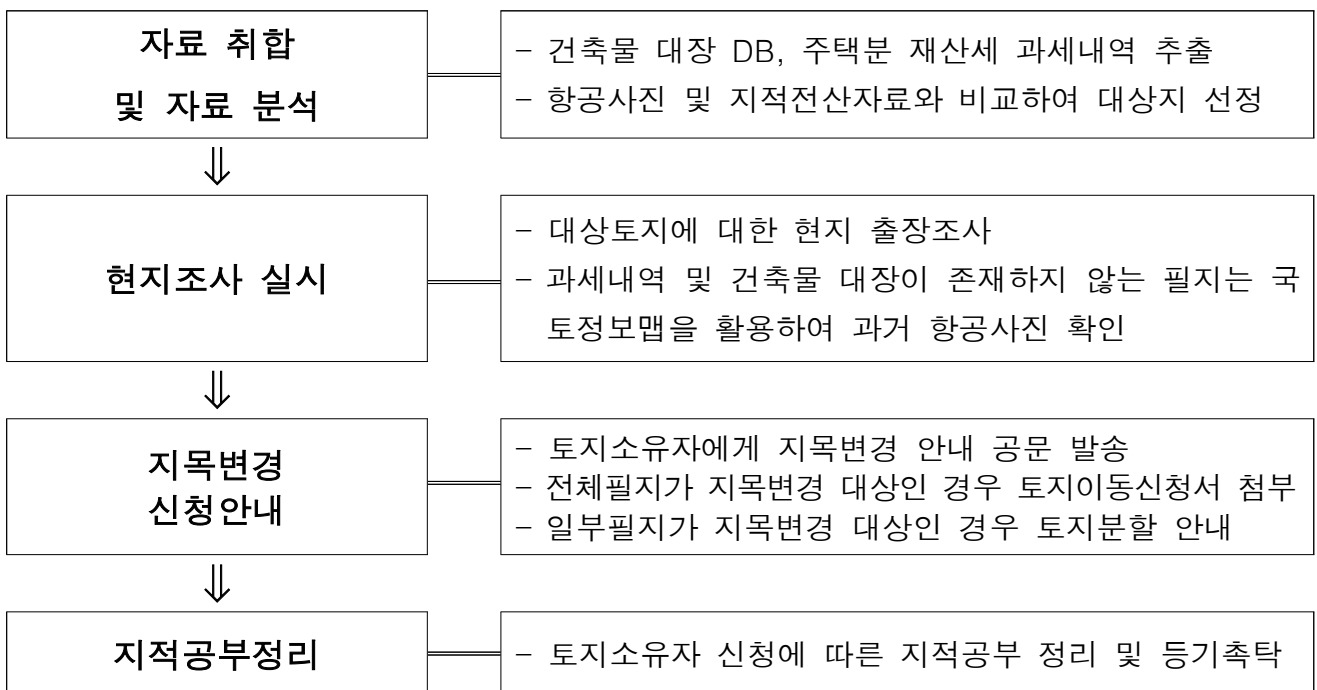
| 읍·면      |    | 총계  | 영월읍  | 상동읍 | 중동면   |
|----------|----|-----|------|-----|-------|
| 완료 필지수   |    | 220 | 32   | 6   | 13    |
| 조사대상 필지수 |    | 716 | 136  | 25  | 54    |
| ○면       | 북면 | 남면  | 한반도면 | 주천면 | 무릉도원면 |
| 10       | 27 | 41  | 30   | 52  | 9     |
| 49       | 76 | 105 | 109  | 126 | 36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업무추진 과정

영월군에서는 추진하는 「건축물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사업」은 [표 2]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을 통하여 사업을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 지목변경 사업 업무처리 과정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지목변경 사업추진 분류 예시

|                                                                                   |                                                                                    |
|-----------------------------------------------------------------------------------|------------------------------------------------------------------------------------|
|  |  |
| <p>1) 전체필지가 지목변경 대상인 경우</p>                                                       | <p>2) 일부필지가 지목변경 대상인 경우</p>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가) 전체필지가 지목변경 가능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건축물이 있거나 그 부속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전체 필지가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서 공문과 토지이동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토지이동신청서를 회신 받은 뒤 업무처리를 하였다.

#### 나) 일부 필지가 지목변경 가능한 경우

해당 필지의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81조에 따라 현재 건축물 및 부속 부지만큼 분할 측량 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원인에게는 해당 점유부분 만큼의 분할측량 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 공문을 통해 분할 측량을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다.

**[표 4] 지목변경 안내공문 및 신청양식**

[illegible]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주요성과

가) **군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실현 및 적극 행정 추진**

영월군에서는 「건축물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목변경 대상지 발굴, 해당 토지소유자 안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표 5]와 같이 220필지, 34,189㎡의 지목상 전, 답 등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지로의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로 대지 부지였어도 지목상 농지였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다른 대지에 비해 낮았던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사업대상 토지의

공시지가가 26% 상승하였다. 또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없이 기존부지의 양성화 및 지목변경이 가능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여 군민의 호응도를 높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표 5] 「건축물이 있는 대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결과

(단위: m<sup>2</sup>, 천 원)

| 대상토지  | 면적     | 변경 전 지목 | 변경 후 지목 | 공시지가 상승률 | 농지전용부담금 산출(예시) | 지목변경 전 재산세 | 지목변경 후 재산세 | 재산세 증가분 |
|-------|--------|---------|---------|----------|----------------|------------|------------|---------|
| 220필지 | 34,189 | 전,답 등   | 대       | 26%      | 916,456        | 4,943      | 6,788      | 1,844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 및 세수 증대 기여

「건축물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사업」은 지목 현실화를 통해 실제 토지이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일치하게 되어 공적 장부의 정확도 향상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하였고,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산세 부과 또한 26% 상승하여 영월군 세수가 증대되는 기대효과를 창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통보]** 지적공부 상 전, 답 등으로 존재하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발굴하고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홍보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군 세입 증대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4]

# 강 원 도

##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실태조사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영월군 △과 지방○○ AP

② 영월군 △과 지방○○ AQ

내 용

영월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조치 부적정

영월군(△과)에서는 [표 1]과 같이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지역특산품 및 생산품 전시·판매 목적으로 무상 사용허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재산 현황

(단위: m<sup>2</sup>)

| 재산명            | 소재지    | 토지면적  | 건물면적                | 주요시설      | 허가목적              |
|----------------|--------|-------|---------------------|-----------|-------------------|
|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 읍 ○리 ○ | 2,479 | 803.8<br>(지하1, 지상2) | 특산품 판매장 등 | 지역특산품 및 생산품 전시·판매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전대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에 [표 2]와 같이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역특산품 및 생산품을 전시·판매의 사용허가 목적이 아닌 사무실 유상 임대, 숙박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영월군과 (주)○민과 체결한 사용허가 조건 상의 사용인의 행위제한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허가의 취소 조건에 해당됨에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표 2]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입점 현황**

(단위: m<sup>2</sup>, 원)

| 구분 | 입점 현황(사용면적)   | 예상 사용료     | 비고 |
|----|---------------|------------|----|
| 합계 | 사무실 4, 숙박시설 5 | 58,221,540 |    |

| 구분 | 입점 현황(사용면적) |                                           | 예상 사용료 |            | 비고                |
|----|-------------|-------------------------------------------|--------|------------|-------------------|
| 1층 | 사무실(1)      | ○건(48.6)                                  | 2019년  | 1,589,530  | 특산품판매장<br>및 식당 제외 |
|    |             |                                           | 2020년  | 1,585,060  |                   |
|    |             |                                           | 2021년  | 1,599,400  |                   |
|    |             |                                           | 2022년  | 1,687,000  |                   |
| 2층 | 사무실(3)      | (주)○업(22.3), ○설(주)(54),<br>○설 주식회사(43.2), | 2019년  | 12,847,950 |                   |
|    |             |                                           | 2020년  | 12,954,060 |                   |
|    | 숙박시설(5)     | 숙박시설 5실(36.5×5실)                          | 2021년  | 12,915,280 |                   |
|    |             |                                           | 2022년  | 13,043,260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사용허가 기간 적용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5년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공유재산을 시행자<sup>50)</sup>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5조·

5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사업시행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시행자에게 한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2]의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를 (주)○민에게 사용허가 하면서 (주)○민이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님에도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한 10년간 사용허가하여 공유재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사용허가 현황**

| 재산명            | 사용목적              | 사용기간                              | 사용료(근거)            | 사용자   |
|----------------|-------------------|-----------------------------------|--------------------|-------|
|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 지역특산품 및 생산품 전시·판매 | 2018. 4. 1.~<br>2028. 3. 31.(10년) | 무상<br>(공유재산법 제24조) | (주)○민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

# 강 원 도

## 시정 요구

제 목 임대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공제 업무 소홀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에서는 [표 1]과 같이 부동산 임대시설을 조성·운영하면서 임대용 공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표 1] 영월군 임대용 공유재산 현황

(단위: 천 원)

| 재산명           | 재산가액      | 취득일          | 사용허가자   | 재산관리부서 |
|---------------|-----------|--------------|---------|--------|
| 영월스포츠파크 테니스장  | 1,993,655 | 2014. 6. 30. | 시설 사용자  | ◎과     |
| 영월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 | 1,093,564 | 2014. 6. 27. | 시설 사용자  |        |
| 영월스포츠파크 볼링장   | 764,162   | 2018. 7. 23. | 시설 사용자  |        |
| 영월통합관광지원센터    | 2,394,059 | 2021. 6. 1.  | ○조합 외 4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

임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임대용 공유재산을 신축·조성하거나 유지·관리하면서 지출한 신축(조성)비, 제비용, 개보수 공사비, 물품 구매 등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임대용 공유재산을 신축·조성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제비용 등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665,144천 원<sup>51)</sup>을 공제 신청하거나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

[표 2]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신청 누락 내역

(단위: 천 원)

| 재산명                           | 취득 및 유지관리비 지출 내역 |            | 부가가치세 내역  |           | 비고<br>(면적 안분)                 |
|-------------------------------|------------------|------------|-----------|-----------|-------------------------------|
|                               | 건수               | 공급가액       | 납부액       | 공제(환급)대상액 |                               |
| 합계                            | 323              | 27,754,516 | 2,775,452 | 665,144   |                               |
| 영월통합관광지원센터                    | 274              | 23,900,007 | 2,390,001 | 279,693   | 시설 일부 임대<br>[납부액×(760/6,494)] |
| 영월스포츠파크<br>(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 49               | 3,854,509  | 385,451   | 385,451   | 시설 전체 임대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붙임] 참조

51)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액 인정여부에 따라 환급액은 변경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시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신청을 누락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665,144천원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신청 누락 내역

(단위: 원)

| 번호 | 적요                                              | 지급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지급일자          |
|----|-------------------------------------------------|----------------|----------------|---------------|---------------|
| 합계 | 323건                                            | 30,529,967,925 | 27,754,516,411 | 2,775,451,514 |               |
| 소계 | 274건                                            | 26,290,007,555 | 23,900,006,998 | 2,390,000,572 |               |
| 1  |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및 전시물제작설치 건축설계 용역          | 323,863,200    | 294,421,093    | 29,442,107    | 2019. 6. 4.   |
| 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실시설계) 용역              | 19,200,000     | 17,454,546     | 1,745,454     | 2019. 6. 17.  |
| 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공사)                    | 350,000,000    | 318,181,819    | 31,818,181    | 2019. 6. 28.  |
| 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공사)                        | 124,190,000    | 112,900,000    | 11,290,000    | 2019. 6. 28.  |
| 5  | 계약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통신공사))                  | 25,167,000     | 22,879,091     | 2,287,909     | 2019. 6. 28.  |
| 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소방공사)                        | 68,200,000     | 62,000,000     | 6,200,000     | 2019. 6. 28.  |
| 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공사)                    | 19,454,940     | 17,686,310     | 1,768,630     | 2019. 9. 6.   |
| 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공사)                    | 269,000,000    | 244,545,455    | 24,454,545    | 2019. 9. 6.   |
| 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공사)                    | 25,213,280     | 22,921,164     | 2,292,116     | 2019. 10. 8.  |
| 10 | 관급자재 구매 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이형봉강))     | 99,094,650     | 90,086,046     | 9,008,604     | 2019. 10. 24. |
| 1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공사)                    | 74,362,350     | 67,602,137     | 6,760,213     | 2019. 11. 15. |
| 1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공사)                    | 141,931,780    | 129,028,892    | 12,902,888    | 2019. 11. 15. |
| 13 | 관급자재 구매 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레미콘))      | 64,800,960     | 58,909,964     | 5,890,996     | 2019. 12. 5.  |
| 1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관급자재 구입                  | 120,000,000    | 109,090,910    | 10,909,090    | 2019. 12. 5.  |
| 15 | 관급자재 구매 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레미콘))      | 59,519,040     | 54,108,219     | 5,410,821     | 2019. 12. 6.  |
| 16 | 관급자재 구매 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이형봉강))     | 40,334,380     | 36,667,619     | 3,666,761     | 2019. 12. 6.  |
| 17 | 관급자재 구매 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이형봉강))     | 41,530,740     | 37,755,219     | 3,775,521     | 2019. 12. 6.  |
| 18 | 관급자재 구매 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Eco Deck))    | 13,963,900     | 12,694,455     | 1,269,445     | 2019. 12. 6.  |
| 1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관급자재 구입(분전반)             | 33,629,000     | 30,571,819     | 3,057,181     | 2019. 12. 12. |
| 2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관급자재 구입(MCC)             | 22,089,000     | 20,080,910     | 2,008,090     | 2019. 12. 12. |
| 2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관급자재 구입(수배전반)            | 75,900,000     | 69,000,000     | 6,900,000     | 2019. 12. 12. |
| 2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조경, 도급)                      | 350,000,000    | 318,181,819    | 31,818,181    | 2019. 12. 19. |
| 2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지열설비시스템설치(기계, 관급) 구입         | 671,700,000    | 610,636,364    | 61,063,636    | 2019. 12. 24. |
| 2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 381,685,000    | 346,986,365    | 34,698,635    | 2019. 12. 30. |
| 2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도급) 1차수               | 3,311,650      | 3,010,591      | 301,059       | 2020. 1. 15.  |
| 2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도급) 2차수               | 2,000,000,000  | 1,818,181,819  | 181,818,181   | 2020. 1. 16.  |
| 2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관급 / 레미콘) 1차          | 15,933,440     | 14,484,946     | 1,448,494     | 2020. 1. 21.  |
| 2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관급 / 철근) 1차           | 39,905,330     | 36,277,573     | 3,627,757     | 2020. 1. 21.  |
| 2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관급 / 레미콘) 2차          | 23,424,160     | 21,294,691     | 2,129,469     | 2020. 1. 21.  |
| 3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관급 / 레미콘) 2차          | 2,632,320      | 2,393,019      | 239,301       | 2020. 1. 21.  |
| 3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관급 / 레미콘) 2차          | 5,071,680      | 4,610,619      | 461,061       | 2020. 1. 21.  |
| 3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관급) EcoDeck               | 30,627,900     | 27,843,546     | 2,784,354     | 2020. 1. 22.  |
| 3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 철근) 2차              | 61,493,720     | 55,903,382     | 5,590,338     | 2020. 1. 22.  |
| 3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2차수           | 393,570,000    | 357,790,911    | 35,779,089    | 2020. 1. 31.  |
| 3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관급자재 구입(저수조)             | 46,795,000     | 42,540,910     | 4,254,090     | 2020. 2. 19.  |
| 3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도급) 2차수               | 101,348,680    | 92,135,164     | 9,213,516     | 2020. 3. 16.  |
| 3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관급 / 레미콘) 2차          | 11,167,200     | 10,152,000     | 1,015,200     | 2020. 3. 25.  |
| 3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관급 / 레미콘) 2차          | 49,128,000     | 44,661,819     | 4,466,181     | 2020. 3. 31.  |
| 39 | 관급자재 구매 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이형봉강) 3차 | 38,287,070     | 34,806,428     | 3,480,642     | 2020. 3. 31.  |
| 4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관급 / 레미콘) 2차          | 19,035,000     | 17,304,546     | 1,730,454     | 2020. 4. 13.  |

| 번호 | 적요                                               | 지급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지급일자          |
|----|--------------------------------------------------|---------------|---------------|-------------|---------------|
| 4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로컬푸드 운영활성화 연구용역 시행                 | 10,000,000    | 9,090,910     | 909,090     | 2020. 4. 20.  |
| 4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도급) 2차수                 | 218,472,880   | 198,611,710   | 19,861,170  | 2020. 4. 23.  |
| 4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도급) 1차                     | 255,310,000   | 232,100,000   | 23,210,000  | 2020. 5. 13.  |
| 4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관급 / 레미콘) 2차            | 11,528,520    | 10,480,473    | 1,048,047   | 2020. 5. 14.  |
| 4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관급 / 레미콘) 2차            | 19,373,400    | 17,612,182    | 1,761,218   | 2020. 5. 14.  |
| 4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관급 / 레미콘) 2차            | 31,527,320    | 28,661,200    | 2,866,120   | 2020. 5. 14.  |
| 47 | 관급자재 구매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레미콘)3차      | 22,842,000    | 20,765,455    | 2,076,545   | 2020. 5. 14.  |
| 4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도급) 2차수                 | 148,249,860   | 134,772,600   | 13,477,260  | 2020. 5. 15.  |
| 49 | 관급자재 구매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이형봉강)3차     | 31,732,330    | 28,847,573    | 2,884,757   | 2020. 5. 21.  |
| 5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관급자재 구입(이형봉강 3차)       | 21,664,580    | 19,695,073    | 1,969,507   | 2020. 5. 21.  |
| 5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관급자재 구입(공기조화기)            | 63,501,000    | 57,728,182    | 5,772,818   | 2020. 5. 26.  |
| 5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토목) 관급자재 구입(철근)               | 19,466,830    | 17,697,119    | 1,769,711   | 2020. 6. 5.   |
| 5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도급) 1차                     | 3,366,000     | 3,060,000     | 306,000     | 2020. 6. 8.   |
| 5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도급) 2차수                 | 156,071,300   | 141,883,000   | 14,188,300  | 2020. 6. 12.  |
| 5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시행                     | 16,689,600    | 15,172,364    | 1,517,236   | 2020. 6. 16.  |
| 5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관급 / 레미콘) 2차            | 29,948,400    | 27,225,819    | 2,722,581   | 2020. 6. 25.  |
| 5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관급 / 레미콘) 2차            | 20,811,600    | 18,919,637    | 1,891,963   | 2020. 6. 25.  |
| 5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전시분야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              | 2,000,000,000 | 1,818,181,819 | 181,818,181 | 2020. 6. 25.  |
| 5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관급 / 레미콘) 2차            | 9,810,240     | 8,918,400     | 891,840     | 2020. 6. 26.  |
| 6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사후설계용역 시행                     | 152,000,000   | 138,181,819   | 13,818,181  | 2020. 6. 26.  |
| 6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관급) EcoDeck                | 45,208,200    | 41,098,364    | 4,109,836   | 2020. 6. 29.  |
| 6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표준시설부담금 납부                | 30,800,000    | 28,000,000    | 2,800,000   | 2020. 7. 1.   |
| 6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도급) 1차                     | 22,005,500    | 20,005,000    | 2,000,500   | 2020. 7. 2.   |
| 6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도급) 2차수                 | 225,952,840   | 205,411,674   | 20,541,166  | 2020. 7. 9.   |
| 65 | 관급자재 구매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레미콘)3차      | 39,508,200    | 35,916,546    | 3,591,654   | 2020. 7. 29.  |
| 6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토목) 관급자재 구입(레미콘)              | 28,865,600    | 26,241,455    | 2,624,145   | 2020. 7. 29.  |
| 6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관급 / 레미콘) 2차            | 25,972,200    | 23,611,091    | 2,361,109   | 2020. 8. 6.   |
| 6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도급) 1차                     | 39,611,000    | 36,010,000    | 3,601,000   | 2020. 8. 6.   |
| 6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도급) 2차수                 | 186,718,900   | 169,744,455   | 16,974,445  | 2020. 8. 12.  |
| 7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도급) 1차                     | 196,432,500   | 178,575,000   | 17,857,500  | 2020. 8. 21.  |
| 7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관급자재 구입(저수조)              | 49,235,000    | 44,759,091    | 4,475,909   | 2020. 8. 25.  |
| 7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도급) 1차                     | 44,979,000    | 40,890,000    | 4,089,000   | 2020. 9. 4.   |
| 73 | 관급자재 구매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레미콘)3차      | 16,581,600    | 15,074,182    | 1,507,418   | 2020. 9. 4.   |
| 7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관급 / 레미콘) 1차            | 4,984,320     | 4,531,200     | 453,120     | 2020. 9. 7.   |
| 75 | 관급자재 구매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관급 레미콘 4차)       | 10,321,200    | 9,382,910     | 938,290     | 2020. 9. 7.   |
| 7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도급) 2차수                 | 98,623,980    | 89,658,164    | 8,965,816   | 2020. 9. 10.  |
| 7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통신 도급) 1차                     | 69,600,000    | 63,272,728    | 6,327,272   | 2020. 9. 24.  |
| 7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도급) 1차                     | 203,577,000   | 185,070,000   | 18,507,000  | 2020. 9. 25.  |
| 7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도급) 1차수                    | 400,000,000   | 363,636,364   | 36,363,636  | 2020. 9. 25.  |
| 8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소방 도급) 1차                     | 313,999,000   | 285,453,637   | 28,545,363  | 2020. 9. 25.  |
| 8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도급) 2차수                 | 901,287,560   | 819,352,328   | 81,935,232  | 2020. 9. 28.  |
| 8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관급, 지열시스템 설치)              | 224,416,320   | 204,014,837   | 20,401,483  | 2020. 9. 28.  |
| 8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도급) 1차                     | 72,963,000    | 66,330,000    | 6,633,000   | 2020. 10. 6.  |
| 8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도급) 2차수                 | 110,152,320   | 100,138,473   | 10,013,847  | 2020. 10. 14. |
| 85 | 자주휴식공간을 위한 경계벽원 분할측량 및 기초측량비 지급(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 16,486,800    | 14,988,000    | 1,498,800   | 2020. 10. 27. |

| 번호  | 적요                                                | 지급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지급일자          |
|-----|---------------------------------------------------|---------------|---------------|-------------|---------------|
| 86  | 통합관광센터 조성사업 경계복원공사(준공금)                           | 17,139,000    | 15,580,910    | 1,558,090   | 2020. 11. 5.  |
| 8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토목) 관급자재 구입(파형강판)              | 27,151,980    | 24,683,619    | 2,468,361   | 2020. 11. 10. |
| 8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구입(레미콘, 5차)           | 28,425,600    | 25,841,455    | 2,584,145   | 2020. 11. 10. |
| 8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구입(레미콘, 5차)           | 34,855,200    | 31,686,546    | 3,168,654   | 2020. 11. 11. |
| 9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도급) 2차수                 | 152,153,480   | 138,321,346   | 13,832,134  | 2020. 11. 13. |
| 9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도급) 1차                      | 77,650,100    | 70,591,000    | 7,059,100   | 2020. 11. 13. |
| 9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도급) 1차                      | 131,967,000   | 119,970,000   | 11,997,000  | 2020. 11. 16. |
| 93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수수료 납부(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 8,690,000     | 7,900,000     | 790,000     | 2020. 11. 25. |
| 9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관급자재 구입(접합지붕시스템)       | 255,198,430   | 231,998,573   | 23,199,857  | 2020. 11. 30. |
| 9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 관급자재 구입(시멘트)                | 4,408,280     | 4,007,528     | 400,752     | 2020. 12. 1.  |
| 9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형물(조명-등) 제작 및 설치                   | 21,340,000    | 19,400,000    | 1,940,000   | 2020. 12. 3.  |
| 9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관급자재 구입(부스터 펌프)            | 11,290,000    | 10,263,637    | 1,026,363   | 2020. 12. 4.  |
| 9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조경) 관급자재 구입(목재데크)              | 8,232,450     | 7,484,046     | 748,404     | 2020. 12. 4.  |
| 9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도급) 1차                      | 127,901,950   | 116,274,500   | 11,627,450  | 2020. 12. 7.  |
| 10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도급) 1차                      | 68,176,900    | 61,979,000    | 6,197,900   | 2020. 12. 8.  |
| 10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토목) 관급자재 구입(보강토 블럭 등)          | 9,100,000     | 8,272,728     | 827,272     | 2020. 12. 8.  |
| 10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도급) 2차수                 | 200,060,080   | 181,872,800   | 18,187,280  | 2020. 12. 9.  |
| 10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조경 도급) 1차                      | 18,386,500    | 16,715,000    | 1,671,500   | 2020. 12. 9.  |
| 10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소방 도급) 1차                      | 344,216,000   | 312,923,637   | 31,292,363  | 2020. 12. 15. |
| 105 | 지적확정측량을 위한 분할측량비 지급(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 9,368,700     | 8,517,000     | 851,700     | 2020. 12. 15. |
| 10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관급, 수배전반)                   | 75,951,000    | 69,046,364    | 6,904,636   | 2020. 12. 16. |
| 10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관급자재 구입(접합AL-SHEET)    | 472,230,000   | 429,300,000   | 42,930,000  | 2020. 12. 16. |
| 10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토목) 관급자재 구입(보강토 블럭 등)          | 52,042,480    | 47,311,346    | 4,731,134   | 2020. 12. 16. |
| 10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구입(자연석 판석)            | 2,943,080     | 2,675,528     | 267,552     | 2020. 12. 16. |
| 11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구입(자연석 판석)            | 4,147,700     | 3,770,637     | 377,063     | 2020. 12. 16. |
| 111 | 관급자재 구매요청(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 관급, 조명, 원자력방사선 등) | 7,718,400     | 7,016,728     | 701,672     | 2020. 12. 16. |
| 11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토목,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럭 등)    | 2,307,900     | 2,098,091     | 209,809     | 2020. 12. 16. |
| 11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토목,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럭 등)    | 61,661,000    | 56,055,455    | 5,605,545   | 2020. 12. 16. |
| 11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토목) 관급자재 구입(우수공 관련, U형측구)      | 3,124,800     | 2,840,728     | 284,072     | 2020. 12. 16. |
| 11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토목) 관급자재 구입(보강토 블럭 등)          | 5,370,900     | 4,882,637     | 488,263     | 2020. 12. 22. |
| 11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도급) 1차                      | 79,145,550    | 71,950,500    | 7,195,050   | 2020. 12. 24. |
| 11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관급, 지열시스템 설치)               | 114,271,000   | 103,882,728   | 10,388,272  | 2020. 12. 24. |
| 11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도급) 1차수                     | 300,000,000   | 272,727,273   | 27,272,727  | 2020. 12. 24. |
| 11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통신 도급) 1차                      | 140,596,000   | 127,814,546   | 12,781,454  | 2020. 12. 28. |
| 12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전시분야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               | 1,000,000,000 | 909,090,910   | 90,909,090  | 2020. 12. 28. |
| 12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로컬푸드 운영활성화 연구용역 시행                  | 10,194,000    | 9,267,273     | 926,727     | 2020. 12. 28. |
| 12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시행                      | 4,172,400     | 3,793,091     | 379,309     | 2020. 12. 28. |
| 12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구입(레미콘, 5차)           | 3,553,200     | 3,230,182     | 323,018     | 2020. 12. 28. |
| 12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관급 / 레미콘) 1차            | 377,600       | 343,273       | 34,327      | 2020. 12. 29. |
| 12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구입(레미콘, 5차)           | 1,522,800     | 1,384,364     | 138,436     | 2020. 12. 29. |
| 12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토목, 레미콘2차)             | 5,283,680     | 4,803,346     | 480,334     | 2020. 12. 29. |
| 12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로컬푸드존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 46,126,190    | 41,932,900    | 4,193,290   | 2020. 12. 29. |
| 12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토목) 관급자재 구입(역형옹벽, 레미콘)         | 5,282,240     | 4,802,037     | 480,203     | 2020. 12. 29. |
| 12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토목) 관급자재 구입(우수공 관련, 레미콘)       | 2,972,800     | 2,702,546     | 270,254     | 2020. 12. 29. |
| 13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도급) 2차수                 | 1,822,633,400 | 1,656,939,455 | 165,693,945 | 2020. 12. 30. |

| 번호  | 적요                                                   | 지급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지급일자          |
|-----|------------------------------------------------------|-------------|-------------|------------|---------------|
| 13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2차수                | 393,570,000 | 357,790,912 | 35,779,088 | 2020. 12. 30. |
| 13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구입(악세스플로어)               | 2,591,600   | 2,356,000   | 235,600    | 2020. 12. 31. |
| 13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토목) 관급자재 구입(우수공 관련, 원형수로관)        | 30,272,900  | 27,520,819  | 2,752,081  | 2020. 12. 31. |
| 13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도급) 2차수 명시 및 사고이월 등록        | 180,778,180 | 164,343,800 | 16,434,380 | 2021. 1. 18.  |
| 13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조경)-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28,842,000  | 26,220,000  | 2,622,000  | 2021. 1. 18.  |
| 13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관급자재 구입(CCTV 전동제어반)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39,823,000  | 36,202,728  | 3,620,272  | 2021. 1. 22.  |
| 13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통신) 관급자재 구입(CCTV 추가설치)사고이월 등록     | 33,000,000  | 30,000,000  | 3,000,000  | 2021. 1. 28.  |
| 13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통신) 관급자재 구입(전관방상)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42,000,000  | 38,181,819  | 3,818,181  | 2021. 1. 28.  |
| 13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통신) 관급자재 구입(CCTV)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45,624,000  | 41,476,364  | 4,147,636  | 2021. 1. 28.  |
| 14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통신) 관급자재 구입(유리용 CCTV)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59,280,000  | 53,890,910  | 5,389,090  | 2021. 1. 28.  |
| 14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사후설계용역(사고이월 등록)                   | 61,104,000  | 55,549,091  | 5,554,909  | 2021. 1. 29.  |
| 14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조경)-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306,371,500 | 278,519,547 | 27,851,953 | 2021. 2. 5.   |
| 143 |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본인증 수수료 지급(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 5,319,600   | 4,836,000   | 483,600    | 2021. 2. 5.   |
| 14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38,186,280  | 34,714,800  | 3,471,480  | 2021. 2. 8.   |
| 14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형물(조명-등) 제작 및 설치-사고이월 등록              | 21,340,000  | 19,400,000  | 1,940,000  | 2021. 2. 9.   |
| 14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도급) 2차수 명시 및 사고이월 등록        | 77,906,070  | 70,823,700  | 7,082,370  | 2021. 2. 9.   |
| 14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조경)-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5,060,000   | 4,600,000   | 460,000    | 2021. 2. 9.   |
| 14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도급) 2차수 명시 및 사고이월 등록        | 283,800,000 | 258,000,000 | 25,800,000 | 2021. 2. 10.  |
| 14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관급자재 구입(본전반)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80,894,000  | 73,540,000  | 7,354,000  | 2021. 2. 25.  |
| 15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관급자재 구입(조명제어)                 | 26,100,000  | 23,727,273  | 2,372,727  | 2021. 2. 25.  |
| 15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관급자재 구입(실내명 조명)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4,491,000   | 4,082,728   | 408,272    | 2021. 2. 26.  |
| 15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관급자재 구입(실내명 조명)및 합계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9,530,000   | 8,663,637   | 866,363    | 2021. 2. 26.  |
| 15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관급자재 구입(발광다이오드)명시이월 등록        | 256,754,000 | 233,412,727 | 23,341,273 | 2021. 3. 10.  |
| 15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통신) 관급자재 구입(통합배선) 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85,255,000  | 77,504,546  | 7,750,454  | 2021. 3. 10.  |
| 15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사고이월 등록                    | 15,014,000  | 13,649,091  | 1,364,909  | 2021. 3. 11.  |
| 15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설계변경(3차)                  | 52,566,690  | 47,787,900  | 4,778,790  | 2021. 3. 11.  |
| 15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녹색건축 본인증 수수료 지급                   | 7,190,700   | 6,537,000   | 653,700    | 2021. 3. 11.  |
| 15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푸드코트존 조성공사-선금                       | 199,870,000 | 181,700,000 | 18,170,000 | 2021. 3. 18.  |
| 15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전사분야 전사물 제작 설치공사사고이월 등록           | 729,692,840 | 663,357,128 | 66,335,712 | 2021. 3. 18.  |
| 16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 14,000,000  | 12,727,273  | 1,272,727  | 2021. 3. 31.  |
| 161 | 관급자재 구매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조경) 관급자재 구입(인조잔디)          | 54,905,570  | 49,914,155  | 4,991,415  | 2021. 4. 2.   |
| 16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TAB용역-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15,675,000  | 14,250,000  | 1,425,000  | 2021. 4. 6.   |
| 16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명시이월 등록                  | 28,800,000  | 26,181,819  | 2,618,181  | 2021. 4. 6.   |
| 16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푸드코트존 조성공사-노무비(3월)                  | 8,085,000   | 7,350,000   | 735,000    | 2021. 4. 8.   |
| 16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관급자재(경관조명) 추가 구입              | 13,070,000  | 11,881,819  | 1,188,181  | 2021. 4. 22.  |
| 16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2차수) 사고이월 등록       | 174,037,000 | 158,215,456 | 15,821,544 | 2021. 4. 30.  |
| 16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사후설계용역(사고이월 등록)                   | 10,896,000  | 9,905,455   | 990,545    | 2021. 4. 30.  |
| 16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28,963,000  | 26,330,000  | 2,633,000  | 2021. 5. 4.   |
| 16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11,400,000  | 10,363,637  | 1,036,363  | 2021. 5. 6.   |
| 17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거터공사-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17,395,000  | 15,813,637  | 1,581,363  | 2021. 5. 7.   |
| 17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거터공사 설계변경 시행                      | 3,897,810   | 3,543,464   | 354,346    | 2021. 5. 7.   |
| 17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136,889,220 | 124,444,746 | 12,444,474 | 2021. 5. 11.  |
| 17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기계) 설계변경(3차)                      | 100,634,000 | 91,485,455  | 9,148,545  | 2021. 5. 11.  |
| 17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음성안내) 구입                 | 1,067,000   | 970,000     | 97,000     | 2021. 5. 11.  |
| 17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통신)-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105,671,000 | 96,064,546  | 9,606,454  | 2021. 5. 12.  |

| 번호  | 적요                                             | 지급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지급일자         |
|-----|------------------------------------------------|---------------|-------------|------------|--------------|
| 17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소방)-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155,785,000   | 141,622,728 | 14,162,272 | 2021. 5. 12. |
| 17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288,252,000   | 262,047,273 | 26,204,727 | 2021. 5. 13. |
| 17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실내조경공사                      | 19,872,000    | 18,065,455  | 1,806,545  | 2021. 5. 24. |
| 17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경공사(라벤더 식재)                     | 3,847,000     | 3,497,273   | 349,727    | 2021. 5. 24. |
| 18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푸드코트존 조성공사-노무비(5월분)           | 10,807,500    | 9,825,000   | 982,500    | 2021. 6. 9.  |
| 18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BF인증을 위한 실내사인 제작설치               | 5,335,000     | 4,850,000   | 485,000    | 2021. 6. 9.  |
| 18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중앙계단 장애인 손잡이 설치                  | 3,496,000     | 3,178,182   | 317,818    | 2021. 6. 9.  |
| 18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관목하부 우드칩포설                       | 4,977,000     | 4,524,546   | 452,454    | 2021. 6. 9.  |
| 18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토목 도급) 2차수 명시 및 사고이월 등록  | 1,020,245,860 | 927,496,237 | 92,749,623 | 2021. 6. 10. |
| 18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BF 보완공사 관급자재(점자블록)추가구입           | 1,540,000     | 1,400,000   | 140,000    | 2021. 6. 10. |
| 18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조경)-명시이월액 품의등록              | 61,340,000    | 55,763,637  | 5,576,363  | 2021. 6. 11. |
| 18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토목) 설계변경(3차)            | 256,762,665   | 233,420,606 | 23,342,059 | 2021. 6. 11. |
| 18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관련 확정측량 및 현황측량에 따른 수수료 지급        | 29,929,900    | 27,209,000  | 2,720,900  | 2021. 6. 18. |
| 18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BF 보완공사                          | 31,310,000    | 28,463,637  | 2,846,363  | 2021. 6. 21. |
| 19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2층 벽면 미디어 아트(영상) 작품 제작설치         | 14,000,000    | 12,727,273  | 1,272,727  | 2021. 6. 25. |
| 19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푸드코트존 전기공사 관급자재-조명등              | 9,339,000     | 8,490,000   | 849,000    | 2021. 6. 29. |
| 19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야외장애인 보행로 설치                     | 18,532,000    | 16,847,273  | 1,684,727  | 2021. 6. 29. |
| 19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시설물유지관리 용역                       | 6,007,000     | 5,460,910   | 546,090    | 2021. 6. 30. |
| 194 |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 1,730,300     | 1,573,000   | 157,300    | 2021. 7. 6.  |
| 19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과목경정을 위한 재지출            | 18,197,000    | 16,542,728  | 1,654,272  | 2021. 7. 8.  |
| 19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통신)-과목경정을 위한 재지출            | 12,941,300    | 11,764,819  | 1,176,481  | 2021. 7. 8.  |
| 19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푸드코트존 조성공사-노무비(6월분)           | 23,309,000    | 21,190,000  | 2,119,000  | 2021. 7. 8.  |
| 19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환경 정비 용역 시행                      | 4,930,000     | 4,481,819   | 448,181    | 2021. 7. 16. |
| 19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3층 계단 조명 제작설치                  | 3,520,000     | 3,200,000   | 320,000    | 2021. 7. 19. |
| 20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푸드코트존 전기공사 관급자재(분전반)             | 8,630,000     | 7,845,455   | 784,545    | 2021. 7. 22. |
| 20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2층 벽면 벽화(4계) 제작설치              | 20,020,000    | 18,200,000  | 1,820,000  | 2021. 7. 28. |
| 20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2층 미디어 아트 음원 제작                  | 3,000,000     | 2,727,273   | 272,727    | 2021. 8. 5.  |
| 20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2층 벽면 미디어 아트(영상) 작품 제작설치         | 6,020,000     | 5,472,728   | 547,272    | 2021. 8. 5.  |
| 20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푸드코트존 등구조물 제작 및 설치               | 19,705,000    | 17,913,637  | 1,791,363  | 2021. 8. 5.  |
| 20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주차장 안내판 제작 및 설치                  | 3,264,800     | 2,968,000   | 296,800    | 2021. 8. 9.  |
| 20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2층 천정 하늘공원 제작설치                  | 19,910,000    | 18,100,000  | 1,810,000  | 2021. 8. 10. |
| 20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제1주차장 보수공사                       | 10,568,000    | 9,607,273   | 960,727    | 2021. 8. 12. |
| 20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로컬푸드존 및 중앙홀 조성-관급(홍보전광판 제작설치) | 140,000,000   | 127,272,728 | 12,727,272 | 2021. 8. 17. |
| 20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푸드코트존 전기공사                       | 19,906,000    | 18,096,364  | 1,809,636  | 2021. 8. 18. |
| 210 | 통합관광지원센터 전시작품 전시를 위한 가벽 설치                     | 1,958,000     | 1,780,000   | 178,000    | 2021. 8. 18. |
| 21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외부 정리 용역(체험관 예정지)                | 5,450,000     | 4,954,546   | 495,454    | 2021. 8. 20. |
| 21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공사                    | 21,042,000    | 19,129,091  | 1,912,909  | 2021. 8. 30. |
| 21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푸드코트존 조성공사-준공금                | 140,867,500   | 128,061,364 | 12,806,136 | 2021. 8. 31. |
| 21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푸드코트존 조성공사 설계변경               | 9,926,000     | 9,023,637   | 902,363    | 2021. 8. 31. |
| 21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전시분야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            | 345,121,540   | 313,746,855 | 31,374,685 | 2021. 9. 3.  |
| 21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2층 미디어 전시관 리플릿 제작                | 7,372,000     | 6,701,819   | 670,181    | 2021. 9. 3.  |
| 21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3층 카페 컬러에폭시 도막작업 공사              | 19,837,000    | 18,033,637  | 1,803,363  | 2021. 9. 3.  |
| 21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로컬푸드존 및 중앙홀 조성-관급(가구)         | 14,486,000    | 13,169,091  | 1,316,909  | 2021. 9. 9.  |
| 21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사인물 제작설치                      | 19,989,000    | 18,171,819  | 1,817,181  | 2021. 9. 13. |
| 22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로컬푸드존 및 중앙홀 조성공사              | 11,396,000    | 10,360,000  | 1,036,000  | 2021. 9. 14. |
| 22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3층 냉난방설비 전기공사                    | 4,000,000     | 3,636,364   | 363,636    | 2021. 9. 14. |

| 번호  | 적요                                           | 지급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지급일자          |
|-----|----------------------------------------------|-------------|-------------|------------|---------------|
| 22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2층 문화상품판매점 쇼케이스냉장고 구입설치        | 2,880,000   | 2,618,182   | 261,818    | 2021. 9. 14.  |
| 22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후면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 5,170,000   | 4,700,000   | 470,000    | 2021. 9. 14.  |
| 22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제2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 3,300,000   | 3,000,000   | 300,000    | 2021. 9. 14.  |
| 22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로컬푸드존 및 중앙홀 조성공사            | 230,000,000 | 209,090,910 | 20,909,090 | 2021. 9. 16.  |
| 22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푸드코트존 주방기구 구입설치             | 47,000,000  | 42,727,273  | 4,272,727  | 2021. 9. 16.  |
| 22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푸드코트존 덕트 추가 공사                 | 14,074,000  | 12,794,546  | 1,279,454  | 2021. 9. 17.  |
| 228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푸드코트존 테이블 및 의자 구입설치            | 8,849,000   | 8,044,546   | 804,454    | 2021. 9. 17.  |
| 22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입체타일 설치                     | 11,782,000  | 10,710,910  | 1,071,090  | 2021. 9. 28.  |
| 23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야외데크무대 난간보행로 추가설치              | 9,412,000   | 8,556,364   | 855,636    | 2021. 9. 28.  |
| 23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주차장 및 야외광장 보수공사                | 4,774,000   | 4,340,000   | 434,000    | 2021. 9. 29.  |
| 232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제1주차장 도색공사                     | 4,410,000   | 4,009,091   | 400,909    | 2021. 9. 29.  |
| 23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로컬푸드존 및 중앙홀 조성공사            | 22,260,000  | 20,236,364  | 2,023,636  | 2021. 9. 30.  |
| 234 | 통합관광지원센터 수장고 전기공사 시행                         | 4,777,000   | 4,342,728   | 434,272    | 2021. 10. 7.  |
| 23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3층 카페 썬크대 등 설치공사               | 7,843,000   | 7,130,000   | 713,000    | 2021. 10. 8.  |
| 236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제2주차장 조성공사                     | 20,110,000  | 18,281,819  | 1,828,181  | 2021. 10. 8.  |
| 237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키오스크 및 포스 제작설치                 | 19,859,000  | 18,053,637  | 1,805,363  | 2021. 10. 15. |
| 238 | 통합관광지원센터 전시 작품 훼손 방지를 위한 아크릴 액자 제작 설치        | 5,038,000   | 4,580,000   | 458,000    | 2021. 10. 15. |
| 239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전시분야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사고이월 등록) | 74,452,640  | 67,684,219  | 6,768,421  | 2021. 10. 25. |
| 240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바코드정산 및 순번대기DID 제작             | 19,919,000  | 18,108,182  | 1,810,818  | 2021. 10. 27. |
| 241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승강기 유지관리대행 용역                  | 9,254,560   | 8,413,237   | 841,323    | 2021. 11. 4.  |
| 242 |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로컬푸드존 및 중앙홀 조성-관급(홍보전광판 제작설치)    | 44,456,000  | 40,414,546  | 4,041,454  | 2021. 11. 5.  |
| 243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BF인증 컨설팅용역                | 11,495,000  | 10,450,000  | 1,045,000  | 2021. 11. 10. |
| 244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                     | 13,017,000  | 11,833,637  | 1,183,363  | 2021. 12. 14. |
| 245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2층 상설전시관 전시용역-사고이월 등록          | 26,000,000  | 23,636,364  | 2,363,636  | 2021. 12. 28. |
| 246 | 영월 통합관광센터 열효율 개선(창호)공사 시행                    | 18,494,000  | 16,812,728  | 1,681,272  | 2022. 3. 30.  |
| 247 | 영월관광센터 3층 카페 내부 창호 및 벽체 설치 공사                | 19,788,000  | 17,989,091  | 1,798,909  | 2021. 10. 26. |
| 248 | 영월관광센터 3층 카페 실내인테리어 공사                       | 20,027,000  | 18,206,364  | 1,820,636  | 2021. 10. 26. |
| 249 | 영월관광센터 층별 안내사인물 제작 및 설치                      | 19,406,000  | 17,641,819  | 1,764,181  | 2021. 10. 26. |
| 250 | 영월관광센터 3층 카페 설비공사                            | 14,114,000  | 12,830,910  | 1,283,090  | 2021. 10. 27. |
| 251 | 영월관광센터 3층 카페 조형물 및 디자인가구 제작                  | 30,437,000  | 27,670,000  | 2,767,000  | 2021. 10. 27. |
| 252 | 영월관광센터 간판 제작                                 | 8,577,000   | 7,797,273   | 779,727    | 2021. 10. 20. |
| 253 | 영월관광센터 바닥 보완 공사                              | 19,600,000  | 17,818,182  | 1,781,818  | 2021. 11. 16. |
| 254 | 영월관광센터 3층 카페주방 덕트설치                          | 2,750,000   | 2,500,000   | 250,000    | 2021. 10. 8.  |
| 255 | 영월관광센터 3층 카페 가스배관 공사                         | 2,360,000   | 2,145,454   | 214,546    | 2021. 10. 18. |
| 256 | 영월관광센터 인도 안전난간 및 표지판 설치공사                    | 5,480,000   | 4,981,819   | 498,181    | 2021. 10. 8.  |
| 257 | 영월관광센터 액자레일 설치 및 전시소품 운반 시행                  | 4,012,000   | 3,647,273   | 364,727    | 2021. 11. 2.  |
| 258 | 영월관광센터 소방유도등 정비공사                            | 2,990,000   | 2,718,182   | 271,818    | 2021. 11. 5.  |
| 259 | 영월관광센터 제2주차장 불력담장설치공사 시행                     | 3,600,000   | 3,272,728   | 327,272    | 2021. 10. 20. |
| 260 | 영월관광센터 3층 전기공사                               | 19,047,000  | 17,315,455  | 1,731,545  | 2021. 11. 9.  |
| 261 | 영월관광센터 야외광장 정비공사                             | 4,323,000   | 3,930,000   | 393,000    | 2021. 10. 20. |
| 262 | 영월관광센터 2층 체험관 전기공사                           | 4,200,000   | 3,818,182   | 381,818    | 2021. 10. 26. |
| 263 | 영월관광센터 관광홍보물 진열대 제작                          | 4,180,000   | 3,800,000   | 380,000    | 2021. 11. 5.  |
| 264 | 영월관광센터 BF인증 등을 위한 시설물 보완공사                   | 9,026,000   | 8,205,455   | 820,545    | 2021. 11. 30. |
| 265 | 영월관광센터 2층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 4,664,000   | 4,240,000   | 424,000    | 2021. 11. 5.  |
| 266 | 영월관광센터 제1,2주차장 카스토퍼 설치공사                     | 11,346,000  | 10,314,546  | 1,031,454  | 2021. 11. 25. |
| 267 | 영월관광센터 CCTV 추가 설치 공사 시행                      | 11,664,000  | 10,603,637  | 1,060,363  | 2021. 11. 26. |
| 268 | 영월관광센터 사인물 제작설치 시행                           | 2,090,000   | 1,900,000   | 190,000    | 2021. 11. 16. |
| 269 | 영월관광센터 화장실 수납장 설치공사                          | 2,508,000   | 2,280,000   | 228,000    | 2021. 11. 30. |

| 번호        | 적요                                            | 지급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지급일자          |
|-----------|-----------------------------------------------|----------------------|----------------------|--------------------|---------------|
| 270       | 영월관광센터 야외광장 분전반설치 전기공사 시행                     | 4,100,000            | 3,727,273            | 372,727            | 2021. 12. 14. |
| 271       | 영월 통합관광센터 열효율 개선(창호)공사 시행                     | 18,494,000           | 16,812,728           | 1,681,272          | 2022. 3. 30.  |
| 272       | 영월관광센터 아트라운지 조성 전기공사                          | 14,048,000           | 12,770,910           | 1,277,090          | 2022. 5. 17.  |
| 273       | 영월관광센터 3층 야외정원 비가림(어닝) 설치공사                   | 9,310,000            | 8,463,637            | 846,363            | 2022. 5. 9.   |
| 274       | 영월관광센터 아트라운지 조성 바닥공사                          | 16,600,000           | 15,090,910           | 1,509,090          | 2022. 5. 10.  |
| <b>소계</b> | <b>49건</b>                                    | <b>4,239,960,360</b> | <b>3,854,509,418</b> | <b>385,450,942</b> |               |
| 1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토목)-선금             | 231,000,000          | 210,000,000          | 21,000,000         | 2020. 9. 9.   |
| 2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PTFE 막구조물     | 483,300,000          | 439,363,636          | 43,936,364         | 2020. 9. 24.  |
| 3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토목)-노무비(9월)        | 18,392,000           | 16,720,000           | 1,672,000          | 2020. 10. 14. |
| 4         | 골프연습장 볼 회수로 정비 공사(준공금)                        | 13,883,000           | 12,620,909           | 1,262,091          | 2020. 11. 3.  |
| 5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토목)-노무비(10월)       | 34,815,000           | 31,650,000           | 3,165,000          | 2020. 11. 13. |
| 6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레미콘구입         | 34,235,510           | 31,123,191           | 3,112,319          | 2020. 11. 30. |
| 7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레미콘구입         | 34,328,710           | 31,207,918           | 3,120,792          | 2020. 11. 30. |
| 8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토목)-노무비(11월)       | 10,780,000           | 9,800,000            | 980,000            | 2020. 12. 3.  |
| 9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이형봉강구입        | 14,159,180           | 12,871,982           | 1,287,198          | 2020. 12. 21. |
| 10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H빔구입          | 31,131,460           | 28,301,327           | 2,830,133          | 2020. 12. 22. |
| 11        | 골프연습장 바닥망 및 와이어 교체공사 물품(코팅 와이어로프)             | 15,792,000           | 14,356,364           | 1,435,636          | 2020. 12. 22. |
| 12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토목)-기성금            | 313,428,000          | 284,934,545          | 28,493,455         | 2020. 12. 23. |
| 13        | 골프연습장 바닥망 및 와이어 교체공사 물품(골프망)                  | 19,830,000           | 18,027,273           | 1,802,727          | 2020. 12. 23. |
| 14        | 영월 볼링장 락커룸 설치 실시설계 용역-준공금                     | 15,143,000           | 13,766,364           | 1,376,636          | 2020. 12. 24. |
| 15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PTFE 막구조물     | 1,127,700,000        | 1,025,181,818        | 102,518,182        | 2021. 2. 5.   |
| 16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내막 제작 설치           | 223,000,000          | 202,727,273          | 20,272,727         | 2021. 2. 5.   |
| 17        |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조성사업 태양광설비 구조검토 용역              | 3,300,000            | 3,000,000            | 300,000            | 2021. 3. 19.  |
| 18        |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급수공사                      | 2,118,000            | 1,925,455            | 192,545            | 2021. 4. 6.   |
| 19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금속제창          | 35,389,570           | 32,172,336           | 3,217,234          | 2021. 4. 12.  |
| 20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전기) 관급자재 - LED투광등      | 74,801,760           | 68,001,600           | 6,800,160          | 2021. 4. 19.  |
| 21        |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화장실 설치-준공금                     | 14,058,000           | 12,780,000           | 1,278,000          | 2021. 4. 23.  |
| 22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관급자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23,243,670           | 21,130,609           | 2,113,061          | 2021. 4. 30.  |
| 23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소방)-준공금                | 39,611,660           | 36,010,600           | 3,601,060          | 2021. 5. 20.  |
| 24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전기)-준공금                | 55,932,000           | 50,847,273           | 5,084,727          | 2021. 5. 20.  |
| 25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토목) 관급자재 - 경계석구입       | 3,836,060            | 3,487,327            | 348,733            | 2021. 5. 26.  |
| 26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매(아크릴탄성매트)       | 233,156,860          | 211,960,782          | 21,196,078         | 2021. 5. 26.  |
| 27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전기) 감리용역-준공금           | 7,683,000            | 6,984,545            | 698,455            | 2021. 5. 28.  |
| 28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소방) 감리용역-준공금           | 10,670,000           | 9,700,000            | 970,000            | 2021. 5. 28.  |
| 29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토목) 관급자재 - 수로관         | 16,982,210           | 15,438,373           | 1,543,837          | 2021. 6. 4.   |
| 30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상주감리 용역(건축, 토목)-준공금    | 41,310,450           | 37,554,955           | 3,755,495          | 2021. 6. 8.   |
| 31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상주감리 용역(건축, 토목)-준공금    | 57,720,000           | 52,472,727           | 5,247,273          | 2021. 6. 8.   |
| 32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건축, 토목)-준공금            | 495,731,000          | 450,664,545          | 45,066,455         | 2021. 6. 11.  |
| 33        | 스포츠파크 전천후테니스장 태양광발전 설비 구입                     | 171,102,300          | 155,547,545          | 15,554,755         | 2021. 6. 11.  |
| 34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준공금            | 18,220,000           | 16,563,636           | 1,656,364          | 2021. 6. 18.  |
| 35        |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주변 정비공사(잔디식재 등 조경공사)           | 19,302,000           | 17,547,273           | 1,754,727          | 2021. 6. 21.  |
| 36        | 스포츠파크 전천후테니스장 태양광발전 설치-준공금                    | 18,339,000           | 16,671,818           | 1,667,182          | 2021. 7. 16.  |
| 37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토목) 관급자재-스틸그레이팅        | 10,496,070           | 9,541,882            | 954,188            | 2021. 7. 20.  |
| 38        |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매 요청(보타도용콘크리트블록) | 25,348,140           | 23,043,764           | 2,304,376          | 2021. 7. 20.  |
| 39        | 스포츠파크 시설물 보수 공사-준공금                           | 7,488,000            | 6,807,273            | 680,727            | 2021. 7. 29.  |
| 40        |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태양광설비 설치 감리용역-준공금              | 6,019,000            | 5,471,818            | 547,182            | 2021. 8. 2.   |
| 41        | 스포츠파크 볼링장 락커장 설치공사-준공금                        | 14,048,000           | 12,770,909           | 1,277,091          | 2021. 9. 1.   |
| 42        |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주변정비(펜스설치)-준공금                 | 12,140,000           | 11,036,364           | 1,103,636          | 2021. 9. 1.   |
| 43        | 스포츠파크 볼링장 락커룸 잔디식재공사-준공금                      | 8,420,000            | 7,654,545            | 765,455            | 2021. 10. 26. |
| 44        | 스포츠파크 볼링장 락커룸벽면 구조물 제작 및 능소화 식재공사             | 4,950,000            | 4,500,000            | 450,000            | 2021. 11. 4.  |
| 45        | 스포츠파크 볼링장 락커룸 캐노피 설치                          | 4,420,000            | 4,018,182            | 401,818            | 2021. 11. 16. |
| 46        | 스포츠파크 볼링장 락커장 이전 설치공사                         | 5,497,000            | 4,997,273            | 499,727            | 2021. 11. 26. |
| 47        | 스포츠파크 볼링장 락커룸 바닥 확성 및 청소 용역                   | 2,100,000            | 1,909,091            | 190,909            | 2021. 11. 30. |
| 48        |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주변정비(실외코트 방풍막 설치)-준공금          | 20,072,350           | 18,247,591           | 1,824,759          | 2021. 12. 23. |
| 49        |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주변정비(실외테니스장 바닥보수)              | 155,536,400          | 141,396,727          | 14,139,673         | 2021. 12. 23. |

[일련번호:16]

# 강 원 도

## 시정·주의 요구, 통보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소홀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등 9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지방의회의원 등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자<sup>52)</sup>를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2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7절에서는 지방

---

52) 지방계약법 제3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sup>53)</sup>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월군(▽과)에서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sup>54)</sup>, 영월군(⊙실)에서는 붙임과 같이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제한대상자로 회보<sup>55)</sup>하였다.

그런데 2019. 9. 1.부터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영월군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일상경비 지급범위 내 포함)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13건, 2,785천 원에 대하여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 부서명       | 계약일       | 건명                  | 계약액          | 계약상대자 |     | 비고 |
|-----------|-----------|---------------------|--------------|-------|-----|----|
|           |           |                     |              | 업체명   | 대표자 |    |
| <b>합계</b> |           | <b>13건</b>          | <b>2,785</b> |       |     |    |
| ◆실        | 20. 1.20. | 소모품 구입              | 15           | ○약국   | ○○○ |    |
| ○과        | 20.11.20. |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 생필품 지원 | 180          | ○약국   | ○○○ |    |
| ○과        | 21.12. 9. |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음료 구입  | 80           | ○약국   | ○○○ |    |
| ○과        | 22. 1.13. | 사무실 상비약품 구입         | 75           | ○약국   | ○○○ |    |

5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2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주주명부

54)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작성 안내 협조 및 통보 요청」▽과-26696(2020. 10. 21.)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및 신고서 작성·제출 안내 통보 요청」▽과-15608(2021. 6. 23.)

55)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 현황 제출」⊙실-14005(2020. 11. 12.)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제출」⊙실-10020(2021. 8.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명단

| 연번 | 의원명 | 제한대상자 |     | 사업자 등록사항 |              |
|----|-----|-------|-----|----------|--------------|
|    |     | 관계    | 성명  | 명칭       | 사업자번호        |
| 1  | ○○○ | 본인    | ○○○ | ○텔       | ○○○-○○-○○○○○ |
| 2  | ○○○ | 배우자   | ○○○ | ○약국      | ○○○-○○-○○○○○ |
| 3  | ○○○ | 모     | ○○○ | ○나       | ○○○-○○-○○○○○ |

| 부서명 | 계약일       | 건명                           | 계약액 | 계약상대자 |     | 비고 |
|-----|-----------|------------------------------|-----|-------|-----|----|
|     |           |                              |     | 업체명   | 대표자 |    |
| ◎과  | 22. 4. 6. | 관광지(장릉, 청령포) 비상약품 구입         | 98  | ○약국   | ○○○ |    |
| ◎실  | 22. 4. 7. | 결산검사위원 격려물품 구입               | 80  | ○약국   | ○○○ |    |
| ◎실  | 22. 1.25. | 업무추진 유관기관 관계자 격려물품 구입        | 160 | ○약국   | ○○○ |    |
| ○과  | 22. 3.30. | 자원봉사자 물품 구입(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 120 | ○약국   | ○○○ |    |
| ○과  | 22. 2.18. | 방역물품(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       | 618 | ○약국   | ○○○ |    |
| ◎과  | 22. 3.14. |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구입      | 600 | ○약국   | ○○○ |    |
| ○면  | 19.11.20. |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참여봉사자 격려 간식 구입  | 50  | ○약국   | ○○○ |    |
| ○면  | 21. 5.13. | 가로경관 조성사업 업무추진 물품구입(상비약)     | 319 | ○약국   | ○○○ |    |
| ○면  | 22. 5.12. |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추진 물품구입(상비약)       | 390 | ○약국   | ○○○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지연배상금 과소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통보 미 이행

### 가. 지연배상금 부과일수 산정 소홀

「지방계약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sup>56)</sup>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공사·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며,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56)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 공사: 1,000분의 0.5
-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0.8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산입하여야 하고,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는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을 지나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2]와 같이 3건의 계약에 대하여 정확한 지체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한 결과 총 331,020원의 지연배상금을 미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지연배상금 부적정 부과현황

(단위: 원)

| 사업명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계약기간                      | 준공일<br>(검사일)                        | 지연배상금 부과 |            |           | 적정 지연배상금 |            |           | 차액<br>(B-A)    |
|-------------------------------------|------------|-------|---------------------------|-------------------------------------|----------|------------|-----------|----------|------------|-----------|----------------|
|                                     |            |       |                           |                                     | 일수       | 지연<br>배상금률 | 부과액(A)    | 일수       | 지연<br>배상금률 | 적정액(B)    |                |
| <b>합 계</b>                          | <b>3건</b>  |       |                           |                                     |          |            | 8,746,670 |          |            | 9,077,690 | <b>331,020</b> |
|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체계<br>구축사업 방재용 드론구입      | 29,775,000 | ㈜○론   | '21. 7.21.~<br>'21. 9.14. | '21.12. 6.<br>( <b>'21.12.15.</b> ) | 83       | 0.08%      | 1,977,060 | 92       | 0.08%      | 2,191,440 | <b>214,380</b> |
| 영월군 귀농귀촌 종합계획<br>수립 연구용역            | 21,340,000 | ㈜○원   | '19. 4.22.~<br>'20. 8.31. | '20.11.26.<br>( <b>'20.11.27.</b> ) | 87       | 0.13%      | 2,413,550 | 88       | 0.13%      | 2,441,290 | <b>27,740</b>  |
| 무릉도원면 무릉리 지방상수도<br>확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차분 | 68,384,000 | ㈜○업   | '20. 6. 1.~<br>'21. 5.31. | '21. 7.19.<br>( <b>'21. 7.20.</b> ) | 49       | 0.13%      | 4,356,060 | 50       | 0.13%      | 4,444,960 | <b>88,900</b>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수의계약 배제통보 미 이행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계약상대자를 소속 기관에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통보하고, 소속기관에서는 배제 기간 중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3]과 같이 “(주)○장” 등 2건의 계약상대자는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음에도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수의계약 배제대상 통보 현황

(단위: 원)

| 사업명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계약기간                      | 준공일<br>(검사일)                        | 지연배상금 부과 |            |           | 수의계약 배제통보<br>(배제기간) | 배제기간<br>계약체결 |
|----------------------------------|------------|-------|---------------------------|-------------------------------------|----------|------------|-----------|---------------------|--------------|
|                                  |            |       |                           |                                     | 일수       | 지연<br>배상금률 | 부과액(A)    |                     |              |
| 합 계                              | 2건         |       |                           |                                     |          |            | 2,450,800 |                     |              |
| 2019년 창소차량 물품구입                  | 8,230,000  | (주)○장 | '19.10. 8.~<br>'19.12.30. | '20. 1.10.<br>( <b>'20. 1.14.</b> ) | 15       | 0.08%      | 98,760    | 미이행                 | 없음           |
| 연당지방정원 작품(소녀 조형물 벤치와 양떼) 제작 및 설치 | 77,370,000 | ○2    | '20. 8.11.~<br>'20.11. 9. | '20.12.17.<br>( <b>'20.12.17.</b> ) | 38       | 0.08%      | 2,352,040 | 미이행                 | 없음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과장)는

[시정] [표 1]의 수의계약 체결 건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계약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하고, 지체일수가 1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수의계약 배제통보를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소속기관에 재차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영월군수(▽과장, ◁과장, ●소장)는

[시정]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방재용 드론구입” 등 3건에 대하여 지체일수를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로 재산정하고 과소 부과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7]

## 강 원 도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영월군 ★과(전 ◎과)

지방○○○

AR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폐광지역의 관광통합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조성하였다.

#### [표 1]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운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 |                                                  |                   |
|--------------------------------------------------|-------------------|
| · 사업기간: 2015~2021                                |                   |
| · 총사업비: 27,971백만 원(국비 12,234 도비 3,670 군비 12,067) |                   |
| · 사업위치: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245-11 / 지하1층, 지상3층          |                   |
| · 사업내용                                           |                   |
| - 4개 시군 통합관광센터, 영상 및 전시관                         | - 박물관 문화상품 판매 홍보관 |
| - 로컬푸드 매장 및 카페                                   | - 회의실 및 부대시설 등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1. 사후설계용역 계약체결 부적정

영월군(◎과)에서는 통합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설계용역을 추진하였다.

[표 2] 통합센터 설계용역 계약 체결현황

(단위: 천 원)

| 계약명                                          | 계약일        | 준공일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과업내용                                                        |
|----------------------------------------------|------------|------------|-----------------------------------------|-------|-------------------------------------------------------------|
| 합계                                           | 2건         |            | * 통합센터 공사 착공 '19. 6. 5. / 준공 '21. 2.28. |       |                                                             |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 및 전시물제작설치 건축설계 용역 | '16. 3.30. | '19. 4.30. | 1,451,000                               | ○소    | - 통합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사후설계용역                    | '20. 6.11. | '21. 3.31. | 224,000                                 | ○소    | - 총사업비 조정협의 결과 및 컨설팅 결과 반영 사후설계<br>-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수정사항 반영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건축법」제2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5조, 제17조, 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 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서 전기·조경·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입찰·발주 이전에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의 조정된 총사업비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

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통합센터 건축공사의 착수 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야 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통합센터의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설계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조정·협의하여야 했다.

한편 영월군(☉과)과 기획재정부는 2019. 3. 18. 총사업비 2차 조정협의를 통하여 사업규모( $8,000\text{m}^2 \rightarrow 6,382.98\text{m}^2$ ) 및 사업비(32,990백만 원  $\rightarrow$  25,300백만 원)를 축소하였고, 이에 앞서 2016.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영월군(☉과)에서는 2차 총사업비의 협의 결과 사업규모 등의 축소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의 과업을 변경하고 재설계를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지난하자 변경하지 아니한 설계도서대로 건축 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리고 2020. 6월, 총사업비 조정협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용역을 “사후설계용역”으로 추진하였는데, 이 설계용역은 건축공사의 준공(2021. 2. 28.) 이후에 완수(2021. 3. 31.)되었으며, 그 결과 대규모 건축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시공하게 되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우려를 발생케 하였다.

아울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건축사의 설계업무의 범위는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 사후설계관리업무 등으로 나뉘며, “건축설계”는 다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고,

“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른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에서 추진한 “사후설계용역”은 사업비 조정에 따른 기존 설계를 변경하여 새로이 설계하는 과업을 계약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을 위한 “사후설계관리업무”가 아닌 실시설계에 해당하고,

관련 법에서 “건축설계”로 정하는 계획·중간·실시설계는 건축공사의 착공 전에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 2. 준공 검사 소홀 및 중복 시공 부적정

영월군(☉과)에서는 통합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표 3]과 같이 건축, 토목 공사를 준공하였다.

[표 3] 통합센터 건축, 토목 공사 추진현황

(단위: 천 원)

| 계약명                         | 계약일        | 준공일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하자보수보증                       |                       |         |
|-----------------------------|------------|-------------|-----------|-------|------------------------------|-----------------------|---------|
|                             |            |             |           |       | 공종                           | 보증기간                  | 보증액     |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역센터 조성 사업(건축, 토목) | '19. 6. 5. | '21. 4. 30. | 8,789,475 | ○설    | 대형 공공성 건축물                   | '21. 3.12.~'31. 3.11. | 30,987  |
|                             |            |             |           |       | 대형 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 주요구조물 | '21. 3.12.~'26. 3.11. | 18,674  |
|                             |            |             |           |       | 건축물 중 상가 2건 제외               | '21. 3.12.~'24.3.11.  | 13,364  |
|                             |            |             |           |       | 방수                           | '21. 3.12.~'22.3.11.  | 107,886 |
|                             |            |             |           |       | 석공사 또는 조적                    | '21. 3.12.~'23.3.11.  | 79,290  |
|                             |            |             |           |       | 건물 내 설비                      | '21. 3.12.~'22.3.11.  | 33,138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가. 준공 검사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는 공사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와 공사 시행의 전반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 예산절감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의 완성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때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의 서류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통합센터의 준공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 시공업체의 입회 하에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4]와 같이 통합센터 3층 카페 바닥면이 설계도에 따라 에폭시 코팅으로 마감되었어야 하나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으로 시공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등 준공 검사를 소홀히 하였고, 시공되지 아니한 공정은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조정 없이 그대로 지급하는 등 대가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3층 카페(식음시설) 바닥면 시공 자료

| 준공 설계도면(에폭시 코팅) |     |        |                                |                 |      | 실제 시공(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                                                                                      |
|-----------------|-----|--------|--------------------------------|-----------------|------|----------------------|--------------------------------------------------------------------------------------|
| 3층              | 301 | 출      | 시멘트 모르타르 / 기계마장                | 대코타일            | TL06 | 80                   |  |
|                 | 302 | 화장실복도  | 시멘트 모르타르 / 기계마장                | 대코타일(우드)        | TL06 | 80                   |                                                                                      |
|                 | 303 | 식음시설   | 콘크리트시멘트마장 / 시멘트액체방수 / 기계마장     | 에폭시 코팅          | TL01 | 80                   |                                                                                      |
|                 | 304 | 방통실-6  | 시멘트 모르타르 / 기계마장                | 흑금침(버너) 마장      | TL06 | 80                   |                                                                                      |
|                 | 305 | 화장실(남) | 콘크리트시멘트마장 / 시멘트액체방수 / 시멘트 모르타르 | 자기질 타일(눈슬림)     | TL01 | 80                   |                                                                                      |
|                 | 306 | 화장실(여) | 콘크리트시멘트마장 / 시멘트액체방수 / 시멘트 모르타르 | 자기질 타일(눈슬림)     | TL01 | 80                   |                                                                                      |
|                 | 307 | 계단실-2  | 시멘트 모르타르                       | THK25 (중장제세리조면) | TL04 | 60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나. 하자 보수 처리 미흡 및 중복 시공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가 준공된 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건축·토목 본 공사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및 에폭시 코킹으로 마감하도록 설계되어 준공 이후 해당 공법의 특성상 바닥면에 크랙이 생긴다고는 하나 과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계약상대자에게 크랙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sup>57)</sup>하였지만, 계약상대자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음을 사유로 하자보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표 5]와 같이 별도 공사로 재차 발주하여 에폭시 도막작업, 비닐타일 설치, 카펫 등을 추가로 시공함으로써 최소 56,446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

57) 준공 담당자: 지방○○ AR 2018.10.15. ~ 2021. 6.30. / 하자로 판단하지 아니함, 하자보수 요청 하지 않음

개관 담당자: 지방○○ ○○○ 2021. 7. 1. ~ 현 재 / 하자로 판단, 하자유무 및 안전성 검사 요청

①「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건축) 시설점검 협조」 ☉과-22219(2021. 8. 12.)호

②「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건축) 바닥갈라짐의 하자유무 및 안전성에 대한 회신요청」

☉과-22960(2021. 8. 23.)호 / 수신자 (주)○사무소 ○장

③「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건축) 바닥갈라짐의 하자유무 및 안전성에 대한 회신」  
광장(건설)2021-742호(2021. 8. 31.)호

- 시설물 기초는 암반위에 구축된 지내력기초와 일부 마이크로 파일로 구성된 지지말뚝기초로 설계 및 시공되어 바닥 마감부 균열이 기초침하에 의한 균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기둥부위 흠 발생 하자부분은 구조체 공사 진행 시 원형 종이거푸집 사용 후 해체시 커팅 흠으로 판단
- 위 의견을 종합판단한 결과 마감공사 진행 시 온도에 따른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로 판단되며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표 5] 공사 중복 시행 현황

(단위: 천 원)

| 계약명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본공사 시공내용                |                       | 중복 시공내용             |        |
|-----------------------------------|------------|---------|---------|-------------------------|-----------------------|---------------------|--------|
|                                   |            |         |         | 내용                      | 금액                    | 내용                  | 금액     |
| 합계                                | 4건         |         |         |                         |                       |                     | 56,446 |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푸드코트존 조성공사       | '20.12.30. | 382,939 | 주식회사 ○설 | -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 80,000 <sup>58)</sup> | - 바닥 크랙보수           | 산정불가   |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3층 카페 컬러에폭시 도막작업 공사 | '21. 7.29. | 19,908  | ○인(주)   | - 에폭시 코킹 <sup>59)</sup> |                       | - 에폭시 도막작업          | 19,837 |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1층 로컬푸드존 및 중앙홀 조성공사 | '21. 6.17. | 263,656 | ○인(주)   | - 에폭시 코킹                |                       | - 비닐타일 설치           | 17,009 |
| 영월관광센터 바닥 보완공사                    | '21. 9.24. | 19,600  | ○설      | - 에폭시 코킹                |                       | - 카펫공사<br>- 비닐타일 설치 | 19,600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영월군(★과, 전 ◎과) 지방○○ AR은 2018. 10. 5.부터 2021. 6. 30.까지 ○ 담당으로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의 감독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설계용역의 과업이 변경되자 이를 변경계약이 아닌 사후설계용역으로 추진하여 건축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설계가 완성되는 등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바닥 공사 중 크랙을 확인하였음에도 감리단 등에게 안전 확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다음 업무 인수자가 해당 크랙을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를 추가로 발주하여 56,446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기에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58)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 토목)」마감공사 전체금액임, 면적별 세부금액은 파악 불가  
59) [표 4] 관련사항임. 본 공사의 준공도면에 에폭시 코킹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 시공되지 아니하여 추후 에폭시 도막작업 공사를 별도 비용으로 실시하여 중복 계상됨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과장)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공사 중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건설공사 사업관리자가 해당 사실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면밀히 검사하여 대가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8]

# 강 원 도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지방세 부과 소홀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표 1]과 같이 취득세 등 108건 166,920,090원을 부과누락 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누락 현황

(단위: 원)

| 구 분       |         | 건수  | 미(과소)부과액    | 과세대상               | 비 고                               |
|-----------|---------|-----|-------------|--------------------|-----------------------------------|
| 합계        |         | 108 | 166,920,090 |                    |                                   |
| 취득세 계     |         | 56  | 89,105,180  |                    |                                   |
|           | 취득세     | 1   | 19,692,640  | ▣ 농업법인 감면 추징       | 농어촌특별세<br>지방교육세는<br>취득세<br>건수에 포함 |
|           |         | 14  | 9,838,320   | ▣ 광업권 취득 미신고       |                                   |
|           |         | 5   | 769,440     | ▣ 지하수시설 취득 미신고     |                                   |
|           |         | 2   | 3,421,020   | ▣ 가설건축물 취득 미신고     |                                   |
|           |         | 34  | 47,689,620  | ▣ 지목변경 취득 미신고      |                                   |
|           | 농어촌특별세  | -   | 5,990,400   | ▣ 취득세 부과 누락분       |                                   |
|           | 지방교육세   | -   | 1,703,740   |                    |                                   |
| 지역자원시설세 계 |         | 46  | 35,181,530  |                    |                                   |
|           | 지역자원시설세 | 30  | 23,427,920  | ▣ 지하수 사용 미신고       |                                   |
|           |         | 16  | 11,753,610  | ▣ 특정부동산(소방분) 부과 누락 |                                   |
| 재산세 계     |         | 6   | 42,633,380  |                    |                                   |
|           | 재산세     | 6   | 37,324,290  | ▣ 상한세액 적용 오류       | 지방교육세는<br>재산세<br>건수에 포함           |
|           | 지방교육세   | -   | 5,309,090   |                    |                                   |

※ 주: 세부내역 [별첨] 참조, 무신고가산세 포함

## 1. 농업법인의 취득 부동산 감면 소홀

「지방세특별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감면 물건을 취득한 자가 해당 물건을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물건이 감면(고유)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sup>60)</sup> 등을 더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2]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미”가 2019. 3. 8.에 취득하고 감면받은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 취득세 등 총 22,245,810원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표 2] 농업법인 감면 취득세 부과누락

(단위: 원)

| 납세자          | 취득물건      | 취득일         | 합계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추징사유        |
|--------------|-----------|-------------|------------|------------|---------|-----------|-------------|
| 농업회사법인<br>○미 | ○읍 ○리 ○번지 | 2019. 3. 8. | 22,245,810 | 19,692,640 | 849,430 | 1,703,740 | 3년 이내<br>매각 |

※ 영월군(▽과)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60)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

※ 공통사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

## 2. 광업권의 취득세 부과 소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구 소재지 자치단체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취득세에서 취득으로 보는 “광업권”이란 「광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인 “탐사권” 및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인 “채굴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광업권(탐사권, 채굴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대상 세액에 가산세<sup>61)</sup>를 더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3]과 같이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광업권(채굴권·탐사권) 매수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총 10,658,18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3] 광업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단위: 원)

| 납세자       | 과세물건 | 취득일           | 합계         | 취득세       | 농특세     | 비고    |
|-----------|------|---------------|------------|-----------|---------|-------|
| ○업(주) 등 8 | 광업권  | 2017년 ~ 2022년 | 10,658,180 | 9,838,320 | 819,860 | 석회석 등 |

※ 영월군(▽과)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61)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

※ 공통사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

### 3. 지하수시설의 취득세 부과 소홀

「지방세법」 제6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호 및 제15조에 따르면 취득세에서 취득으로 보는 “개수”란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수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0의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개수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 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대상 세액에 가산세<sup>62)</sup>를 더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4]와 같이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납세의무자가 개수(지하수시설 설치)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총 830,1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4] 지하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단위: 원)

| 납세자     | 과세물건      | 취득일             | 합계      | 취득세     | 농특세    | 비고       |
|---------|-----------|-----------------|---------|---------|--------|----------|
| ○○○ 등 5 | ○리 ○ 등 4건 | 2019년~<br>2021년 | 830,100 | 769,440 | 60,660 | 지하수 관정시설 |

※ 영월군(▽과)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62)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

※ 공통사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

#### 4.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부과 소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및 제7조 제1항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단서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불법·합법 여부를 따지지 않음)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납부 대상 세액에 가산세<sup>63)</sup>를 더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5]와 같이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가설건축물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등 총 3,646,100원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표 5]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단위: 원)

| 구분 | 납세자   | 과세물건   | 취득일          | 계         | 취득세       | 농특세     | 비고          |
|----|-------|--------|--------------|-----------|-----------|---------|-------------|
| 합계 |       | 2건     |              | 3,646,100 | 3,421,020 | 225,080 |             |
| 1  | ○씨(주) | ○리 ○-○ | 2022. 3. 30. | 835,050   | 826,200   | 8,850   | 1년 이상<br>존치 |
| 2  | ○설    | ○리 산○  | 2021. 5. 18. | 2,811,050 | 2,594,820 | 216,230 |             |

※ 영월군(▽과)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63)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

※ 공통사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

## 5. 지목변경의 취득세 부과 소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한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지목변경(전·임야 등에서 대지·잡종지)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지목변경일 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대상 세액에 가산세<sup>64)</sup>를 더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6]과 같이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납세의무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등 총 51,724,990원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표 6]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단위: 원)

| 납세자       | 과세물건          | 취득일             | 합계         | 취득세        | 농특세       |
|-----------|---------------|-----------------|------------|------------|-----------|
| (주)○포 등 ○ | ○리 ○-○ 등 34필지 | 2017년~<br>2022년 | 51,724,990 | 47,689,620 | 4,035,370 |

※ 영월군(▽과)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64)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

## 6. 지하수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소홀

「지방세법」 제141조부터 제143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 지하자원, 원자력발전(이하 “특정자원”이라 함)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 도세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특정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먹는물 판매용은 세제곱미터당 300원, 목용용수 이용은 세제곱미터당 150원,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세제곱미터당 3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등을 제외한 지하수 사용자인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납부 대상 세액에 가산세<sup>65)</sup>를 더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7]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공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수한 지하수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지하수) 총 23,427,920원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표 7]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누락

(단위: 원)

| 납세자     | 과세물건       | 채수기간                 | 지역자원시설세    | 비고                   |
|---------|------------|----------------------|------------|----------------------|
| ○이 등 32 | ○로 ○-○ 외 ○ | 2019. 1월 ~ 2021. 12월 | 23,427,920 | m <sup>3</sup> 당 30원 |

※ 영월군(▽과)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65)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

## 7. 특정부동산(소방)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부적정

「지방세법」 제141조부터 제147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의 상한 등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8]과 같이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부과했어야 하는데도 표준세율<sup>66)</sup>을 적용하여 총 11,753,610원의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소부과하였다.

[표 8]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소부과

(단위: 원)

| 납세자     | 과세년도            | 과세물건   | 기부과액<br>(a) | 정당부과액<br>(b) | 과소부과액<br>(c=b-a) | 비 고   |
|---------|-----------------|--------|-------------|--------------|------------------|-------|
| ○사 등 16 | 2018년~<br>2021년 | ○리 ○ 등 | 11,753,610  | 23,507,220   | 11,753,610       | 변전소 등 |

※ 영월군(▽과)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66)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소방시설에 총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
| 600만 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 2,400원 + 6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 5,900원 + 1,3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 13,700원 + 2,6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 24,100원 + 3,9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 원 초과             | 49,100원 + 6,4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8.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 적용 부적정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제115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르면,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제2호에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각각 정하면서, 단서로 해당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현황 등이 직전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9]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사실상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한 상한세액 적용을 배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나, 세부담 상한 적용대상으로 착오 적용하여 총 42,663,380원의 재산세를 과소부과하였다.

[표 9]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과소부과

(단위: 원)

| 부과년도            | 과세물건       | 기부과액(a)   | 정당부과액(b)   | 과소부과액(c=b-a) | 비고 |
|-----------------|------------|-----------|------------|--------------|----|
| 2018년~<br>2021년 | ○리 산○ 등 6건 | 8,166,590 | 50,799,970 | 42,633,380   |    |

※ 영월군(▽과)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시정]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누락 및 과소부과로 인한 108건 총 166,920,090원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지방세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여 누락 되는 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지방세 취득세 등 부과누락

1. 농업법인 취득 부동산 감면 추정

(단위: 원)

| 납세자          | 취득물건   | 취득일       | 합 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추정사유     |
|--------------|--------|-----------|------------|------------|---------|-----------|----------|
| 농업회사법인<br>○미 | ○리 ○번지 | 2019.3.8. | 22,245,810 | 19,692,640 | 849,430 | 1,703,740 | 3년 이내 매각 |

2. 광업권의 취득세 부과 누락

(단위: 원)

| 연번 | 납세자 | 과세물건     | 과표          | 합계         | 취득세       | 농특세     |
|----|-----|----------|-------------|------------|-----------|---------|
| 계  |     | 8건       | 409,930,000 | 10,658,180 | 9,838,320 | 819,860 |
| 1  | ○○○ | 강원 ○군 ○읍 | 6,000,000   | 156,000    | 144,000   | 12,000  |
| 2  | ○○○ | 강원 ○군 ○면 | 50,000,000  | 1,300,000  | 1,200,000 | 100,000 |
| 3  | ○○○ | 강원 ○군 ○면 | 55,000,000  | 1,430,000  | 1,320,000 | 110,000 |
| 4  | ○○○ | 강원 ○군 ○면 | 55,000,000  | 1,430,000  | 1,320,000 | 110,000 |
| 5  | ○○○ | 강원 ○군 ○면 | 235,930,000 | 6,134,180  | 5,662,320 | 471,860 |
| 6  | ○○○ | 강원 ○군 ○면 | 2,000,000   | 52,000     | 48,000    | 4,000   |
| 7  | ○○○ | 강원 ○군 ○면 | 4,000,000   | 104,000    | 96,000    | 8,000   |
| 8  | ○○○ | 강원 ○군 ○읍 | 2,000,000   | 52,000     | 48,000    | 4,000   |

3. 지하수시설 취득세 부과 누락

(단위: 원)

| 연번 | 납세자 | 과세물건                   | 과표         | 합계        | 취득세     | 농특세    |
|----|-----|------------------------|------------|-----------|---------|--------|
| 계  |     | 5건                     | 42,461,150 | 1,097,730 | 769,440 | 60,660 |
| 1  | ○○○ | 강원도 ○군 ○면 ○리<br>○번지 ○호 | 7,321,600  | 186,180   | 125,520 | 10,460 |
| 2  | ○○○ | 강원도 ○군 ○면 ○리<br>○번지 ○호 | 7,097,900  | 189,490   | 121,680 | 10,140 |
| 3  | ○○○ | 강원도 ○군 ○면 ○리<br>○번지 ○호 | 7,097,900  | 189,490   | 163,200 | 10,140 |
| 4  | ○○○ | 강원도 ○군 ○면 ○리<br>○번지 ○호 | 11,423,750 | 290,490   | 195,840 | 16,320 |
| 5  | ○○○ | 강원도 ○군 ○면 ○리<br>○번지    | 9,520,000  | 242,080   | 163,200 | 13,600 |

#### 4.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단위: 원)

| 연번 | 납세자 | 과세물건      | 취득일          | 과표          | 합계        | 취득세       | 농특세     |
|----|-----|-----------|--------------|-------------|-----------|-----------|---------|
| 계  |     | 2건        |              | 142,542,500 | 3,646,100 | 3,421,020 | 225,080 |
| 1  | ○○○ | ○면 ○리 ○-○ | 2022. 3. 30. | 34,425,000  | 835,050   | 826,200   | 8,850   |
| 2  | ○○○ | ○읍 ○리 산 ○ | 2021. 5. 18. | 108,117,500 | 2,811,050 | 2,594,820 | 216,230 |

#### 5. 지목 변경 취득세 부과누락

(단위: 원)

| 연번 | 납세자 | 과세물건      | 지목변경일         | 합계         | 취득세        | 농특세       |
|----|-----|-----------|---------------|------------|------------|-----------|
| 계  |     |           |               | 51,724,990 | 47,689,620 | 4,035,370 |
| 1  | ○○○ | ○면 ○리 ○-○ | 2020. 6. 3.   | 3,595,250  | 3,318,700  | 276,550   |
| 2  | ○○○ | ○면 ○리 ○-○ | 2018. 1. 18.  | 1,114,070  | 1,028,380  | 85,690    |
| 3  | ○○○ | ○면 ○리 ○-○ | 2020. 3. 6.   | 1,402,980  | 1,295,060  | 107,920   |
| 4  | ○○○ | ○면 ○리 ○-○ | 2020. 3. 6.   | 1,406,120  | 1,297,960  | 108,160   |
| 5  | ○○○ | ○면 ○리 ○-○ | 2019. 2. 27.  | 1,251,700  | 1,155,420  | 96,280    |
| 6  | ○○○ | ○면 ○리 ○-○ | 2019. 12. 18. | 459,750    | 424,390    | 35,360    |
| 7  | ○○○ | ○면 ○리 ○-○ | 2019. 12. 18. | 357,500    | 330,000    | 27,500    |
| 8  | ○○○ | ○읍 ○리 ○-○ | 2017. 4. 4.   | 559,690    | 516,640    | 43,050    |
| 9  | ○○○ | ○면 ○리 ○-○ | 2018. 4. 10.  | 420,570    | 388,220    | 32,350    |
| 10 | ○○○ | ○면 ○리 ○-○ | 2019. 12. 18. | 251,960    | 232,580    | 19,380    |
| 11 | ○○○ | ○면 ○리 ○-○ | 2018. 6. 5.   | 643,960    | 594,430    | 49,530    |
| 12 | ○○○ | ○면 ○리 ○-○ | 2019. 12. 18. | 446,300    | 411,970    | 34,330    |
| 13 | ○○○ | ○읍 ○리 ○-○ | 2020. 12. 3.  | 291,000    | 268,620    | 22,380    |
| 14 | ○○○ | ○면 ○리 ○-○ | 2019. 12. 18. | 336,050    | 310,200    | 25,850    |
| 15 | ○○○ | ○면 ○리 ○-○ | 2019. 12. 18. | 361,180    | 333,400    | 27,780    |
| 16 | ○○○ | ○면 ○리 ○-○ | 2019. 1. 9.   | 533,840    | 492,780    | 41,060    |
| 17 | ○○○ | ○면 ○리 ○-○ | 2019. 1. 9.   | 51,000     | 47,080     | 3,920     |
| 18 | ○○○ | ○면 ○리 ○-○ | 2022. 5. 11.  | 528,640    | 487,980    | 40,660    |
| 19 | ○○○ | ○면 ○리 ○-○ | 2019. 1. 9.   | 131,850    | 121,710    | 10,140    |
| 20 | ○○○ | ○면 ○리 ○-○ | 2021. 12. 3.  | 5,401,960  | 4,986,430  | 415,530   |
| 21 | ○○○ | ○면 ○리 ○-○ | 2021. 12. 3.  | 313,010    | 288,940    | 24,070    |
| 22 | ○○○ | ○면 ○리 ○-○ | 2021. 12. 3.  | 719,110    | 663,800    | 55,310    |
| 23 | ○○○ | ○면 ○리 ○-○ | 2021. 12. 3.  | 976,860    | 901,720    | 75,140    |
| 24 | ○○○ | ○면 ○리 ○-○ | 2021. 12. 3.  | 4,911,590  | 4,533,780  | 377,810   |
| 25 | ○○○ | ○면 ○리 ○-○ | 2021. 12. 3.  | 6,019,080  | 5,556,080  | 463,000   |
| 26 | ○○○ | ○면 ○리 ○-○ | 2021. 12. 3.  | 12,229,460 | 11,288,740 | 940,720   |
| 27 | ○○○ | ○면 ○리 ○-○ | 2021. 7. 22.  | 3,477,150  | 3,163,900  | 313,250   |
| 28 | ○○○ | ○면 ○리 ○-○ | 2021. 7. 22.  | 734,560    | 673,350    | 61,210    |
| 29 | ○○○ | ○면 ○리 ○-○ | 2021. 7. 22.  | 803,650    | 736,680    | 66,970    |
| 30 | ○○○ | ○면 ○리 ○-○ | 2021. 7. 22.  | 118,340    | 108,480    | 9,860     |
| 31 | ○○○ | ○면 ○리 ○-○ | 2021. 7. 22.  | 39,750     | 36,440     | 3,310     |
| 32 | ○○○ | ○면 ○리 ○-○ | 2018. 2. 14.  | 600,300    | 554,130    | 46,170    |
| 33 | ○○○ | ○면 ○리 ○-○ | 2018. 2. 14.  | 365,500    | 337,390    | 28,110    |
| 34 | ○○○ | ○면 ○리 ○-○ | 2018. 2. 14.  | 871,260    | 804,240    | 67,020    |

## 6. 지하수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누락

(단위: 원)

| 연번 | 납세자 | 과세기간       | 과세물건              | 지역자원시설세    |
|----|-----|------------|-------------------|------------|
| 합계 |     |            | 30건               | 23,427,920 |
| 1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면 ○리 산○-○ | 1,124,020  |
| 2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면 ○리 ○-○  | 111,300    |
| 3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면 ○로 ○    | 183,970    |
| 4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면 ○리 ○-○  | 4,118,400  |
| 5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읍 ○길      | 4,125,010  |
| 6  | ○○○ | 2019~2021년 | 강원도 ○군 ○읍 ○로 ○    | 153,530    |
| 7  | ○○○ | 2019~2021년 | 강원도 ○군 ○면 ○로 ○    | 146,230    |
| 8  | ○○○ | 2019~2021년 | 강원도 ○군 ○면 ○로 ○    | 100,730    |
| 9  | ○○○ | 2019~2020년 | 강원도 ○군 ○면 ○길 ○    | 269,020    |
| 10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면 ○로 ○    | 1,573,920  |
| 11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읍 ○로 ○    | 181,800    |
| 12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면 ○로 ○    | 6,134,570  |
| 13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읍 ○로 ○    | 320,080    |
| 14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면 ○로 ○    | 604,160    |
| 15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면 ○로 ○    | 880,370    |
| 16 | ○○○ | 2019~2021년 | 강원도 ○군 ○면 ○로 ○    | 177,430    |
| 17 | ○○○ | 2019~2020년 | 강원도 ○군 ○읍 ○로 ○    | 337,660    |
| 18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면 ○로 ○    | 592,210    |
| 19 | ○○○ | 2019년      | 강원도 ○군 ○면 ○로 ○    | 26,410     |
| 20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읍 ○로 ○    | 223,420    |
| 21 | ○○○ | 2021~2022년 | 강원도 ○군 ○읍 ○길 ○    | 228,860    |
| 22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면 ○로 ○    | 464,200    |
| 23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면 ○로 ○    | 204,500    |
| 24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읍 ○로 ○    | 109,960    |
| 25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읍 ○로 ○    | 66,370     |
| 26 | ○○○ | 2019~2020년 | 강원도 ○군 ○면 ○로 ○    | 26,040     |
| 27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읍 ○로 ○    | 301,310    |
| 28 | ○○○ | 2019~2022년 | 강원도 ○군 ○면 ○길 ○    | 535,790    |
| 29 | ○○○ | 2021~2022년 | 강원도 ○군 ○읍 ○로 ○    | 15,710     |
| 30 | ○○○ | 2020~2022년 | 강원도 ○군 ○면 ○길 ○    | 90,940     |

## 7.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소부과

(단위: 원)

| 연번 | 납세자 | 부과년도 | 과세물건    | 기부과액(a)    | 정당부과액(b)   | 과소부과액(c=b-a) |
|----|-----|------|---------|------------|------------|--------------|
| 계  |     |      |         | 11,753,610 | 23,507,220 | 11,753,610   |
| 1  | ○○○ | 2018 | ○면 ○리 ○ | 1,394,580  | 2,789,160  | 1,394,580    |
| 2  | ○○○ | "    | ○면 ○리 ○ | 179,200    | 358,400    | 179,200      |
| 3  | ○○○ | "    | ○면 ○리 ○ | 211,140    | 422,280    | 211,140      |
| 4  | ○○○ | "    | ○면 ○리 ○ | 911,510    | 1,823,020  | 911,510      |
| 5  | ○○○ | 2019 | ○면 ○리 ○ | 1,550,740  | 3,101,480  | 1,550,740    |
| 6  | ○○○ | "    | ○면 ○리 ○ | 175,270    | 350,540    | 175,270      |
| 7  | ○○○ | "    | ○면 ○리 ○ | 206,480    | 412,960    | 206,480      |
| 8  | ○○○ | "    | ○면 ○리 ○ | 893,030    | 1,786,060  | 893,030      |

| 연번 | 납세자 | 부과년도 | 과세물건    | 기부과액(a)   | 정당부과액(b)  | 과소부과액(c=b-a) |
|----|-----|------|---------|-----------|-----------|--------------|
| 9  | ○○○ | 2020 | ○면 ○리 ○ | 1,711,710 | 3,423,420 | 1,711,710    |
| 10 | ○○○ | "    | ○면 ○리 ○ | 195,080   | 390,160   | 195,080      |
| 11 | ○○○ | "    | ○면 ○리 ○ | 229,980   | 459,960   | 229,980      |
| 12 | ○○○ | "    | ○면 ○리 ○ | 986,180   | 1,972,360 | 986,180      |
| 13 | ○○○ | 2021 | ○면 ○리 ○ | 1,742,950 | 3,485,900 | 1,742,950    |
| 14 | ○○○ | "    | ○면 ○리 ○ | 188,480   | 376,960   | 188,480      |
| 15 | ○○○ | "    | ○면 ○리 ○ | 222,150   | 444,300   | 222,150      |
| 16 | ○○○ | "    | ○면 ○리 ○ | 955,130   | 1,910,260 | 955,130      |

## 8. 재산세 상한세액 적용오류 과소부과

(단위: 원)

| 연번        | 납세자 | 부과년도 | 과세물건        | 기부과액(a)          | 정당부과액(b)          | 과소부과액(재산세+지방교육세)  |                   |                  |
|-----------|-----|------|-------------|------------------|-------------------|-------------------|-------------------|------------------|
|           |     |      |             |                  |                   | 합계(c=b-a)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 <b>합계</b> |     |      | <b>6건</b>   | <b>8,166,590</b> | <b>50,799,970</b> | <b>42,633,380</b> | <b>37,324,290</b> | <b>5,309,090</b> |
| 1         | ○○○ | 2020 | ○리 산○,산○,산○ | 1,996,070        | 21,079,720        | 19,083,650        | 16,837,480        | 2,246,170        |
| 2         | ○○○ | 2019 | ○리 산○,산○,산○ | 1,403,470        | 19,126,530        | 17,723,060        | 15,631,250        | 2,091,810        |
| 3         | ○○○ | 2021 | ○리 ○        | 1,800,300        | 3,394,820         | 1,594,520         | 1,328,770         | 265,750          |
| 4         | ○○○ | 2020 | ○리 ○        | 89,350           | 1,571,650         | 1,482,300         | 1,235,250         | 247,050          |
| 5         | ○○○ | 2019 | ○리 ○        | 1,492,560        | 2,908,830         | 1,416,270         | 1,180,230         | 236,040          |
| 6         | ○○○ | 2018 | ○리 ○        | 1,384,840        | 2,718,420         | 1,333,580         | 1,111,310         | 222,270          |

# 강 원 도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소홀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손배법」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sup>67)</sup>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sup>68)</su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

67)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1급 3,000만 원~14급 50만 원 등)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통지<sup>69)</sup>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보험개발원에서 의무보험 미갱신(미가입)자료를 통보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폐차, 말소 등)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 소유주(사용자) 등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최고액에 해당하는 날(비사업용 148일 90만 원, 사업용 121일 230만 원, 이륜차 162일 30만 원 등) 또는 수시부과 사유(과태료 최고액 도달일 전 폐차·이전·재가입 등)가 발생한 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68)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9) 영월군 차량등록사업소: 보험개발원에서 의무보험 미갱신(미가입) 자료 통보 시기

. (1회차) 매월 1일 ~ 10일 기간에 보험계약이 종료된 자료 : 매달 22일

. (2회차) 매월 11일 ~ 20일 기간에 보험계약이 종료된 자료 : 매달 2일

. (3회차) 매월 21일 ~ 말일 기간에 보험계약이 종료된 자료 : 매달 12일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와 같이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폐차, 말소 등) 의무보험에 장기 미가입한 차량 소유주 등 50건, 총 17,926천 원의 과태료를 미부과 상태로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미부과 현황**

(단위: 건, 천 원)

| 구분    | 회계과목 | 건수 | 금액     | 비고          |
|-------|------|----|--------|-------------|
| 2018년 | 책임보험 | 50 | 17,926 | 자가용, 건설기계 등 |

※ 영월군(◆과)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시정]**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누락 50건에 대한 총 17,926,000원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미부과 현황

(단위 : 원)

| 연번 | 대장연도 | 대장번호     | 납부자명 | 미부과 사유 | 미부과 금액     | 비고             |
|----|------|----------|------|--------|------------|----------------|
| 계  |      | 50건      |      |        | 17,926,000 |                |
| 1  | 2018 | 0000○○○○ | ○○○  | 부과누락   | 600,000    | 자가용            |
| 2  | 2018 | 0000○○○○ | ○○○  | "      | 300,000    | 자가용            |
| 3  | 2018 | 0000○○○○ | ○○○  | "      | 600,000    | 자가용            |
| 4  | 2018 | 0000○○○○ | ○○○  | "      | 300,000    | 자가용            |
| 5  | 2018 | 0000○○○○ | ○○○  | "      | 600,000    | 자가용            |
| 6  | 2018 | 0000○○○○ | ○○○  | "      | 300,000    | 자가용            |
| 7  | 2018 | 0000○○○○ | ○○○  | "      | 600,000    | 자가용            |
| 8  | 2018 | 0000○○○○ | ○○○  | "      | 300,000    | 자가용            |
| 9  | 2018 | 0000○○○○ | ○○○  | "      | 600,000    | 자가용            |
| 10 | 2018 | 0000○○○○ | ○○○  | "      | 300,000    | 자가용            |
| 11 | 2018 | 0000○○○○ | ○○○  | "      | 600,000    | 자가용            |
| 12 | 2018 | 0000○○○○ | ○○○  | "      | 300,000    | 자가용            |
| 13 | 2018 | 0000○○○○ | ○○○  | "      | 200,000    | 이륜차            |
| 14 | 2018 | 0000○○○○ | ○○○  | "      | 100,000    | 이륜차            |
| 15 | 2018 | 0000○○○○ | ○○○  | "      | 300,000    | 자가용            |
| 16 | 2018 | 0000○○○○ | ○○○  | "      | 190,000    | 미가입일수:55 자가용   |
| 17 | 2018 | 0000○○○○ | ○○○  | "      | 223,000    | 미가입일수:119 건설기계 |
| 18 | 2018 | 0000○○○○ | ○○○  | "      | 600,000    | 자가용            |
| 19 | 2018 | 0000○○○○ | ○○○  | "      | 300,000    | 자가용            |
| 20 | 2018 | 0000○○○○ | ○○○  | "      | 510,000    | 미가입일수:135 자가용  |
| 21 | 2018 | 0000○○○○ | ○○○  | "      | 200,000    | 미가입일수:174 이륜차  |
| 22 | 2018 | 0000○○○○ | ○○○  | "      | 287,000    | 미가입일수: 151 자가용 |
| 23 | 2018 | 0000○○○○ | ○○○  | "      | 203,000    | 미가입일수:109 건설기계 |
| 24 | 2018 | 0000○○○○ | ○○○  | "      | 255,000    | 미가입일수:135 자가용  |
| 25 | 2018 | 0000○○○○ | ○○○  | "      | 382,000    | 미가입일수:103 자가용  |
| 26 | 2018 | 0000○○○○ | ○○○  | "      | 258,000    | 미가입일수:72 자가용   |
| 27 | 2018 | 0000○○○○ | ○○○  | "      | 386,000    | 미가입일수:104 자가용  |
| 28 | 2018 | 0000○○○○ | ○○○  | "      | 47,000     | 미가입일수:31 자가용   |
| 29 | 2018 | 0000○○○○ | ○○○  | "      | 822,000    | 미가입일수:109 건설기계 |
| 30 | 2018 | 0000○○○○ | ○○○  | "      | 230,000    | 미가입일수:65 자가용   |
| 31 | 2018 | 0000○○○○ | ○○○  | "      | 600,000    | 자가용            |
| 32 | 2018 | 0000○○○○ | ○○○  | "      | 191,000    | 미가입일수:103 자가용  |
| 33 | 2018 | 0000○○○○ | ○○○  | "      | 526,000    | 미가입일수:139 자가용  |
| 34 | 2018 | 0000○○○○ | ○○○  | "      | 574,000    | 미가입일수: 151 자가용 |
| 35 | 2018 | 0000○○○○ | ○○○  | "      | 430,000    | 미가입일수:115 자가용  |
| 36 | 2018 | 0000○○○○ | ○○○  | "      | 94,000     | 미가입일수:31 자가용   |
| 37 | 2018 | 0000○○○○ | ○○○  | "      | 129,000    | 미가입일수:72 자가용   |
| 38 | 2018 | 0000○○○○ | ○○○  | "      | 95,000     | 미가입일수:55 자가용   |
| 39 | 2018 | 0000○○○○ | ○○○  | "      | 215,000    | 미가입일수:115 자가용  |
| 40 | 2018 | 0000○○○○ | ○○○  | "      | 902,000    | 미가입일수:119 건설기계 |
| 41 | 2018 | 0000○○○○ | ○○○  | "      | 510,000    | 미가입일수:135 자가용  |
| 42 | 2018 | 0000○○○○ | ○○○  | "      | 263,000    | 미가입일수:139 자가용  |
| 43 | 2018 | 0000○○○○ | ○○○  | "      | 193,000    | 미가입일수:104 자가용  |
| 44 | 2018 | 0000○○○○ | ○○○  | "      | 902,000    | 미가입일수:119 건설기계 |
| 45 | 2018 | 0000○○○○ | ○○○  | "      | 255,000    | 미가입일수:135 자가용  |
| 46 | 2018 | 0000○○○○ | ○○○  | "      | 115,000    | 미가입일수:65 자가용   |
| 47 | 2018 | 0000○○○○ | ○○○  | "      | 822,000    | 미가입일수:109 건설기계 |
| 48 | 2018 | 0000○○○○ | ○○○  | "      | 78,000     | 미가입일수:27 자가용   |
| 49 | 2018 | 0000○○○○ | ○○○  | "      | 39,000     | 미가입일수:27 자가용   |
| 50 | 2018 | 0000○○○○ | ○○○  | "      | 100,000    | 미가입일수:174 이륜차  |

[일련번호:20]

# 강 원 도

## 훈계·시정 요구·권고

제 목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영월군 ◎과(전 △과)

지방○○

AS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표 1]과 같이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금 지원”(이하 “소상공인 특별융자”라 한다)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현황

(단위: 명 / 백만 원)

| 신청기간                   | 모집<br>차수 | 융자현황 |       | 지원대상                                                            | 융자조건                                                           |
|------------------------|----------|------|-------|-----------------------------------------------------------------|----------------------------------------------------------------|
|                        |          | 인원   | 금액    |                                                                 |                                                                |
| '20. 5. 4.<br>~'21. 2월 | 14회      | 493  | 4,930 | 연매출 1~3억 원 미만,<br>'20.4.29. 이전, 사업장 및 주민등록<br>주소지가 영월군 소재인 소상공인 | 최대 1,000만 원<br>2년 거치 3년 분할상환<br>이자율 1%, 무담보, 무보증<br>저신용자 우선 지원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1. 보증채무부담을 위한 절차 이행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3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투자심사 및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영월군 보증채무 관리조례」(이하 “보증채무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고,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당해 주채무관계로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융자를 알선할 수 있고 그 융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국가적인 경제위기 등 지역제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 기간을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수는 채무보증을 하려면 주채무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규모를 확정하여 투자심사를 거쳐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였을 경우 발급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등에 이차보전을 지원하려면 지원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소상공인 특별융자와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추진하면서 [표 2]와 같이 투자심사도 이행하지 않았고, 「보증채무조례」에서 채무보증 신청서를 받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한 것과 다르게 융자금 규모를 먼저 확정(50억 원)하여 영월군의회 의 결의를 받았으며,

채권자가 군수에게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때 주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시중 대출금리 및 타 융자지원 사업과 비교하여 적용금리<sup>70)</sup>와 이차보전 지원조건을 합리적으로 협의·결정했어야 함에도 “○은행과 협의하여 무담보 대출로 하되 1%를 초과하는 이자는 군이 전액 부담”<sup>71)</sup>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표 3]과 같이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추진하였고,

또한 이차보전 기간은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경우라도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이는 5년으로 정하면서 이차보전 금리에 대한 상한은 정하지 않아 향후 대출금리 인상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로 부실채권<sup>72)</sup> 발생 시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보증채무부담행위 추진 절차 비교

| 구 분          | 추진 절차 비교                       |                                                                                      |                                                             |                                     |
|--------------|--------------------------------|--------------------------------------------------------------------------------------|-------------------------------------------------------------|-------------------------------------|
| 조 례          | 채무보증신청서 제출<br>(주채무자→영월군)       | 채무보증 승인<br>(영월군→군의회)                                                                 | 채무보증서 신청<br>(채권자→영월군)                                       | 채무보증서 교부<br>(영월군→채권자)               |
| 소상공인<br>특별융자 | - 소상공인 특별융자<br>계획수립('20.4.18.) | - 의회 동의(50억 원, '20.5.1.)<br>- 융자추천 신청(소상공인→영월군)<br>- 융자대상자 추천<br>(영월군→○협, '20.5.22.) | - 융자지원 협약체결<br>(영월군↔○협, '20.6.2.)<br>- 소상공인 융자개시('20.6.19.) | - 채무보증서 교부<br>(영월군→○협,<br>'20.6.4.) |
| 확인사항         | - 투자심사, 신청 접수<br>절차 미이행        | - 주채무자 신청 없이 보증금액 결정                                                                 | - 무담보 보증채무부담 협약 체결<br>- 협약체결 및 채무보증서 발급 전 융자 추천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70) '20.2분기 시중금리 및 유사사업 적용금리 비교

| 지원기관         | 사업(자금)명        | 대출 운영  |      |           | 이차보전                |       |
|--------------|----------------|--------|------|-----------|---------------------|-------|
|              |                | 1인 한도  | 대출기간 | 대출자 부담 금리 | 지원 금리               | 기간    |
| NH농협         | 보증서 담보대출       | -      | -    | 1.99%(평균) | -                   | -     |
| 소상공인<br>진흥공단 | 코로나19 직접대출     | 1천만 원  | 5년   | 1.5%(고정)  | -                   | -     |
| 영월군          | 중소기업육성자금       | 2~5억 원 | 4년   | 0.45%(변동) | 3%                  | 4년 이내 |
|              |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 1천만 원  | 5년   | 1%(고정)    | 1% 초과,<br>실제 3%(고정) | 5년    |

71) “코로나19 관련 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방안”(△과-19848, 2020.4.10.)

72) ○협과의 협약에 따라 3개월 이상 상환연체 시 부실채권으로 분류

[표 3]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개요

|      |                                                                                                                                            |
|------|--------------------------------------------------------------------------------------------------------------------------------------------|
| 대 상  | 정부·도 등의 특별융자금 수혜를 받지 않는 소상공인 신용등급(1~10등급)과 무관, 低신용자 위주로 융자                                                                                 |
| 규 모  | 융자금액 50억 원 (한시)                                                                                                                            |
| 조 건  | 소상공인 사업자 당 최대 1,000만 원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년 후 완전 상환<br>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약 0.9%)를 융자 이율로 책정                                                      |
| 추진방안 | <b>무담보 대출 / 1% 초과 이자 군에서 부담 / 5년 후 미상환 대출액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에서 보전</b><br>*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관련 조례 제정 후 기금 조성<br>**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 시 구상권 청구 동의서 징구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융자사업 추진 관련 협약체결 부적정

「보증채무조례」 제7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받은 경우 1월 이내에 관계 공무원이 채무의 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이행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월군(△과)은 소상공인 특별융자의 추진을 위해 2020. 6. 2. “○은행 영월군지부”(이하 “○협”이라 한다)와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금에 관한 협약”(이하 “융자지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변제기간 설정 시 군의회의 의결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야 했음에도 제6조에서 부실채권에 대하여 “○협”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군”은 이를 1개월 이내에 변제하도록 하여 상시 이행이 불가능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융자지원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영월군이 부담하는 이차보전 및 원리금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정하여야 할 약정이율의 기준조차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고,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관련 규칙에 따라 3년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월군(△과)은 재정부담 및 의무가 발생하는 융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규정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위변제 처리절차, 영월군이 부담해야 할 이차보전 지원 범위 등에 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현재까지도 ○협이 임의로 융자지원 소상공인들에 대해 일괄 적용한 고정금리 4% 중 소상공인 부담분 1%를 초과하는 3%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고, 부실채권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위해서는 「보증채무조례」나 융자지원협약을 위반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표 4 ] 융자지원협약 내용 검토

| 협약서 내용                                                                                                                                                                                        | 확인사항                                                                                                                                                    |
|-----------------------------------------------------------------------------------------------------------------------------------------------------------------------------------------------|---------------------------------------------------------------------------------------------------------------------------------------------------------|
| 제5조(이차보전) ① “군”은 <b>약정이율</b> 중 소상공인 부담 이자율(1%)을 <b>초과하는 이차차액</b> 을 분기별로 “○협”의 신청 내역에 따라 “○협”에 지급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이율 기준 및 상한 미설정<br/>→ 현재 ○협이 임의로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금리인 3%를 일괄 적용”, 실 금리는 소상공인 부담 이자율 1% 포함하여 4%임</li> </ul> |
| ⑥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협”의 대출일로부터 <b>5년간</b> 으로 한정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저축</li> </ul>                                                               |
|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협”이 대출관리의 선관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b>연체기간 3개월 이상</b> )의 발생 시에는 “○협”의 요청으로 “군”은 <b>원금 및 약정이자를 대위변제</b> 키로 한다.(“○협”은 3개월 이상 연체시 “군”에게 통지하며, “군”은 <b>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b> 변제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채무조례」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1개월 내에 절차 이행 불가</li> </ul>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영월군 ◎과장(전 △과장) 지방○○ AS는 2018. 7. 3.부터 2020. 12. 31.까지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상공인 특별융자사업을 입안·추진하면서 관련 규정 및 융자지원협약의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증채무 부담을 위한 행정절차 및 이차보전 지원 기준을 위반하였고, 무담보 융자에 대해 보증채무 부담을 추진하면서 약정이율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 영월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으므로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협과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융자지원협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사업추진 당시(2020. 2분기) 일반 보증서 담보대출 및 소상공인 지원 대출 등과 비교하여 높게 설정된 소상공인 특별융자의 대출금리(고정 4%)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하여 이차보전 및 대위변제에 따른 영월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1]

##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전국민화공모전 지원 및 수상작품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영월군 ◎과(○재단 파견) 지방○○ AT

② 영월군 △과(전 ◎과) 지방○○ AU

내 용

영월군(◎과)은 김삿갓문화제 홍보 및 민화의 계승·발전과 국내 최초 민화 전문 박물관 지원을 위해 “김삿갓문화제 전국민화공모전 지원사업” (이하 “본 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영월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 (이하 “2019년 도 종합감사” 라 한다) 시 영월군(◎과)은 민화공모전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표 1]과 같이 처분 받은 바 있다.

[표 1] 2019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 및 처분요구

| 제 목                  | 김삿갓문화제 전국민화공모전 보조사업추진 및 정산 부적정                                                                                                                                                       |
|----------------------|--------------------------------------------------------------------------------------------------------------------------------------------------------------------------------------|
| 지적내용                 | ① 2016~2017년도 자부담 경비 정산검사 미 실시<br>② 공모비 수입액(자부담)을 집행계획과 다르게 사용<br>③ 2018년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자부담(수익금) 누락하여 보조사업자가 임의 사용                                                                    |
| 처분요구<br>(‘19.10.21.) | ① (경정계) 실무 1명 자부담금 정산검사 미 실시, 수입금 관리 및 교부결정 검토 소홀<br>② (시정) 승인 내역과 다르게 집행한 공모비 수입액 14,050천 원 회수<br>③ (주의)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금 발생 예상 시 교부조건에 수익금 반환 및 사용계획 제출 등을 별도 명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

## 1.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6(2021. 7. 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수행계획,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교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이 첨부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사업 완료 시 증빙자료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을 부여하거나, 보조사업자로부터 수입금 집행계획을 제출받아 승인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작품 당 5만 원의 출품료를 납부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 사업이 연례반복사업으로 2022년 기준 23회차에 이르므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표 2]와 같이 수익금을 총 사업비에서 누락한 채 교부결정 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 사업의 정산검사 시 출품료 수익금은 보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자의 자금이 아닌데도 이를 자부담으로 간주하여

정산하면서 교부 당시 집행계획을 제출받지 않아 보조사업자가 사용한 내역대로 확인만 하였으며,

보조금은 구입물품에 대한 사진 및 공모전담 직원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도(붙임1 참조) 전부 적정한 것으로 확정하는 등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검사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2019년 도 종합감사에서 교부결정 시 수익금을 누락하여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토록 하고 수익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미이행한 것을 지적받았으므로 수익금의 관리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했음에도 처분 요구에 대한 개선 없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 2] 민화공모전 보조금 교부 및 정산현황

(단위: 점 / 천 원)

| 연도   | 수입금 현황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 보조금 정산검사 및 확정 |         |         |        |
|------|--------|--------|------|------------|---------|---------|-----|---------------|---------|---------|--------|
|      | 작품수    | 수익금    | 집행계획 | 일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일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합 계  | 633    | 31,700 |      |            | 203,000 | 203,000 | 0   |               | 184,700 | 153,000 | 31,700 |
| 2019 | 224    | 11,250 | 미제출  | '19. 5.16. | 75,000  | 75,000  | 0   | '20. 2.19.    | 86,250  | 75,000  | 11,250 |
| 2020 | 205    | 10,250 | 미제출  | '20. 6.22. | 39,000  | 39,000  | 0   | '21. 8. 6.    | 49,250  | 39,000  | 10,250 |
| 2021 | 204    | 10,200 | 미제출  | '21. 7. 8. | 39,000  | 39,000  | 0   | '21.11.29.    | 49,200  | 39,000  | 10,200 |
| 2022 |        |        | 미제출  | '22. 5.23. | 50,000  | 50,000  | 0   |               |         |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민화공모전 수상작품 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1조,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술품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규정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2018. 7.)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재물조사)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미술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고(등재)하여야 하며, 미술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모든 미술품은 사진과 함께 특징 등 주요 이력을 사진첩 또는 앨범 형태의 관리카드로 현품과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소유 미술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보관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영월군(☉과)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및 시상금(작품구입비)을 지원하여 109점의 민화작품을 취득(붙임2 참조)하였고 상설(순회) 전시 및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자 소유의 조선민화박물관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월군 소유인 민화작품의 관리 실태를 감사기간 중인 2022. 6. 22. 조선민화박물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전년도 및 과년도 수상작 10여 점은 상설전시관에 전시하고 있고 그 외 작품들은 항온항습기가 설치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면적에 비해 소장품이 많아 여유 보관 공간이 부족하고 조선민화박물관 자체 소장품과 구분 없이 적재되어 있어 전체 수량 및 보존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22년간 535,400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득한 재산(미술품)임에도 장기간 민간에서 관리·사용하고 있어 추후 영월군의 관리 소홀에 따른 소유권 다툼이나 분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영월군(☉과)에서는 [표 4]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 관리 및 정기 보유현황 조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3] 수상작품 보관 현황(조선민화박물관)

(단위: 천 원)



[표 4] 수상작품 구입(시상금) 및 관리 현황

(단위: 천 원)

| 구입 연도          | 작품 수 | 시상금<br>지출액 | 보관장소    | 시스템 등록 | 정기 조사 | 비 고                                                           |
|----------------|------|------------|---------|--------|-------|---------------------------------------------------------------|
| 2000~<br>2021년 | 109  | 535,400    | 조선민화박물관 | 미이행    | 미이행   | 2012년 공모전은 조선민화<br>박물관에서 자체 추진,<br>해당연도 수상작 5점은<br>조선민화박물관 소유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영월군 ◎과(○재단 파견) 지방○○ AT는 2018. 10. 15.부터 2021. 12. 31.까지 ○팀장으로, △과(전 ◎과) 지방○○ AU는 2018. 10. 15.부터 2020. 6. 30.까지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면서 2019년 도 종합감사 시 보조금 교부·정산 등에 관해 지적받고도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고 수익금 집행

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사업자가 임의 사용한대로 인정하고, 증빙자료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 없이 보조금을 정산·확정하였으며, 영월군 소유인 민화작품(공모전 수상작품) 109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보조사업자로부터 수익금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2022년 보조금을 재교부결정 및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영월군 소유인 민화작품에 대하여 보유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미술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정산 현황

(단위: 천 원)

| 연도   | 세부내역                                                             | 보조금 집행현황 |        |              |        |        |               | 정산검사 부적정                                                |
|------|------------------------------------------------------------------|----------|--------|--------------|--------|--------|---------------|---------------------------------------------------------|
|      |                                                                  | 당초 교부결정  |        |              | 정산내역   |        |               |                                                         |
|      |                                                                  | 계        | 보조금    | 자부담<br>(공모비) | 계      | 보조금    | 자부담<br>(공모비)  |                                                         |
| 2019 | 소 계                                                              | 75,000   | 75,000 | 0            | 86,200 | 75,000 | 11,200        |                                                         |
|      | 시 상 금                                                            | 43,000   | 43,000 | 0            | 43,000 | 43,000 | 0             |                                                         |
|      | 심사수당                                                             | 4,400    | 4,400  | 0            | 4,400  | 4,400  | 0             |                                                         |
|      | 시상상품                                                             | 3,500    | 3,500  | 0            | 3,500  | 3,500  | 0             | -증빙사진 미첨부                                               |
|      | 수상작 도록 제작                                                        | 16,000   | 16,000 | 0            | 16,000 | 16,000 | 0             |                                                         |
|      | 작품촬영비                                                            | 3,000    | 3,000  | 0            | 3,000  | 3,000  | 0             |                                                         |
|      | 홍보 및 기타운영<br>· 홍보물 제작<br>· 전시액자 제작<br>· 사무용품 등                   | 5,100    | 5,100  | 0            | 5,100  | 1,700  | 0             |                                                         |
|      |                                                                  |          |        |              |        | 800    | 0             | -증빙사진 미첨부                                               |
|      |                                                                  |          |        |              |        | 2,600  | 0             |                                                         |
|      | 수상작 표구비                                                          | 0        | 0      | 0            | 7,900  | 0      | 7,900         | -자부담 사용계획 미제출                                           |
|      | 공모전담 직원 인건비                                                      | 0        | 0      | 0            | 1,750  | 0      | 1,750         | -자부담 사용계획 미제출<br>-근로계약서 미첨부                             |
| 행사운영 | 0                                                                | 0        | 0      | 1,550        | 0      | 1,550  | -자부담 사용계획 미제출 |                                                         |
| 2020 | 소 계                                                              | 39,000   | 39,000 | 0            | 49,250 | 39,000 | 10,250        |                                                         |
|      | 심사수당                                                             | 4,400    | 4,400  | 0            | 4,400  | 4,400  | 0             |                                                         |
|      | 시상상품                                                             | 4,500    | 4,500  | 0            | 4,500  | 4,500  | 0             | -증빙사진 미첨부                                               |
|      | 수상작 도록 제작                                                        | 20,000   | 20,000 | 0            | 20,000 | 20,000 | 0             |                                                         |
|      | 작품촬영비                                                            | 3,500    | 3,500  | 0            | 3,500  | 3,500  | 0             |                                                         |
|      | 전시액자 제작                                                          | 1,000    | 1,000  | 0            | 1,000  | 1,000  | 0             |                                                         |
|      | 홍보 및 기타운영<br>· 현수막 등<br>· 상장제작 및 우송<br>· 행사운영                    | 5,600    | 5,600  | 0            | 5,600  | 4,000  | 0             |                                                         |
|      |                                                                  |          |        |              |        | 1,100  | 0             |                                                         |
|      |                                                                  |          |        |              |        | 500    | 0             |                                                         |
|      | 수상작 표구비                                                          | 0        | 0      | 0            | 5,950  | 0      | 5,950         | -자부담 사용계획 미제출                                           |
|      | 공모전담 직원 인건비                                                      | 0        | 0      | 0            | 3,900  | 0      | 3,900         | -자부담 사용계획 미제출<br>-근로계약서 미첨부<br>-보조금, 자부담 계좌<br>외 타계좌 이체 |
|      | 현수막 및 사무용품비                                                      | 0        | 0      | 0            | 400    | 0      | 400           | -자부담 사용계획 미제출                                           |
| 2021 | 소 계                                                              | 39,000   | 39,000 | 0            | 49,200 | 39,000 | 10,200        |                                                         |
|      | 심사수당                                                             | 4,400    | 4,400  | 0            | 4,400  | 4,400  | 0             |                                                         |
|      | 시상상품                                                             | 4,500    | 4,500  | 0            | 4,500  | 4,500  | 0             | -증빙사진 미첨부                                               |
|      | 수상작 도록 제작                                                        | 20,000   | 20,000 | 0            | 20,000 | 20,000 | 0             |                                                         |
|      | 작품촬영비                                                            | 3,500    | 3,500  | 0            | 3,500  | 3,500  | 0             |                                                         |
|      | 전시액자 제작                                                          | 1,000    | 1,000  | 0            | 1,000  | 1,000  | 0             |                                                         |
|      | 홍보 및 기타운영<br>· 포스터<br>· SNS 홍보<br>· 현수막 등<br>· 수상작 표구비<br>· 행사운영 | 5,600    | 5,600  | 0            | 5,600  | 660    | 0             |                                                         |
|      |                                                                  |          |        |              |        | 330    | 0             |                                                         |
|      |                                                                  |          |        |              |        | 1,010  | 0             |                                                         |
|      |                                                                  |          |        |              |        | 400    | 0             | -증빙사진 미첨부                                               |
|      | 수상작 표구비                                                          | 0        | 0      | 0            | 5,800  | 0      | 5,800         | -자부담 사용계획 미제출                                           |
|      | 공모전담 직원 인건비                                                      | 0        | 0      | 0            | 4,400  | 0      | 4,400         | -자부담 사용계획 미제출<br>-근로계약서 미첨부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붙임 2] 공모전 수상작품 구입 현황

(단위: 천 원)

| 연도     | 구분   | 훈격      | 작품명 | 규격        | 수상자 | 시상금     |
|--------|------|---------|-----|-----------|-----|---------|
| 합 계    |      |         |     | 114점      |     | 535,400 |
| 2000년도 | 제1회  | 대상      | ○○○ | 68×48     | ○○○ | 1,000   |
|        |      | 최우수     | ○○○ | 68×48     | ○○○ | 600     |
|        |      | 우수      | ○○○ | 68×48     | ○○○ | 400     |
| 2001년도 | 제2회  | 대상      | ○○○ | 57×47     | ○○○ | 1,000   |
|        |      | 최우수     | ○○○ | 각 55×33   | ○○○ | 600     |
|        |      | 우수      | ○○○ | 110×45    | ○○○ | 400     |
| 2002년도 | 제3회  | 대상      | ○○○ | 각 125×40  | ○○○ | 1,000   |
|        |      | 최우수     | ○○○ | 각 72×43   | ○○○ | 500     |
|        |      | 우수      | ○○○ | 115×70    | ○○○ | 300     |
| 2003년도 | 제4회  | 대상      | ○○○ | 73×130    | ○○○ | 2,000   |
|        |      | 최우수     | ○○○ | 123×71    | ○○○ | 1,000   |
|        |      | 우수      | ○○○ | 70×168    | ○○○ | 600     |
| 2004년도 | 제5회  | 대상      | ○○○ | 각 85×53   | ○○○ | 3,000   |
|        |      | 최우수     | ○○○ | 61×169    | ○○○ | 2,000   |
|        |      | 우수      | ○○○ | 72×196    | ○○○ | 1,000   |
| 2005년도 | 제6회  | 대상      | ○○○ | 각 110×44  | ○○○ | 4,000   |
|        |      | 최우수(병풍) | ○○○ | 각 90×55   | ○○○ | 2,000   |
|        |      | 최우수(액자) | ○○○ |           | ○○○ | 1,500   |
|        |      | 우수(병풍)  | ○○○ | 각 59×34   | ○○○ | 1,500   |
|        |      | 우수(액자)  | ○○○ | 58×158    | ○○○ | 1,000   |
| 2006년도 | 제7회  | 대상      | ○○○ | 각 124×400 | ○○○ | 4,000   |
|        |      | 최우수(병풍) | ○○○ | 각 45×30   | ○○○ | 2,000   |
|        |      | 최우수(액자) | ○○○ | 175×145   | ○○○ | 1,500   |
|        |      | 우수(병풍)  | ○○○ | 각 42×30   | ○○○ | 1,500   |
|        |      | 우수(액자)  | ○○○ | 각 35×20   | ○○○ | 1,000   |
| 2007년도 | 제8회  | 대상      | ○○○ | 각 127×45  | ○○○ | 5,000   |
|        |      | 최우수(병풍) | ○○○ | 각 116×42  | ○○○ | 2,500   |
|        |      | 최우수(액자) | ○○○ | 69×72     | ○○○ | 2,000   |
|        |      | 우수(병풍)  | ○○○ |           | ○○○ | 수상거부    |
|        |      | 우수(액자)  | ○○○ | 105×78    | ○○○ | 1,500   |
| 2008년도 | 제9회  | 대상      | ○○○ | 각 103×35  | ○○○ | 5,000   |
|        |      | 최우수(병풍) | ○○○ | 각 90×40   | ○○○ | 2,500   |
|        |      | 최우수(액자) | ○○○ | 63×167    | ○○○ | 2,000   |
|        |      | 우수(병풍)  | ○○○ | 각 146×40  | ○○○ | 2,000   |
| 2009년도 | 제10회 | 우수(액자)  | ○○○ | 96×64     | ○○○ | 1,500   |
|        |      | 대상      | ○○○ | 각 130×52  | ○○○ | 5,000   |
|        |      | 최우수(병풍) | ○○○ | 각 58×25   | ○○○ | 2,500   |
|        |      | 최우수(액자) | ○○○ | 162×130   | ○○○ | 2,000   |
|        |      | 우수(병풍)  | ○○○ | 각 125×46  | ○○○ | 2,000   |
|        |      | 우수(액자)  | ○○○ | 65×160    | ○○○ | 1,500   |

| 연도     | 구분   | 훈격      | 작품명 | 규격        | 수상자 | 시상금            |
|--------|------|---------|-----|-----------|-----|----------------|
| 2010년도 | 제11회 | 대상      | ○○○ | 160×110   | ○○○ | 7,000          |
|        |      | 최우수(병풍) | ○○○ | 각 166×40  | ○○○ | 5,000          |
|        |      | 최우수(액자) | ○○○ | 113×45    | ○○○ | 3,000          |
|        |      | 우수(병풍)  | ○○○ | 44×434    | ○○○ | 3,000          |
|        |      | 우수(액자)  | ○○○ | 144×75    | ○○○ | 2,000          |
| 2011년도 | 제12회 | 대상      | ○○○ | 184×125   | ○○○ | 1,0000         |
|        |      | 최우수(병풍) | ○○○ | 각 187×111 | ○○○ | 5,000          |
|        |      | 최우수(액자) | ○○○ | 각 170×156 | ○○○ | 3,000          |
|        |      | 우수(병풍)  | ○○○ | 각 165×70  | ○○○ | 3,000          |
|        |      | 우수(액자)  | ○○○ | 170×97    | ○○○ | 2,000          |
| 2012년도 | 제13회 | 대상      | ○○○ | 160×730   | ○○○ | 보조사업자<br>자체 추진 |
|        |      | 최우수(병풍) | ○○○ | 153×318   | ○○○ |                |
|        |      | 최우수(액자) | ○○○ | 141×73    | ○○○ |                |
|        |      | 우수(병풍)  | ○○○ | 205×280   | ○○○ |                |
|        |      | 우수(액자)  | ○○○ | 180×147   | ○○○ |                |
| 2013년도 | 제14회 | 대상(병풍)  | ○○○ | 160×450   | ○○○ | 15,000         |
|        |      | 최우수(병풍) | ○○○ | 171×342   | ○○○ | 7,000          |
|        |      | 최우수(액자) | ○○○ | 110×160   | ○○○ | 5,000          |
|        |      | 창작특별    | ○○○ | 130× 130  | ○○○ | 5,000          |
|        |      | 우수(병풍)  | ○○○ | 126×48    | ○○○ | 5,000          |
|        |      | 우수(액자)  | ○○○ | 110×157   | ○○○ | 3,000          |
| 2014년도 | 제15회 | 대상(액자)  | ○○○ | 194x71    | ○○○ | 15,000         |
|        |      | 최우수(병풍) | ○○○ | 130x175   | ○○○ | 7,000          |
|        |      | 최우수(액자) | ○○○ | 170x125   | ○○○ | 5,000          |
|        |      | 최우수(창작) | ○○○ | 168x118   | ○○○ | 5,000          |
|        |      | 우수(병풍)  | ○○○ | 140x400   | ○○○ | 5,000          |
|        |      | 우수(액자)  | ○○○ | 185x118   | ○○○ | 수상취소           |
|        |      | 우수(창작)  | ○○○ | 82x59     | ○○○ | 3,000          |
|        |      | 우수(액자)  | ○○○ | 162x120   | ○○○ | 3,000          |
| 2015년도 | 제16회 | 대상      | ○○○ | 156x136   | ○○○ | 15,000         |
|        |      | 최우수(병풍) | ○○○ | 136x36    | ○○○ | 7,000          |
|        |      | 최우수(액자) | ○○○ | 146x154   | ○○○ | 5,000          |
|        |      | 최우수(창작) | ○○○ | 134x98    | ○○○ | 5,000          |
|        |      | 우수(병풍)  | ○○○ | 110x50    | ○○○ | 5,000          |
|        |      | 우수(액자)  | ○○○ | 28x28     | ○○○ | 3,000          |
|        |      | 우수(창작)  | ○○○ | 136x76    | ○○○ | 3,000          |
| 2016년도 | 제17회 | 대상      | ○○○ |           | ○○○ | 15,000         |
|        |      | 최우수(병풍) | ○○○ |           | ○○○ | 7,000          |
|        |      | 최우수(액자) | ○○○ |           | ○○○ | 5,000          |
|        |      | 최우수(창작) | ○○○ |           | ○○○ | 5,000          |
|        |      | 우수(병풍)  | ○○○ |           | ○○○ | 5,000          |
|        |      | 우수(액자)  | ○○○ |           | ○○○ | 3,000          |
|        |      | 우수(창작)  | ○○○ |           | ○○○ | 3,000          |

| 연도     | 구분   | 훈격      | 작품명 | 규격       | 수상자 | 시상금    |
|--------|------|---------|-----|----------|-----|--------|
| 2017년도 | 제18회 | 대상      | ○○○ | 135x205  | ○○○ | 15,000 |
|        |      | 최우수(병풍) | ○○○ | 각175x62  | ○○○ | 7,000  |
|        |      | 최우수(액자) | ○○○ | 각90x40   | ○○○ | 5,000  |
|        |      | 최우수(창작) | ○○○ | 140x260  | ○○○ | 5,000  |
|        |      | 우수(병풍)  | ○○○ | 123x347  | ○○○ | 5,000  |
|        |      | 우수(액자)  | ○○○ | 74x184   | ○○○ | 3,000  |
|        |      | 우수(창작)  | ○○○ | 180x140  | ○○○ | 3,000  |
| 2018년도 | 제19회 | 대상      | ○○○ | 210x94   | ○○○ | 15,000 |
|        |      | 최우수(병풍) | ○○○ | 각88x40   | ○○○ | 7,000  |
|        |      | 최우수(액자) | ○○○ | 각28x28   | ○○○ | 5,000  |
|        |      | 최우수(창작) | ○○○ | 135x94   | ○○○ | 5,000  |
|        |      | 우수(병풍)  | ○○○ | 각75x47   | ○○○ | 5,000  |
|        |      | 우수(액자)  | ○○○ | 131x93   | ○○○ | 3,000  |
|        |      | 우수(창작)  | ○○○ | 138x70   | ○○○ | 3,000  |
| 2019년도 | 제20회 | 대상      | ○○○ | 165x70   | ○○○ | 15,000 |
|        |      | 최우수(병풍) | ○○○ | 각 118x38 | ○○○ | 7,000  |
|        |      | 최우수(액자) | ○○○ | 95x210   | ○○○ | 5,000  |
|        |      | 최우수(창작) | ○○○ | 73x90    | ○○○ | 5,000  |
|        |      | 우수(병풍)  | ○○○ | 각 138x52 | ○○○ | 5,000  |
|        |      | 우수(액자)  | ○○○ | 200x355  | ○○○ | 3,000  |
|        |      | 우수(창작)  | ○○○ | 200x140  | ○○○ | 3,000  |
| 2020년도 | 제21회 | 대상      | ○○○ | 각165*104 | ○○○ | 20,000 |
|        |      | 최우수     | ○○○ | 각143*63  | ○○○ | 10,000 |
|        |      | 최우수     | ○○○ | 160*130  | ○○○ | 10,000 |
|        |      | 우수      | ○○○ | 각138*74  | ○○○ | 7,000  |
|        |      | 우수      | ○○○ | 100*276  | ○○○ | 7,000  |
|        |      | 우수      | ○○○ | 각125*71  | ○○○ | 7,000  |
| 2021년도 | 제22회 | 대상      | ○○○ | 각86x56   | ○○○ | 20,000 |
|        |      | 최우수     | ○○○ | 각117x45  | ○○○ | 10,000 |
|        |      | 최우수     | ○○○ | 100x272  | ○○○ | 10,000 |
|        |      | 우수      | ○○○ | 각120x45  | ○○○ | 7,000  |
|        |      | 우수      | ○○○ | 각150x51  | ○○○ | 7,000  |
|        |      | 우수      | ○○○ | 145x77   | ○○○ | 7,000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22]

# 강 원 도

## 시정 요구

제 목 2020년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센터(△과)

내 용

영월군(◆센터)에서는 관내 노후 양식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표 1]과 같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2020년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 보조사업자<br>(대표자) | 사업내용                          | 편성과목                     | 총사업비    |             |             |              |           |
|----------------|-------------------------------|--------------------------|---------|-------------|-------------|--------------|-----------|
|                |                               |                          | 계       | 도비<br>(20%) | 군비<br>(50%) | 자부담<br>(30%) | 추가<br>자부담 |
| ○장<br>(○○○)    | 양식장 1개소 신축<br>(수조 3동, 전기설비 등) | 402-02<br>(민간자본<br>사업보조) | 300,740 | 60,000      | 150,000     | 90,000       | 740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부적정

「지방재정법」(2021. 7. 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전의 기준) 제32조의4, 제32조의6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면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센터)은 [표 2]와 같이 2020. 11. 25. 보조사업자가 잦은 강우 등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사업 기한을 2020. 12. 6.에서 2021. 1. 31.로 변경(증 56일) 신청한 건에 대하여,

회계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에 사업비 이월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했음에도 강원도의 승인은 받지 않은 채 2020. 11. 27. 승인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완료 기한이 2021. 1. 31.까지 연장되었으나 시공사가 준공을 지체하여 준공예정일을 7개월 이상 지난 2021. 9. 7. 준공검사를 하고 사업이 최종 완료되었다.

이후 영월군(☐센터)은 보조사업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했으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 잔액을 사용하여 추가 전기시설공사를 하고자 2021. 10. 12.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자 사업 기간도 명기하지 않은 채 이를 걱정된 것으로 검토하여 승인 통보하는 등 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대한 검토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사업변경 요청 및 승인 현황

| 변경요청 및 승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확인사항                                                                                                                                                                                         |
|------------------------------------|--------------------------------------------------------------------------------------------------------------------------------|------------------------------|----------------------------------------------------------------------------------------------------------------------------------------------------------------------------------------------|
| (요청) '20.11.25.<br>(승인) '20.11.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기간 연장: 증 56일<br/>(기존) '20. 9. 7.~'20.12. 6.<br/>(변경) '20. 9. 7.~'21. 1.31.</li> </ul> | 찾은 강우 등에 따른 공기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월에 대한 강원도 승인절차 미이행</li> <li>변경승인 전 시공업체와 기간변경 계약 임의 체결 2회<br/>( '20.11.18.) '20. 9. 7.~'20.12.26.<br/>( '20.11.25.) '20. 9. 7.~'21. 1.31.</li> </ul> |
| (요청) '21.10.12.<br>(승인) '21.10.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 설비공사 신규 반영<br/>(배전반 설치, 가로등 4개 등)</li> </ul>                                         | 사업비 진행잔액 발생 및 추가설비 (전기시설)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공 지체(당초 기한 '21.1.31.)되어 '21. 9. 7. 준공검사 → <b>사업 종료 추가 사업 승인, 사업기간 미설정</b></li> </ul>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

「지방재정법」(2021. 7. 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기준) 제32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5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sup>73)</sup>에 대해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영월군(☐센터)은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5년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고, 정산 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기하였다.

73)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따라서 시장·군수는 민간의 자본형성이 교부 목적인 보조사업의 사업목적물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센터)은 [표 3]과 같이 본 사업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목록 및 정기 보고도 제출받지 않았고 공시도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중요재산 관리 및 공시 현황

(단위 : 천 원)

| 취득 연도 | 보조사업자 (대표자) | 취득 재산명  | 규모       | 시설 주소        | 취득가액    | 중요재산 목록 제출 | 공시  | 정기 보고 |
|-------|-------------|---------|----------|--------------|---------|------------|-----|-------|
| 2021  | ○장 (○○○)    | 내수면 양식장 | 5,641 m² | ○읍 ○로 ○번지 일원 | 300,740 | 미이행        | 미이행 | 미이행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시정] 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제출받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하지 않도록 지속·관리하시고, 앞으로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정산 등 보조사업 관련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3]

# 강 원 도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영월군 드론산업 육성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영월군 ♣과(전 △과) 지방○○ AV

② 영월군 △과 지방○○ AW

③ 영월군 ◁과(전 △과) 지방○○ AX

④ 영월군 △과 지방○○ AY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학생 드론 교육 서비스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표 1] 영월군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천 원)

| 연도   | 사업명<br>(사업내용)                         | 보조금 교부액 |        |         |         | 보조금<br>신청일  | 보조금<br>지급결정일 | 정산<br>검사일   |
|------|---------------------------------------|---------|--------|---------|---------|-------------|--------------|-------------|
|      |                                       | 합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             |
|      | 합 계                                   | 875,790 | 95,542 | 649,808 | 130,440 |             |              |             |
| 2019 | 학생 드론 교육서비스 지원사업<br>(드론 자격취득 지원)      | 30,000  | -      | 30,000  | -       | '19. 5. 21. | '19. 5. 24.  | '19. 12. 3. |
| 2020 |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br>(뉴미디어 드론라이프쇼 상시) | 100,000 | -      | 100,000 | -       | '20. 7. 15. | '20. 7. 31.  | -           |
| 2020 | 드론 전문 인력 양성 추진<br>(드론 입문 교육과정 운영 지원)  | 30,650  | -      | 27,450  | 3,200   | '20. 1. 22. | '20. 1. 23.  | '21. 1. 21. |
| 2020 | 드론 전문 인력 양성 추진<br>(드론 자격취득 지원)        | 20,000  | -      | 20,000  | -       | '20. 8. 18. | '20. 8. 19.  | '21. 1. 20. |

| 연도   | 사업명<br>(사업내용)                                    | 보조금 교부액 |        |         |        | 보조금<br>신청일  | 보조금<br>지급결정일 | 정산<br>검사일    |
|------|--------------------------------------------------|---------|--------|---------|--------|-------------|--------------|--------------|
|      |                                                  | 합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              |
| 2020 | 드론 스포츠 활성화 추진<br>(드론 스포츠 선수단 육성 및 운영 지원)         | 21,350  | -      | 20,000  | 1,350  | '20. 7. 24. | '20. 7. 27.  | '21. 1. 20.  |
| 2020 | 드론 실증 시범사업추진<br>(드론 방제테스트 운영)                    | 108,240 | -      | 92,000  | 16,240 | '20. 1. 22. | '20. 1. 23.  | '21. 1. 25.  |
| 2020 | 드론 군집 비행<br>(드론 라이트쇼 운영 지원)                      | 132,000 | -      | 100,000 | 32,000 | '20. 8. 20. | '20. 8. 21.  | '21. 4. 27.  |
| 2021 | 드론 전문 인력 양성 추진<br>(영월군민 드론 자격취득 지원)              | 113,500 | -      | 56,100  | 57,400 | '21. 2. 25. | '21. 2. 25.  | '21. 12. 30. |
| 2021 |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br>(드론 라이트쇼 운영 지원)             | 117,000 | -      | 100,000 | 17,000 | '21. 4. 22. | '21. 4. 23.  | '22. 1. 11.  |
| 2021 | 드론 스포츠 활성화 추진<br>(드론 스포츠 선수단 육성 및 운영 지원)         | 33,250  | -      | 30,000  | 3,250  | '21. 5. 3.  | '21. 5. 11.  | '22. 3. 28.  |
| 2021 |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br>드론 인재육성사업<br>(유인드론 제작 및 개발 지원사업) | 150,000 | 95,542 | 54,458  | -      | '21. 5. 25. | '21. 5. 27.  | '22. 1. 18.  |
| 2021 | 드론 전문 인력 양성 추진<br>(학생 드론 자격취득 지원)                | 19,800  | -      | 19,800  | -      | '21. 6. 28. | '21. 7. 7.   | '22. 1. 5.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1. 보조사업 선정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9. 11. 6. 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에 따르면 ①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를 선정 시 공모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월군(△과)에서는 공모절차 없이 드론 방제 테스트베드 운영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선정(○조합)하여 관련 업체들에 대해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 2. 보조금 교부 결정을 위한 조사·검토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7. 9. 25.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및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의 사용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에서는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를 검토하면서 「영월군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서 제시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각종 수당,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인쇄비 등의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강사료 산출 시 식비 중복지급 여부와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해 숙박비, 교통비의 지급이 필요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비를 그대로 인정하여 적정금액 대비 2,296천 원이 추가 집행되어 보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2019년 영월군 학생 드론 교육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절차상 “사업 기간 내 자격증 취득을 완료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정산 후 보조금을 지급” 하겠다고 △과-23530(2019. 5. 1.)호에 명시하였으나, 보조금 교부 시(2019. 5. 27.)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표 2] 보조금 집행기준 조사·검토 부적정 현황

(단위 : 천 원)

| 건 명                    | 신청내역                                                                                                                                                                                                                                                                                                         | 교부액    | 집행액    | 적정액   | 차액    |
|------------------------|--------------------------------------------------------------------------------------------------------------------------------------------------------------------------------------------------------------------------------------------------------------------------------------------------------------|--------|--------|-------|-------|
|                        | 산출기초                                                                                                                                                                                                                                                                                                         |        |        |       |       |
| 2019년 학생 드론 교육서비스 지원사업 | ▶ 인건비(강사료)<br>- 일비 : $230 \times 14\text{일} \times 2\text{명} = 6,440$<br>- 4대보험료 : 260<br>- 식비 : $7 \times 1\text{식} \times 14\text{일} \times 2\text{명} = 196$<br>- 숙박비 : $50 \times 14\text{일} \times 2\text{명} = 1,400$<br>- 교통비 : $50 \times 7\text{회} \times 2\text{명} = 700$<br>▶ 기타비용(식비, 간식비) : 1,100 | 10,096 | 10,096 | 7,800 | 2,296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20. 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0. 3.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sup>74)</sup>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제114호)에 따르면 용역·물품 계약은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여 보조사업이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이행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74) 계약이행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① 수의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②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①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지 않았으며, “드론라이트쇼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성격상 단일사업이며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군집드론 기체 임대료를 [표 3]과 같이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특히 “유인드론 부품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추정가격이 초과<sup>75)</sup>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예정가격<sup>76)</sup>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하한율<sup>77)</sup> 적용 시 최대 20,220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다수 업체에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표 3] 영월군 드론산업 지원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 원)

| 연도   | 계약명<br>(보조사업자)            | 계약금액    | 업체명               | 계약일        | 계약내용          | 계약방법         | 정당계약                               | 최대절감<br>가능금액 |
|------|---------------------------|---------|-------------------|------------|---------------|--------------|------------------------------------|--------------|
|      | 합계                        | 168,500 |                   |            |               |              |                                    | 20,220       |
| 2020 | 군집드론<br>기체 임대료<br>[(사)○처] | 23,100  | 영월드론<br>비행<br>교육원 | '20. 9. 1. | 군집드론<br>기체 임대 | 1인건적<br>분할계약 | 지정정보<br>처리장치<br>이용<br>2인건적<br>수의계약 | 4,620        |
| 2020 | 〃                         | 15,400  | 영월드론<br>비행<br>교육원 | '20. 9. 1. | 군집드론<br>기체 임대 |              |                                    |              |

75) 계약이행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① 수의계약: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76) 해당 사업의 예산액으로 추정

77)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

| 연도   | 계약명<br>(보조사업자)           | 계약금액   | 업체명   | 계약일         | 계약내용         | 계약방법         | 정당계약 | 최대절감<br>가능금액 |
|------|--------------------------|--------|-------|-------------|--------------|--------------|------|--------------|
| 2021 | 유인드론<br>부품구매(1차)<br>(○단) | 40,000 | ○학    | '21. 6. 10. | 유인드론<br>부품구매 | 2인견적<br>수의계약 | "    | 4,800        |
| 2021 | 유인드론<br>부품구매(2차)<br>(○단) | 47,000 | (주)○텀 | '21. 6. 15. | 유인드론<br>부품구매 | 2인견적<br>수의계약 | "    | 5,640        |
| 2021 | 유인드론<br>부품구매(2차)<br>(○단) | 43,000 | ○학    | '21. 7. 6.  | 유인드론<br>부품구매 | 2인견적<br>수의계약 | "    | 5,160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4. 인건비 원천징수에 관한 지도 소홀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에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sup>78)</sup>하여야 하며, 기타 소득금액<sup>79)</sup>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과세최저한<sup>80)</sup>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sup>81)</sup>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sup>82)</sup>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과 동시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78)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과 관련된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79) 기타소득금액이란?

-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80) 기타소득 지급액이 1건당 250천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 200천 원(지급액의 80%)를 제외하면 기타소득 금액이 과세최저한 기준금액인 50천 원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지 아니함

81)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지급액에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

82)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 (2019. 1. 1. 이후) 필요경비(60%)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

\* 총수입금액 125,000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으로 과세최저한에 해당됨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강연료 등을 대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모든 대가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은 보조사업자(○처)가 [표 4]와 같이 총126,195천 원(32건)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임의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한 사항에 대하여 정산 검사 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확정하였다.

[표 5]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부적정 내역

(단위: 원)

| 지출일자       | 지급내역       | 채 주 | 지급액         | 실제<br>원천징수액(a) | 적정<br>원천징수액(b) | 차액<br>(b-a) |
|------------|------------|-----|-------------|----------------|----------------|-------------|
| 합 계        |            | 32건 | 126,195,740 | 4,302,480      | 11,473,250     | 7,170,770   |
| ‘19.10.25  | 드론 교육 강사료  | ○○○ | 8,703,000   | 297,000        | 792,000        | 495,000     |
|            |            | ○○○ | 8,703,000   | 297,000        | 792,000        | 495,000     |
| ‘20.7.13.  | 드론 교육 강사료  | ○○○ | 3,287,800   | 112,200        | 299,200        | 187,000     |
|            |            | ○○○ | 3,674,600   | 125,400        | 334,400        | 209,000     |
|            |            | ○○○ | 1,934,000   | 66,000         | 176,000        | 110,000     |
|            |            | ○○○ | 580,200     | 19,800         | 52,800         | 33,000      |
| ‘20.7.31.  | 드론 교육 강사료  | ○○○ | 580,200     | 19,800         | 52,800         | 33,000      |
|            |            | ○○○ | 386,800     | 13,200         | 35,200         | 22,000      |
| ‘20.8.27.  | 드론 교육 강사료  | ○○○ | 386,800     | 13,200         | 35,200         | 22,000      |
|            |            | ○○○ | 1,160,400   | 39,600         | 105,600        | 66,000      |
| ‘20.11.24. | 드론 교육 강사료  | ○○○ | 1,160,400   | 39,600         | 105,600        | 66,000      |
|            |            | ○○○ | 773,600     | 26,400         | 70,400         | 44,000      |
|            |            | ○○○ | 386,800     | 13,200         | 35,200         | 22,000      |
|            |            | ○○○ | 386,800     | 13,200         | 35,200         | 22,000      |
| ‘20.11.24. | 드론 교육 강사료  | ○○○ | 3,221,100   | 108,900        | 290,400        | 181,500     |
|            |            | ○○○ | 3,221,100   | 108,900        | 290,400        | 181,500     |
|            |            | ○○○ | 3,221,100   | 108,900        | 290,400        | 181,500     |
|            |            | ○○○ | 3,221,100   | 108,900        | 290,400        | 181,500     |
| ‘20.12.30. | 선수단 육성 강사료 | ○○○ | 580,200     | 19,800         | 52,800         | 33,000      |
| ‘21.12.14. | 드론 교육 강사료  | ○○○ | 16,910,896  | 577,104        | 1,538,940      | 961,836     |
|            |            | ○○○ | 16,910,896  | 577,104        | 1,538,940      | 961,836     |
|            |            | ○○○ | 16,910,896  | 577,104        | 1,538,940      | 961,836     |

| 지출일자       | 지급내역       | 채 주 | 지급액       | 실제<br>원천징수액(a) | 적정<br>원천징수액(b) | 차액<br>(b-a) |
|------------|------------|-----|-----------|----------------|----------------|-------------|
|            |            | ○○○ | 1,586,847 | 54,153         | 144,400        | 90,247      |
|            |            | ○○○ | 1,586,847 | 54,153         | 144,400        | 90,247      |
|            |            | ○○○ | 1,586,847 | 54,153         | 144,400        | 90,247      |
| '22.3.4.   | 선수단 육성 강사료 | ○○○ | 1,450,500 | 49,500         | 132,000        | 82,500      |
|            |            | ○○○ | 1,450,500 | 49,500         | 132,000        | 82,500      |
|            |            | ○○○ | 5,802,000 | 198,000        | 528,000        | 330,000     |
|            |            | ○○○ | 5,802,000 | 198,000        | 528,000        | 330,000     |
| '21.12.14. | 드론 교육 강사료  | ○○○ | 3,542,837 | 120,903        | 322,410        | 201,507     |
|            |            | ○○○ | 3,542,837 | 120,903        | 322,410        | 201,507     |
|            |            | ○○○ | 3,542,837 | 120,903        | 322,410        | 201,507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영월군 ♣과(전 △과) 지방○○ AV는 2018. 10. 15.부터 2020. 6. 30.까지, △과 지방○○ AW는 2020. 7. 1.부터 현재까지, ◁과(전 △과) 지방○○ AX는 2018. 10. 15.부터 2020. 12. 31.까지, △과 지방○○ AY는 2021. 1. 1.부터 현재까지 각각 “영월군 드론산업 육성 사업” 담당 및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 절차를 미이행 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법령 등에서 제시한 지급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의 계약 체결 및 원천징수가 부적정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정산 검사·확정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강사료에 포함 지급된 중복 식비 및 부적정하게 지급된 숙박비·교통비 등 2,296천 원을 보조사업자로부터 회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4]

##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 1]과 같이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를 지원 하였다.

[표 1]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천 원)

| 연도   | 사업명<br>(사업내용)    | 보조금 교부액<br>(군비) | 보조금<br>신청일  | 보조금<br>지급결정일 | 정산<br>검사일   |
|------|------------------|-----------------|-------------|--------------|-------------|
| 2019 | 한국농업경영인<br>강원도대회 | 200,000         | '19. 6. 25. | '19. 7. 2.   | '19. 9. 11.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1. 보조금 사업계획서 검토 및 교부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7. 9. 25.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및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의 사용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를 검토하면서 「영월군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서 제시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영월군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식비 기준인 1인 1식 급식단가 8,000원을 적용해 검토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1인 단가 45,000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표 2]와 같이 적정 금액보다 9,250천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표 2] 보조금 집행기준 조사·검토 부적정 현황

(단위 : 천 원)

| 신청내역 |                            | 교부액    | 집행액    | 적정액   | 차액    |
|------|----------------------------|--------|--------|-------|-------|
| 건 명  | 산출기초                       |        |        |       |       |
| ○ 만찬 | - 45천 원 × 250명 = 11,250천 원 | 11,250 | 11,250 | 2,000 | 9,250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9. 5. 28. 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7. 9. 25.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sup>83)</sup>하도록 한 경비에

83) 계약이행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① 수의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②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8. 7. 9. 행정안전부 예규 제 39호)에 따르면, 용역·물품 계약은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여 보조사업이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이행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지 않았으며,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성격상 단일사업이고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행사대행 계약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표 3]과 보조사업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분할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예정가격<sup>84)</sup>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하한율<sup>85)</sup> 적용 시 최대 13,352천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다수 업체에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84) 해당 사업의 예산액으로 추정

85)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

[표 3]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 원)

| 계약명                               | 업체명        | 계약일         | 계약내용                 | 계약금액    | 계약방법         | 정당계약                            | 최대절감<br>가능금액 |
|-----------------------------------|------------|-------------|----------------------|---------|--------------|---------------------------------|--------------|
| 합계                                |            |             |                      | 111,266 |              |                                 | 13,352       |
| 행사대행 계약                           | (주)○원      | '19. 7. 8.  | 피복비 등                | 53,000  | 1인견적<br>분할계약 | 지정정보<br>처리장치 이용<br>2인견적<br>수의계약 | 10,032       |
| 행사대행 계약                           | 주식회사<br>○선 | '19. 7. 8.  | 리셉션, 무대설치            | 11,000  | 1인견적<br>분할계약 | 지정정보<br>처리장치 이용<br>2인견적<br>수의계약 |              |
| 행사대행 계약                           | ○선         | '19. 7. 8.  | 리셉션, 의자,<br>테이블 등 임대 | 19,596  | 1인견적<br>분할계약 | 지정정보<br>처리장치 이용<br>2인견적<br>수의계약 |              |
| 제15회 한국농업<br>경영인 강원도대<br>회 홍보물 제작 | ○인         | '19. 7. 5.  | 현수막게시<br>초대장 제작 등    | 19,400  | 1인견적<br>분할계약 | 지정정보<br>처리장치 이용<br>2인견적<br>수의계약 | 3,320        |
| 종합안내 표지 구<br>조물 외                 | ○획         | '19. 7. 10. | 안내 표지판,<br>명찰 제작 등   | 8,270   | 1인견적<br>분할계약 | 지정정보<br>처리장치 이용<br>2인견적<br>수의계약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보조금 정산검토 소홀

사업 정산 시 따라야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7. 9. 25.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서는 보조금 지출의 경우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임차비 등은 지출결의서를 반드시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률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등을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심사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 시 단 1건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주의]**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5]

##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다.

[표 1] 노사민정협의회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천 원)

| 연도   | 사업명<br>(사업내용)                               | 보조금 교부액 |        |        | 보조금<br>신청일  | 보조금<br>지급결정일                               | 정산<br>검사일   |
|------|---------------------------------------------|---------|--------|--------|-------------|--------------------------------------------|-------------|
|      |                                             | 합계      | 국비     | 군비     |             |                                            |             |
| 2019 | 노사민정 협력활성화<br>(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및 공동선언<br>결의대회 등) | 18,250  | 10,080 | 8,170  | '19. 3. 27. | '19. 3. 28.<br>'19. 5. 18.                 | '20. 1. 21. |
| 2020 | 노사민정 협력활성화<br>(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및 공동선언<br>결의대회 등) | 23,734  | 11,614 | 12,120 | '20. 2. 12. | '20. 2. 17.<br>'20. 5. 25.<br>'20. 12. 28. | '21. 2. 17. |
| 2021 | 노사민정 협력활성화<br>(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및 공동선언<br>결의대회 등) | 24,158  | 10,000 | 14,158 | '21. 6. 4.  | '21. 6. 8.                                 | '22. 2. 15.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검토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제174호)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sup>86)</sup>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의해 보조사업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부)가 보조사업 변경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도 영월군(△과)에서는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조사·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노사민정협의회 사업계획 임의 변경 사용내역

(단위: 천 원)

| 당초사업계획                         | 임의 변경 사용내역                                                                    | 지출일자       | 집행금액  | 보조사업<br>변경계획<br>제출여부 |
|--------------------------------|-------------------------------------------------------------------------------|------------|-------|----------------------|
|                                | 합 계                                                                           |            | 8,808 |                      |
| ‘20년 공동선언<br>결의대회 개최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기 지출된 단체복 및<br>홍보물품을 영월 관내 공공기관 및 공동선언<br>결의대회 참석 예정 사업장에 전달 | ‘20.11.21. | 4,820 | X                    |
| ‘21년 중대재해<br>사전예방사업장<br>홍보 캠페인 | 중대재해 사전예방 워크숍으로 변경<br>(숙박비 등 지출)                                              | 21.11.3.   | 3,988 | X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86) 가.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나.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2. 강사비 원천징수 미이행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에 따르면,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sup>87)</sup>하여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전별로 5만 원 이하인 과세최저한도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45조,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sup>88)</sup>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sup>89)</sup>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과 동시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강연료 등을 대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모든 대가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하도록 지도·감독 했어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3]과 같이 ○○○ 외 2명에게 원고료를 대가로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총 79,200원(소득세 72,000원, 지방소득세 7,20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

87)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88)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지급액에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

89)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

- 2019. 1. 1. 이후 : 필요경비(60%)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

\* 총수입금액 125,000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으로 과세최저한에 해당됨

[표 3] 기타소득(강사비)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내역

(단위: 원)

| 지출일자        | 적 요                                           | 채 주 | 지출액     | 원천징수 세액 |        |       |
|-------------|-----------------------------------------------|-----|---------|---------|--------|-------|
|             |                                               |     |         | 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총 계         | 3건                                            |     | 900,000 | 79,200  | 72,000 | 7,200 |
| '21. 11. 9. |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관한 현재 시행<br>사안 및 쌍용 C&E 관련 사례 강의   | ○○○ | 300,000 | 26,400  | 24,000 | 2,400 |
| '21. 11. 9. |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관한 현재 시행<br>사안 및 한일 현대시멘트 관련 사례 강의 | ○○○ | 300,000 | 26,400  | 24,000 | 2,400 |
| '21. 11. 9.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                                 | ○○○ | 300,000 | 26,400  | 24,000 | 2,400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사업 정산 시 따라야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7. 9. 25.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서는 보조금 지출의 경우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비 식비·임차비 등은 지출결의서를 반드시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률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등을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심사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 시 단 1건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정산확정 사항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주의]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6]

# 강 원 도

## 시정 요구

제 목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사회 단체 공익활동”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을 지원 하였다.

[표 1] 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천 원)

| 연도   | 사업명(사업내용)                | 보조금 교부액 |        |         |       | 보조금 신청일     | 보조금 지급결정일   | 정산 검사일       |
|------|--------------------------|---------|--------|---------|-------|-------------|-------------|--------------|
|      |                          | 합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              |
|      | 합계                       | 148,500 | 30,000 | 110,000 | 8,500 |             |             |              |
| 2021 | ○회 순찰차량구입<br>(차량구입 2대)   | 64,000  | -      | 60,000  | 4,000 | '21. 1. 25. | '21. 1. 26. | '21. 3. 16.  |
| 2021 | 영월군 ○대<br>직무경진대회(직무경진대회) | 24,500  | -      | 20,000  | 4,500 | '21. 11. 1. | '21. 11. 4. | '21. 12. 15. |
| 2021 | 영월군 ○대<br>차량구입(차량구입 3대)  | 60,000  | 30,000 | 30,000  |       | '21. 5. 24. | '21. 5. 27. | '21. 7. 30.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1.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20. 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0. 3.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sup>90)</sup>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제114호)에 따르면 용역·물품 계약은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여 보조사업이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이행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성격상 단일사업이며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순찰차량 구입을 [표 3]과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90) 계약이행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① 수의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②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있는 추정가격이 초과<sup>91)</sup>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예정가격<sup>92)</sup>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하한율<sup>93)</sup> 적용 시 최대 13,763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다수 업체에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표 2] 사회단체 차량구입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 원)

| 연도   | 계약명<br>(보조사업자)                 | 계약금액    | 업체명 | 계약일        | 계약내용    | 계약방법         | 정당계약                               | 최대절감<br>가능금액 |
|------|--------------------------------|---------|-----|------------|---------|--------------|------------------------------------|--------------|
|      | 합계                             | 114,697 |     |            |         |              |                                    | 13,763       |
| 2021 | 2021년 영월군<br>○회 순찰차량구입<br>(○회) | 27,320  | ○차  | 21. 2. 27. | 스타렉스 1대 | 1인견적<br>수의계약 | 지정정보<br>처리장치<br>이용<br>2인견적<br>수의계약 | 6,556        |
|      |                                | 27,320  | ○차  | 21. 2. 27. | 스타렉스 1대 | 1인견적<br>수의계약 |                                    |              |
| 2021 | 22021년 영월군 ○대<br>차량구입(○대)      | 20,019  | ○차  | 21. 1. 18. | 아반떼 1대  | 1인견적<br>수의계약 |                                    | 7,207        |
|      |                                | 20,019  | ○차  | 21. 1. 18. | 아반떼 1대  | 1인견적<br>수의계약 |                                    |              |
|      |                                | 20,019  | ○차  | 21. 1. 18. | 아반떼 1대  | 1인견적<br>수의계약 |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자부담금 예치 미확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0. 3.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의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91) 계약이행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① 수의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92) 해당 사업의 예산액으로 추정

93)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sup>94)</sup>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하기전에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면서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2021년 ○대 직무경진대회 지원” 및 “2021년 ○회 순찰차량구입” 사업의 자부담금 예치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 3.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사업 정산 시 따라야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0. 3.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서는 보조금 지출의 경우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임차비 등은 지출결의서를 반드시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률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등을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 하도록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2021년 ○대 직무경진대회 지원” 사업의 보조

---

94)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심사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 시 단 1건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정산 확정 사항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 4. 중요재산 관리 소홀

「지방재정법」(2020. 4. 30. 시행) 제60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0. 3.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sup>95)</sup>에 대해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자본형성이 교부 목적인 보조사업들에 대해 사업목적물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3]과 같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된 목적물인 자본 성격의 장비들에 대해 감사일 현재(2022. 6. 24.)까지 내역에 대한 공시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기록 등을 보고받지 않는 등 중요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95)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표 3] 중요재산 관리 및 공시 현황

(단위: 천 원)

| 사업명                     | 중요재산 목록 | 보조사업자<br>(대표자) | 취득가액    | 중요재산<br>관리 여부 | 공시<br>여부 |
|-------------------------|---------|----------------|---------|---------------|----------|
|                         | 합계      |                | 114,697 |               |          |
| 2021년 영월군 ○대 순찰<br>차량구입 | 일반승용차   | 영월군○회<br>(○○○) | 27,320  | ×             | ×        |
| "                       | 일반승용차   | "              | 27,320  | ×             | ×        |
| 2021년 영월군 ○대<br>차량구입    | 일반승용차   | 영월군○대<br>(○○○) | 20,019  | ×             | ×        |
| "                       | 일반승용차   | "              | 20,019  | ×             | ×        |
| "                       | 일반승용차   | "              | 20,019  | ×             |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시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공시 이행 등 중요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7]

# 강 원 도

## 시정 요구

제 목 불법 전용농지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 내지 제59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월군(<과)에서는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상회복에 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 농지로 회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와 같이 불법 농지전용 16필지(13,625㎡)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명령, 고발 등의 조치 이후 농지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추가 고발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농지전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불법 농지전용 미복구지 현황

| 연도   | 불법현황        |                                                   |          |                          | 원상회복명령                   |                          |             | 고발일       | 원상회복 완료일  | 현재 상태 |
|------|-------------|---------------------------------------------------|----------|--------------------------|--------------------------|--------------------------|-------------|-----------|-----------|-------|
|      | 행위자         | 소재지                                               | 불법면적 (㎡) | 불법내용                     | 1차명령 (회복기한)              | 2차명령 (회복기한)              | 3차명령 (회복기한) |           |           |       |
| 합계   | 10명         | 16필지                                              | 13,625   |                          |                          |                          |             |           |           |       |
| 2020 | ○○○         | ○읍<br>○리<br>○-○                                   | 96       | 불법건축물                    | 20.2.20.<br>(20.04.03.)  | 20.4.8.<br>(20.5.8.)     | -           | 20.6.5.   | 미완료       | 미완료   |
| 2020 | ○○○         | ○면<br>○리 ○                                        | 892      | 불법건축물,<br>잡석도포           | 20.2.27.<br>(20.4.17.)   | -                        | -           | 20.7.8.   | 미완료       | 미완료   |
| 2020 | ○○○         | ○면<br>○리 ○-○                                      | 255      | 판넬 적치                    | 20.4.28.<br>(20.5.27.)   | -                        | -           | -         | 20.8.13.  | 미완료   |
| 2020 | ○○○         | ○면<br>○리 ○                                        | 42       | 불법창고                     | 20.5.18.<br>(20.6.19.)   | 20.6.29.<br>(20.07.31.)  | -           | 20.8.18.  | 미완료       | 미완료   |
| 2020 | ○○○,<br>○○○ | ○읍 ○리<br>○-○                                      | 160      | 잡석도포,<br>불법건축물           | 20.1.28.<br>(20.2.28.)   | 20.3.4.<br>(20.4.3.)     | -           | 20.5.6.   | 미완료       | 미완료   |
| 2020 | ○○○         | ○면 ○리<br>○-○, ○,<br>○-○, ○-○,<br>○-○, ○-○,<br>○-○ | 4,868    | 골재파쇄장<br>이용              | 20.07.17.<br>(20.08.21.) | 20.10.12.<br>(20.11.13.) | -           | -         | 20.11.17. | 미완료   |
| 2020 | ○○○,<br>○○○ | ○면<br>○리 ○,<br>○-○, ○-○                           | 7,124    | 불법농막,<br>공작물,<br>토굴 등 설치 | 20.6.4.<br>(20.6.18.)    | -                        | -           | 20.7.16.  | 21.4.14.  | 미완료   |
| 2021 | ○○○         | ○면<br>○리<br>○                                     | 188      | 농막증축,<br>정자설치,<br>잔디식재   | 21.7.12.<br>(21.8.13.)   | 21.8.18.<br>(21.9.24.)   | -           | 21.11.24. | 미완료       | 미완료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시정] 불법 전용 농지를 빠른 시일 내 농지로 원상회복 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 이행할 시 고발, 대집행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해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8]

# 강 원 도

##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강변저류지 정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영월 강변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자원 가치 고도화 등 영서 내륙권 핵심 도시로서의 브랜드화를 위해 강변저류지 일원 정원조성과 관련된 용역을 [표 1]과 같이 시행한 바 있다.

[표 1] 용역개요

(단위: 천원)

| 용역명                                  | 용역 및 사업물량                      | 계약금액    | 계약일자       | 용역 및 사업기간                   | 계약상대자<br>(대표)    |
|--------------------------------------|--------------------------------|---------|------------|-----------------------------|------------------|
| 강변저류지 정원조성사업<br>기본계획 및 타당성평가 용역      | 기본계획 및 타당성평가<br>용역 1식          | 87,930  | 2018.12.27 | 2018.12.27. ~<br>2019.06.25 | (재)○원<br>(○○○)   |
| 동서강 정원조성 기본,<br>실시설계 및 정원디자인<br>개발용역 | 영월저류지2구간 정원설계<br>및 정원디자인 개발 1식 | 478,500 | 2020.06.11 | 2020.06.11.<br>~2021.12.18  | 주식회사 ○인<br>(주)○사 |

### [주요 추진경과]

- 강변저류지 정원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과-689호) : '18.10.31.
- 강변저류지 정원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평가 용역 추진 : '18.12.27. ~ '19.6.25.
  - (계약자) (재)○원, (계약금액) 87,930천 원
- 지방재정 투자심사(㉡실-13339호) : '19.11.6.
- 동·서강 정원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 및 정원디자인 개발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21.
  - 과업계획(안): (용역비) 521,750천 원,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기본·실시설계 및 정원디자인 개발용역 제안서 평가 : '20.5.15.
- 동서강 정원조성 기본, 실시설계 및 정원디자인 개발용역 추진 : '20.6.11.~'21.12.18.
  - (계약자) (주)○인 외 1, (계약금액) 478,500천 원,
- 영월 동서강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 '21.4.30.

## 1. 정원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부적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수목원·정원법’)」 제2조에 따르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 등으로 나뉜다.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3에 따라 산림청장은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면적, 식물·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원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sup>96)</sup>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따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정원은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정원 기준

| 구 분  | 시설의 기준                                                                                                           |
|------|------------------------------------------------------------------------------------------------------------------|
| 국가정원 | 1) 정원의 총면적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br>2)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및 조성녹지를 포함한 녹지의 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일 것<br>3)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된 정원을 5개 이상 포함할 것 |
| 지방정원 | 1) 정원의 총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br>2)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별표 1의 2

한편,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르면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은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의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정원

96) (지방정원 지원조건) 국비50%, 도비15%, 군비35% / 사업기간 4년(설계1, 시공3), / 기준사업비 60억 원 이하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정원은 등록한 날부터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을 갖추 수 있다.

**[표 3] 지방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기준(산림청 고시)**

| 평가영역                       | 비중(%) | 평 가 지 표                  | 배점(가점) | 비고    |
|----------------------------|-------|--------------------------|--------|-------|
| 정원의<br>역사성·<br>특수성         | 20    | 가. 정원의 지역성·향토성           | 5      | 정성    |
|                            |       | 나. 정원 조성의 충실도            | 5      | 정량+정성 |
|                            |       | 다. 주변 자연자원과의 조화          | 3      | 정성    |
|                            |       | 라. 정원으로서의 접근성            | 3      | 정량    |
|                            |       | 마. 정원 브랜드 인지도            | 4(+2)  | 정량+정성 |
| 정원의 조성 및<br>관리상태의<br>적정성   | 35    | 가. 정원의 운영·관리상태           | 8      | 정량+정성 |
|                            |       | 나. 식물의 종 구성              | 6(+1)  | 정량+정성 |
|                            |       | 다. 전담조직 편성               | 5      | 정량    |
|                            |       | 라. 정원 관리인력 규모            | 6(+1)  | 정량    |
|                            |       | 마. 정원 운영·관리에산 규모         | 5      | 정량    |
|                            |       | 바. 이용자 만족도               | 5(+1)  | 정성    |
| 시설물의<br>안전·위생관리<br>상태의 적정성 | 15    | 가.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     | 5      | 정성    |
|                            |       | 나. 시설별 위생·관리상태           | 5      | 정성    |
|                            |       | 다. 이용자 만족도               | 5      | 정성    |
| 정원의 활용도                    | 30    | 가. 정원문화·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 | 5      | 정량+정성 |
|                            |       | 나. 이용자 추이                | 5      | 정량    |
|                            |       | 다. 정원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5      | 정량    |
|                            |       | 라. 지역연계 협력사업 시행          | 6      | 정량+정성 |
|                            |       | 마. 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분석   | 4      | 정량    |
|                            |       | 바. 이용자 만족도               | 5(+1)  | 정성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원 지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며 그 세부 절차는 [표 4]와 같으며,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운영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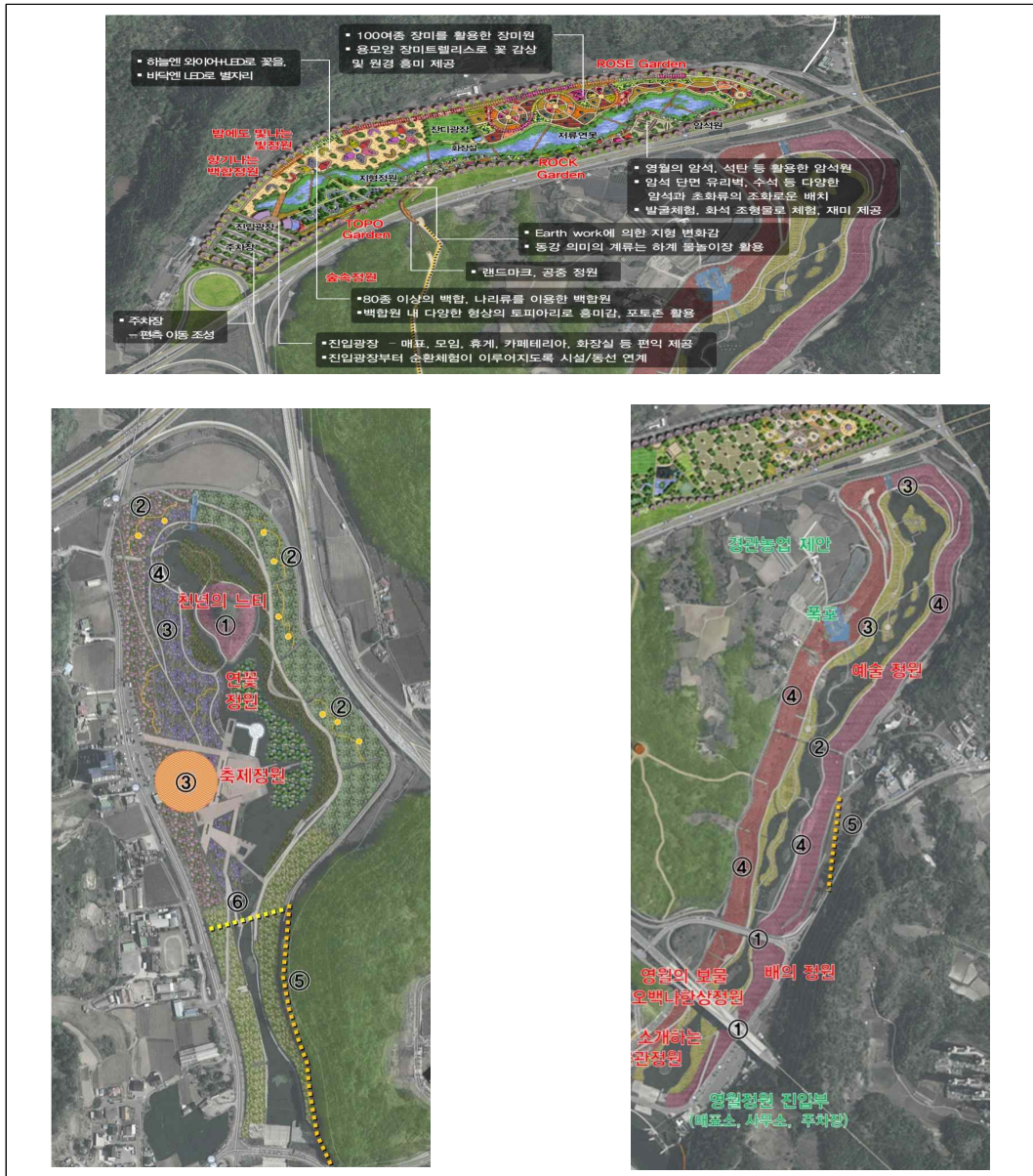
[표 4] 지방정원 조성절차

| 주체   | 절차                 | 주요 내용                                                                                        | 비고      |
|------|--------------------|----------------------------------------------------------------------------------------------|---------|
| 시·군  |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요청 | • 지적목적, 사업개요, 위치, 면적 등을 포함한 조성예정지 지정계획서 제출                                                   |         |
| ↓    |                    |                                                                                              |         |
| 산림청  |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      | • (절차) 서류심사 → 현지실사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승인<br>• (검토) 지정필요성, 면적 및 입지여건 적정성, 지번·지목별 내역 등 타당성 검토 |         |
| ↓    |                    |                                                                                              |         |
| 시·군  | 지방정원 예산 신청         | • 사업개요, 위치, 면적, 예산 필요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         |
| ↓    |                    |                                                                                              |         |
| 도    | 지방정원 조사            | • 대상지 위치, 예산 산출 근거, 사업내용 적합성, 지자체 의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시군별 사업 순위 결정(산림소득과)                     |         |
| ↓    |                    |                                                                                              |         |
| 도    | 예산확정               | • 사업 취지, 예산적합성 등 고려하여 사업 예산 확정(예산과)                                                          |         |
| ↓    |                    |                                                                                              |         |
| 도    | 예산통보               | • 시군 확정 예산 통보(산림소득과)                                                                         |         |
| ↓    |                    |                                                                                              |         |
| 시군   | 지방정원 조성            | • (조성기간) 1년 설계, 3년 조성                                                                        |         |
| ↓    |                    |                                                                                              |         |
| 도·시군 | 지방정원 등록·운영         | • 등록권한 : 시·도지사 / 해당 시군에서 운영                                                                  | 도비지원 없음 |

※ 강원도(㉠과) 자료 참조

한편, 영월군(㉠과)에서 수립한 「강변저류지 정원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평가 용역」의 보고서를 보면 과업의 주요 목표는 강변저류지를 지방정원과 연계하여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구간별 기본계획을 [표 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5] 저류지 정원 구간별 기본계획



또한, 강변 저류지 정원 조성사업은 총 19,5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관리운영비는 매년 인건비, 경상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4,514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사례조사를 통해 순천만 국가정원은 매년 평균 11,315백만 원의 운영비용이 투입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당초 목표로 했던 것과 같이 강변 저류지를 포함한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지방정원 예비 지정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설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변경) 절차를 거쳐 지방정원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반드시 선행 했어야 하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 지방정원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생략한 채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sup>97)</sup> 역시 영월군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영월군 자체 심의를 받는 등 그간의 정황을 보면 본 사업은 영월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방정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사업비 보조 혜택의 기회 상실은 물론, 국가정원이 되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지 관리비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2. 기본·실시설계 및 정원 디자인개발 용역 감독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관련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역감독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각 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구조형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등을 통하여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하여 용역과업이 경제적이고 용역 과업 목적에

97) 국도비 보조사업: (시군 자체심사) 20~60억 원, (도 심사) 60~200억 원

※ 시군 자체사업은 시군 자체심사 대상

적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 29조에 따르면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감독자는 용역착수전 설계자로부터 세부시행계획서, 작업계획서, 기술제안서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설계 진행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영월군(㉠과)은 동·서강 정원조성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sup>98)</sup>을 수립하면서 계약의 방법은 [표 6]과 같이 발주 방법별 장단점의 비교 검토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채택한 바 있으며

[표 6] 용역 방법별 비교 검토

| 구 분         | 예상용역비      | 장 점                                         | 단 점                                              |
|-------------|------------|---------------------------------------------|--------------------------------------------------|
| 협상에 의한 계약   | 496,000천 원 | 다수의 제안서 중 적합한 안 선정, 정원조성의 새로운 방향 검토 가능      | 용역업체 선정에 장기간 소요 (최소5~6개월)되고 일반입찰 대비 용역비 큼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496,000천 원 | 참여 기술자의 사업 수행실적 검토(회사규모, 기술능력 실적) 안정된 용역 추진 | 기간 및 설계용역 비용 지출이 크고, 설계 창의성 분야 가늠하기 어려움          |
| 일반입찰        | 199,000천 원 | 신속한 용역업체 선정(2개월 미만)으로 용역기간 절약               | 적격심사로 용역업체 선정능력 미달업체 선정 시 기본구상 외 새로운 안을 기대하기 어려움 |

동·서강 정원조성 기본, 실시설계 및 정원디자인개발용역(이하 ‘실시설계’)의

98) (관련문서) ㉠과-312호(2020.1.7.)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의 목적으로 강변저류지 일원에 주제정원 5개소 이상 조성하고 장릉, 청령포와 연계하여 지방정원 조성 후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구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영월군(㉠과)에서 작성한 협상의 의한 계약 정성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안요청서에도 강변 저류지의 구간별 설계 중점사항을 [표 7]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표 7] 제안요청서 저류지 구간별 설계 중점사항



| 구 분 | 면적(㎡)   | 현재 현황 및 주변 시설                                       | 설계 포인트                                            |
|-----|---------|-----------------------------------------------------|---------------------------------------------------|
| 1구간 | 137,104 | 느티나무언덕, 광장, 저류지 계수나무가로수 170본 식재                     | 사면을 이용한 정원주제 2개소 이상 제시, 광장 및 저류지 이용방안             |
| 2구간 | 144,234 | 주차장, 화장실 및 수목(B6~12) 150여본 생육                       | 정원조성 핵심 장소로 주제정원 3개소 이상 제시, 일부구간 공연이 가능한 정원으로 구상. |
| 3구간 | 335,094 | 연꽃식재, 사면정비 추진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530본식재 청령포 주차장, 자전거 대여소. | 청령포 주차장이 있는 구간으로 청령포 방문 관광객 연계, 활성화 방안구상          |

또한, 최종 낙찰업체의 당초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살펴보면 강변 저류지 1구간 및 2구간에 주제정원 6개를 조성하는데 7,693백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상세한 사업의 공간계획(마스터플랜)은 [표 8]과 같이

[ 표 8 ] 낙찰업체의 제안 공간계획

**6. 공간 계획**

**6.1 마스터플랜**

**주요시설**

- ① 종합경기장
- ② 축구경기장
- ③ 야구경기장
- ④ 농구경기장
- ⑤ 배구경기장
- ⑥ 유도경기장
- ⑦ 씨름경기장
- ⑧ 권투경기장
- ⑨ 태권도경기장
- ⑩ 유도경기장
- ⑪ 씨름경기장
- ⑫ 권투경기장
- ⑬ 태권도경기장
- ⑭ 유도경기장
- ⑮ 씨름경기장
- ⑯ 권투경기장
- ⑰ 태권도경기장
- ⑱ 유도경기장
- ⑲ 씨름경기장
- ⑳ 권투경기장
- ㉑ 태권도경기장
- ㉒ 유도경기장
- ㉓ 씨름경기장
- ㉔ 권투경기장
- ㉕ 태권도경기장
- ㉖ 유도경기장
- ㉗ 씨름경기장
- ㉘ 권투경기장
- ㉙ 태권도경기장
- ㉚ 유도경기장
- ㉛ 씨름경기장
- ㉜ 권투경기장
- ㉝ 태권도경기장
- ㉞ 유도경기장
- ㉟ 씨름경기장
- ㊱ 권투경기장
- ㊲ 태권도경기장
- ㊳ 유도경기장
- ㊴ 씨름경기장
- ㊵ 권투경기장
- ㊶ 태권도경기장
- ㊷ 유도경기장
- ㊸ 씨름경기장
- ㊹ 권투경기장
- ㊺ 태권도경기장
- ㊻ 유도경기장
- ㊼ 씨름경기장
- ㊽ 권투경기장
- ㊾ 태권도경기장
- ㊿ 유도경기장

**주요시설 주변 시설**

- ① 주차장
- ② 화장실
- ③ 편의점
- ④ 카페
- ⑤ 식당
- ⑥ 호텔
- ⑦ 아파트
- ⑧ 도로
- ⑨ 철도
- ⑩ 버스정류장
- ⑪ 지하철역
- ⑫ 공원
- ⑬ 강
- ⑭ 산
- ⑮ 마을
- ⑯ 학교
- ⑰ 병원
- ⑱ 경찰서
- ⑲ 소방서
- ⑳ 관공서
- ㉑ 시청
- ㉒ 시청
- ㉓ 시청
- ㉔ 시청
- ㉕ 시청
- ㉖ 시청
- ㉗ 시청
- ㉘ 시청
- ㉙ 시청
- ㉚ 시청
- ㉛ 시청
- ㉜ 시청
- ㉝ 시청
- ㉞ 시청
- ㉟ 시청
- ㊱ 시청
- ㊲ 시청
- ㊳ 시청
- ㊴ 시청
- ㊵ 시청
- ㊶ 시청
- ㊷ 시청
- ㊸ 시청
- ㊹ 시청
- ㊺ 시청
- ㊻ 시청
- ㊼ 시청
- ㊽ 시청
- ㊾ 시청
- ㊿ 시청

**기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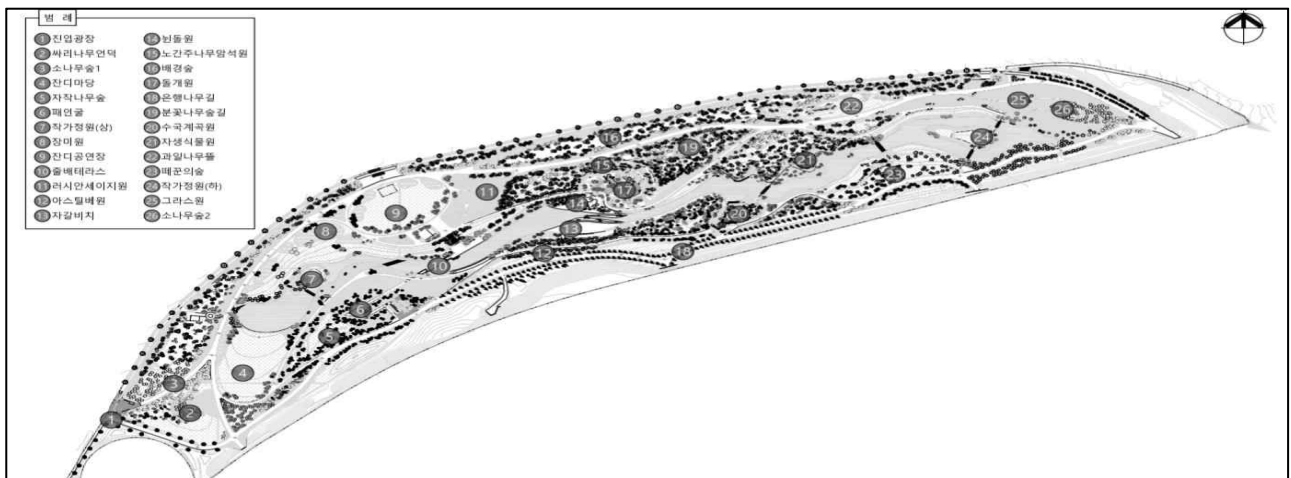
- ① 주차장
- ② 화장실
- ③ 편의점
- ④ 카페
- ⑤ 식당
- ⑥ 호텔
- ⑦ 아파트
- ⑧ 도로
- ⑨ 철도
- ⑩ 버스정류장
- ⑪ 지하철역
- ⑫ 공원
- ⑬ 강
- ⑭ 산
- ⑮ 마을
- ⑯ 학교
- ⑰ 병원
- ⑱ 경찰서
- ⑲ 소방서
- ⑳ 관공서
- ㉑ 시청
- ㉒ 시청
- ㉓ 시청
- ㉔ 시청
- ㉕ 시청
- ㉖ 시청
- ㉗ 시청
- ㉘ 시청
- ㉙ 시청
- ㉚ 시청
- ㉛ 시청
- ㉜ 시청
- ㉝ 시청
- ㉞ 시청
- ㉟ 시청
- ㊱ 시청
- ㊲ 시청
- ㊳ 시청
- ㊴ 시청
- ㊵ 시청
- ㊶ 시청
- ㊷ 시청
- ㊸ 시청
- ㊹ 시청
- ㊺ 시청
- ㊻ 시청
- ㊼ 시청
- ㊽ 시청
- ㊾ 시청
- ㊿ 시청

**주요시설 주변 시설**

- ① 주차장
- ② 화장실
- ③ 편의점
- ④ 카페
- ⑤ 식당
- ⑥ 호텔
- ⑦ 아파트
- ⑧ 도로
- ⑨ 철도
- ⑩ 버스정류장
- ⑪ 지하철역
- ⑫ 공원
- ⑬ 강
- ⑭ 산
- ⑮ 마을
- ⑯ 학교
- ⑰ 병원
- ⑱ 경찰서
- ⑲ 소방서
- ⑳ 관공서
- ㉑ 시청
- ㉒ 시청
- ㉓ 시청
- ㉔ 시청
- ㉕ 시청
- ㉖ 시청
- ㉗ 시청
- ㉘ 시청
- ㉙ 시청
- ㉚ 시청
- ㉛ 시청
- ㉜ 시청
- ㉝ 시청
- ㉞ 시청
- ㉟ 시청
- ㊱ 시청
- ㊲ 시청
- ㊳ 시청
- ㊴ 시청
- ㊵ 시청
- ㊶ 시청
- ㊷ 시청
- ㊸ 시청
- ㊹ 시청
- ㊺ 시청
- ㊻ 시청
- ㊼ 시청
- ㊽ 시청
- ㊾ 시청
- ㊿ 시청

0 50 100 200 M

**[표 8] 실시설계용역 준공 종합계획도**



이에, 지방○○ ○○○은 '18. 10. 15. ~ '21. 12. 31.까지 ㉠과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동·서강 정원조성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과정에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중 업체에서 제안한 제안서의 공간계획 일부를 누락하는 등 실시설계용역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바 있으며,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지방정원 지정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도비 예산확보 기회를 일실하는 등 사업의 인허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강원도 감사규칙」제29조 제2항에 따른 훈계사유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강변저류지는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지방정원 지정 절차 이행 등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유사한 사업 추진 및 인허가 업무 시 관련 법령, 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9]

# 강 원 도

## 시장·주의 요구

제 목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 기반의 체류형 테마 관광지 조성을 위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백만원)

| 용역명                            | 용역개요                         | 계약금액  | 계약일자      | 사업기간                    | 계약상대자(대표)            |
|--------------------------------|------------------------------|-------|-----------|-------------------------|----------------------|
|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진입 도로개설 (도로=1,320m, 교량=360m) | 353   | 18.10.17. | 2018.10.22~2021.02.18.  | (주)○씨, (주)○신 (○○○)   |
|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교량구간) 공사        | 도로개설 430m (교량 360m)          | 6,766 | 21.10.08. | 2021.10.18.~2023.10.29. | (합)○설 (○○○)          |
|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교량구간)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 1,587 | 21.12.17. | 2021.12.20~2024.04.07.  | (주)○링 ○소 외 2개사 (○○○) |

### 1. 건설공사 감독업무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설계변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원가계산 작성 시 부당하게 감액되거나 과다 계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 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역감독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각 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구조형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등을 통하여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하여 용역과업이 경제적이고 용역 과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공사용 가교 940,000천 원, 교량점검시설 185,090천 원, 교명주 및 준공표지석 22,400천원 등 총 1,147,49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과다 계상된 공종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감액하여야 함에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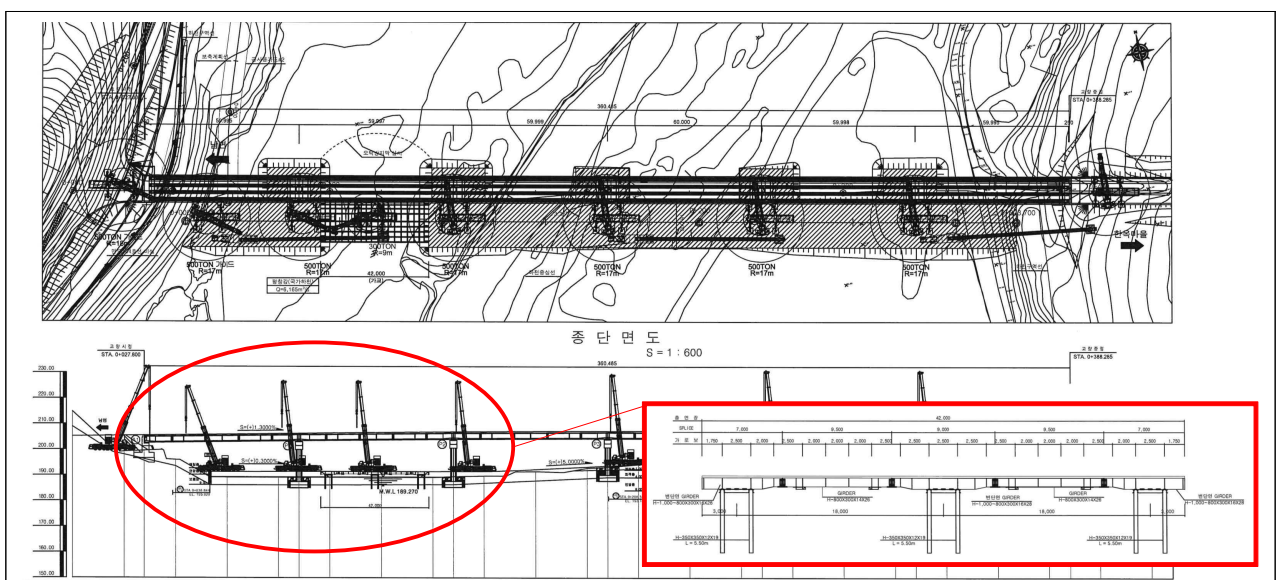
## ① 공사용 가교 반영 부적절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제5편 하천기타시설에 따르면 하천유수구간에 설치하는 공사용 가도의 계획고 선정은 {평수위 또는 상시수위+여유고(0.5m)} 기준으로 하며, 제7편 부대시설에서 공사용 가도는 공사기간, 하천특성 및 홍수기 유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및 철거 계획, 횡수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완료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치 폭·높이는 하도의 유수소통, 가물막이 공용사용 여부, 공사용 운송장비 종류와 교행, 회전 등의 작업여건, 기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하천 횡단시 퇴적, 유지관리, 가도높이 등을 고려하여 유수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크기의 가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천의 평수위에 해당하는 유량이 통과될 수 있도록 수위검토를 실시하여 가배수관의 직경 및 소요 개수를 산정 후 계획토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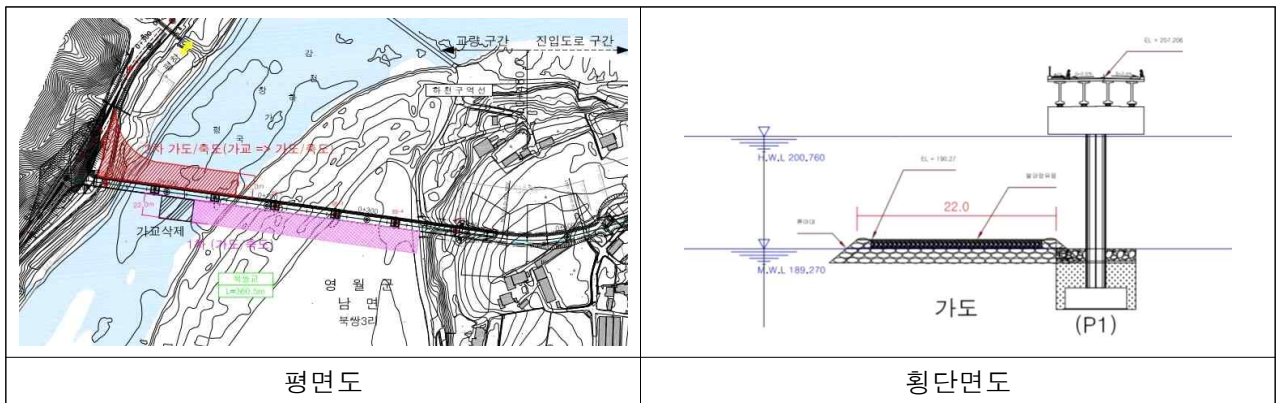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교량의 상부 거더 거치 및 하부 기초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교를 [표 2]와 같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표 2] 공사용 가교 설계반영 현황



현지 확인 결과 톤마대를 활용한 공사용 가도를 [표 3]과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표 4] 공사용 가도 조정 내역과 같이 940백만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고 있다.

[표 3] 공사용 가도 대체방안



[표 4] 공사용 가도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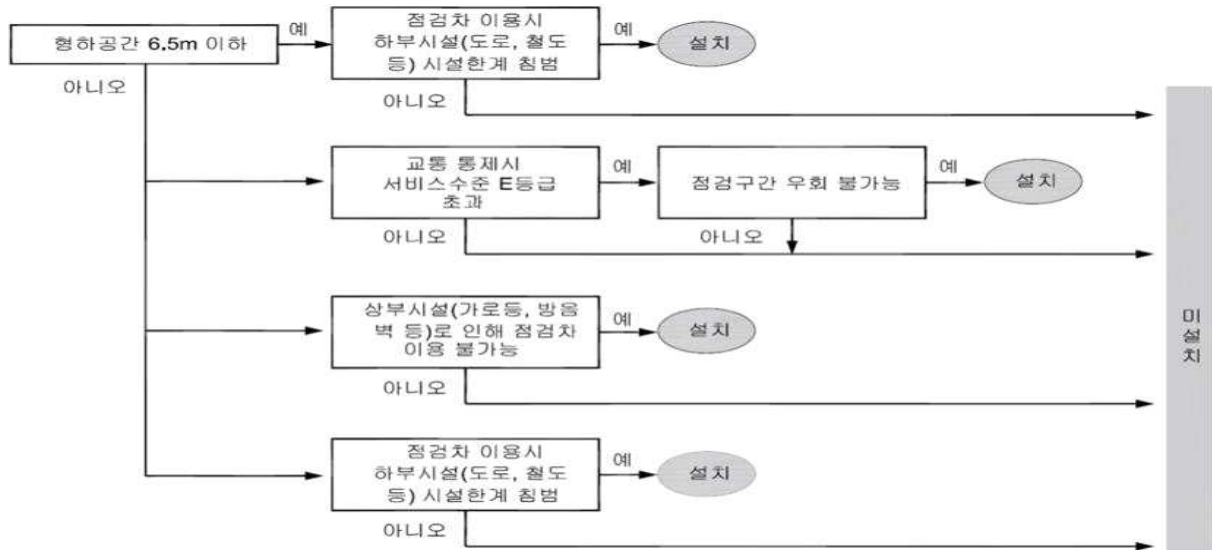
| 구 분    | 당초(현재내역)<A> |    |                 | 변경(조정내역)<B> |    |                 | 증/△감<B-A> |                 |
|--------|-------------|----|-----------------|-------------|----|-----------------|-----------|-----------------|
|        | 규격          | 수량 | 사업비<br>(제경비 포함) | 규격          | 수량 | 사업비<br>(제경비 포함) | 수량        | 사업비<br>(제경비 포함) |
| 공사용 가도 | 식           | 1  | 1,130,000       | 식           | 1  | 190,000         | -         | △940,000        |

## ② 교량점검시설 반영 부적정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2013. 9., 국토교통부)」 2.3에 따르면 교량 하부구조 점검통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량의 형하고, 상·하부시설, 교통량 등의 조건에 따른 아래 [그림 1] “교량 점검통로 설치 의사결정 흐름도”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형하고<sup>99)</sup> 6.5m 이상 교량인 경우 점검차 이용시 하부시설(도로, 철도 등) 시설한계 침범, 점검구간 우회 불가능, 2m를 초과하는 방음벽 설치, 가로등과 같은 지장물이 설치되어 굴절식 점검차와 같은 이동식 접근장비로 접근이 불가능한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99) 형하고 : 지면으로부터 교대 및 교각의 교좌장치까지의 거리

[그림1] 교량 점검통로 설치 의사결정 흐름도(2차로 초과)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도로개설사업 교량구간에 방음벽, 울타리, 고압선 등 지장물이 없어 이동식 접근장비로 점검이 가능하여 교량점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교량점검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표 5] 교량점검시설 조정내역과 같이 185,09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5] 교량점검시설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 구 분    | 당초(현재내역)<A> |    |                 | 변경(조정내역)<B> |    |                 | 증/△감<B-A> |                 |
|--------|-------------|----|-----------------|-------------|----|-----------------|-----------|-----------------|
|        | 규격          | 수량 | 사업비<br>(제경비 포함) | 규격          | 수량 | 사업비<br>(제경비 포함) | 수량        | 사업비<br>(제경비 포함) |
| 교량점검시설 | 식           | 1  | 185,090         | 식           | -  | -               | △1식       | △185,090        |

### ③ 교명주, 준공표지석 반영 부적정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구조물공 수량산출요령에 따르면 교명주는 장대교<sup>100)</sup> 및 특수교량과 같이 조형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설명판은 재질을 황동주물 또는 석재(오석)로 제작하되 중분대가 설치되는 소교량은

100) 교량연장 100m 이상 교량을 말한다.

교명판 및 설명판을 각 2개로 적용하고 중앙분리대가 미설치되는 소교량은 교명판 및 설명판 각 1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6]과 같이 교량 신축과 함께 교명주를 설계에 반영하고 준공표지석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총 22,4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6] 교명주 및 준공표지석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 구 분   | 단위 | 당 초<A> |                 | 변 경<B> |                 | 증/△감<B-A> |                 |
|-------|----|--------|-----------------|--------|-----------------|-----------|-----------------|
|       |    | 수량     | 사업비<br>(제경비 포함) | 수량     | 사업비<br>(제경비 포함) | 수량        | 사업비<br>(제경비 포함) |
| 합 계   | 개  | 3      | 22,400          | -      | -               | △3        | △22,400         |
| 교명주   | 개  | 2      | 12,510          | -      | -               | △2        | △12,510         |
| 준공표지석 | 개  | 1      | 9,890           | -      | -               | △1        | △9,890          |

## 2. 세월교 철거 계획 미수립

「하천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매년 5월 말까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시설물에 대한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 정비상태,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하천의 불법 점용 상황, 그 밖에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시설물 전반에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하천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지방하천의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장·군수에 위임사무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을 원활히 소통시킬 수 있도록 현재 하폭, 현재 하상 및 계획하상 경사, 지형과 지질, 안정하도의 유지,

연안의 토지이용상태, 기후변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여유고는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에 대한 안전값으로 주어지는 여분의 제방높이를 말하며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는 [표 7]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표 7]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

| 계획홍수량( $m^3/s$ )     | 여유고(m) |
|----------------------|--------|
| 200 미만               | 0.6이상  |
| 200 이상 ~ 500 미만      | 0.8이상  |
| 500 이상 ~ 2,000 미만    | 1.0이상  |
| 2,000 이상 ~ 5,000 미만  | 1.2이상  |
| 5,000 이상 ~ 10,000 미만 | 1.5이상  |
| 10,000 이상            | 2.0이상  |

교량의 길이는 하천폭 이상이어야 하며, 경간장은 산간 협착부라든지 그 외 하천의 상황, 지형의 상황 등에 따라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  $L=20+0.005Q$ (여기서  $L$ =경간장(m)이고  $Q$ =계획홍수량( $m^3/s$ )이다)으로 얻어지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하천관리상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표 8]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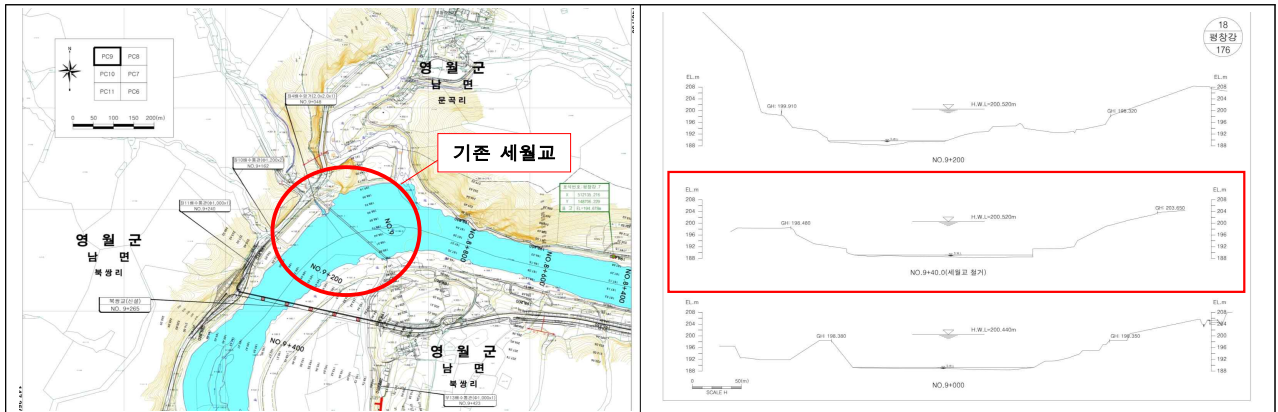
**[표 8] 계획홍수량에 따른 경간장**

| 구분                                       | 경간장    |
|------------------------------------------|--------|
| 계획홍수량이 $500m^3/s$ 미만이고<br>하천폭이 30m미만인 하천 | 12.5m  |
| 계획홍수량이 $500m^3/s$ 미만이고<br>하천폭이 30m이상인 하천 | 15m    |
| 계획홍수량이 $500\sim2,000m^3/s$ 인 하천          | 20m 이상 |

한편, 감사기간중 확인 결과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인근 기존 세월교는 평창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에 따라 [표 9]와 같이 경간장 및 여유고에 대한 기준을 확보하지 못해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 표 9 ] 교량 능력검토

| 구분  | 측점   | 경간장 (m) |           |          | 여유고 검토(m) |     |          |          | 금회<br>적용 | 비고  |
|-----|------|---------|-----------|----------|-----------|-----|----------|----------|----------|-----|
|     |      | 경간장     | 기준<br>경간장 | 검토<br>결과 | 계획<br>홍수위 | 여유고 | 교량<br>저고 | 검토<br>결과 |          |     |
| 세월교 | 9+40 | 10      | 50.8      | NG       | 200.51    | 1.5 | -        | NG       | 철거       | 영월군 |



그런데, 영월군(△과, ★과)에서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신설 교량(북쌍교) 설치로 더 이상 불필요한 평창강 횡단 세월교를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재해 발생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철거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세월교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시정] ①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용 가교 940,000천 원, 교량점검시설 185,090천 원, 교명주 및 준공표지석 22,400천원 등 총 1,147,49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중 신설 교량(북쌍교) 설치로 하천기본계획 기준에 미흡한 기존 세월교는 본 사업과 병행, 철거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건설공사 추진시 관련 법령, 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30]

## 강 원 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무릉도원(토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소

관 련 자 ① 영월군 ◀과(전 ●소) 지방○○ AZ

② 영월군 ○면(전 ●소) 지방○○ BA

내 용

영월군(●소)에서는 [표 1]과 같이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공중보건위생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방류수역인 주천강의 수질 및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무릉도원(토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표 1] 무릉도원(토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 위치        | 처리구역                 | 사업량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
| 영월군 무릉도원면 | 0.584km <sup>2</sup> | 하수처리시설 100m <sup>3</sup> /일<br>하수관로 7.5km, 배수설비 111가구 | 2020~2022 | 6,050 |

지방○○ AZ는 2019. 7. 8.부터 2021. 12. 31.까지, 지방○○ BA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각각 ●소에서 실무책임자, 실무담당자로서 영월군의 하수도기본계획 수립 및 토실분구의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무릉도원(토실)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 1. 하수처리구역외 사업 시행 부적정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르면 하수도정비수립권자<sup>101)</sup>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 이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① 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 ②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이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 ③ 하수관로의 길이를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 ④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를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 ⑤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가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설치 고시,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인가 및 법 제11조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월군(●소)에서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시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101) 「하수도법」 제5조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이다.

### [ 무릉도원(토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경위 ]

- 2018.12.28.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강원도) \* 송골구역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  
- (토실처리장) 100m<sup>3</sup>/일, (처리구역) 0.58km<sup>2</sup>, (관로) 7.387km
- 2019.12. :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승인 완료(원주지방환경청)  
- 처리장 100m<sup>3</sup>/일, 관로 7.86km, 펌프장 4개소, 111가구 정비
- 2020.3.12.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0.5.15. : 설치인가 완료(강원도) \* 하수처리시설 100m<sup>3</sup>/일, 하수관로 7.50km, 맨홀펌프장 4개소
- 2020.9.21. : 송골구역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설치 설계변경 (증 494,879천원)
- 2021.7.2. : 유량조정조(500m<sup>3</sup>/일) 신설 설계변경 (증 397,683천원)
- 2021.9.17. : 설치인가 변경 완료(강원도) \* 유량조정조 신설반영

영월군(●소)에서는 ‘무릉도원(토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 1. “영월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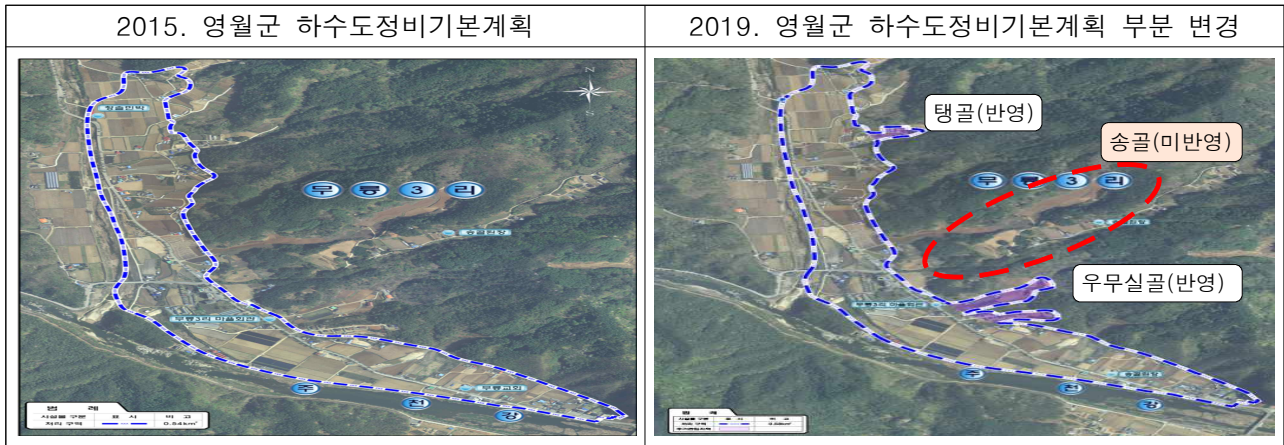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는 사유는 사업대상 지역인 토실 처리구역이 범홍천 하류에 위치하여 매년 관광인구 증가로 계획 대비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40m<sup>3</sup>/일에서 100m<sup>3</sup>/일로 변경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을 재검토하여 처리구역에 포함하고자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 2009. 1. 최종 기본계획 승인 결과에 따르면, 토실처리구역의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100m<sup>3</sup>/일로 확장되었으며 하수처리구역은 [그림 1]과 같이 처리구역에서 제외되었던 우무실골(0.032km<sup>2</sup>), 탕골(0.007km<sup>2</sup>)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반영되었으나 송골 구역은 공공하수처리 시 경제적 측면에서 337.8백만 원이 불리<sup>102)</sup>하여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영월군(●소)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송골구역을 제외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 5. 15. 강원도지사로부터 [표 1]과 같이 설치 인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하였다.

102) 공공하수처리 시 703백만 원, 개별처리 시 365.2백만 원으로 검토

[그림 1] 영월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처리구역도



그런데 영월군(●소)에서는 2020. 5. 11. 내부 결재를 통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송골구역(0.157km<sup>2</sup>)의 12가구를 사업 구역에 포함하면서 기본계획 및 강원도 지사로부터 인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인가받은 것에 [표 2]와 같이 처리구역 면적이 21.2%, 하수관로 연장이 14.8%가 증가하였음에도 기본계획 및 인가 변경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2] 하수처리구역외 송골구역 공공하수도공사 추진 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 인가 현황(2021.9.17.)                                    | 감사 현재(2022.6.24)                                     | 증감                      |
|-------|------------------------------------------------------|------------------------------------------------------|-------------------------|
| 구역도   |                                                      |                                                      | 처리구역외<br>구역확장           |
| 처리구역  | • 0.584km <sup>2</sup>                               | • 0.741km <sup>2</sup>                               | 증) 0.157km <sup>2</sup> |
| 처리용량  | • Q=100m <sup>3</sup> /일, 유량조정조 500m <sup>3</sup> /일 | • Q=100m <sup>3</sup> /일, 유량조정조 500m <sup>3</sup> /일 | -                       |
| 오수관로  | • L=7.50km(D80~200mm)                                | • L=8.80km(D80~200mm)                                | 증) 1.3km                |
| 맨홀펌프장 | • 4개소                                                | • 4개소                                                | -                       |
| 배수설비  | • 111가구                                              | • 123가구                                              | 증) 12가구                 |
| 총사업비  | • 6,059백만원(국비 4,128, 군비 1,922)                       | • 6,059백만원 + 송골구역 495백만원                             | 증) 495백만원               |

또한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 발생 되는 하수량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계획 대비 추가적인 하수발생량이 예상됨에도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인가된 100m<sup>3</sup>/일의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담보할 수 없어 유량조정조 500m<sup>3</sup>/일을 추가로 설치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영월군(●소)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환경부 장관과 협의되지 않은 하수관로 L=1.3km, 배수설비 12가구 설치에 494,879천 원, 유량조정조 설치에 397,683천 원 총 892,562천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인가권자인 강원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 하였다.

##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검토 소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sup>103)</sup>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기존 공공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103)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따라서 영월군(●소)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송골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청 등으로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투입되는 설치비용과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하수도원 인자부담금으로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대책을 마련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소)에서는 지속적인 주민 요청<sup>104)</sup>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송골지역을 토질 소규모 공공하수도에 연계처리 하고자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공사를 하면서 그에 소요된 494,879천 원에 대하여 설치 가 구별 산술적으로 산정할 경우 약 41,240천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를 검토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영월군의 세출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

104) 당시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 임의진술 내용에 따름

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과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역감독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각 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구조형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등을 통하여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역과업이 경제적이고 용역 과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 조건의 부합 여부와 공사 시행의 전반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 예산절감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하고 공사시행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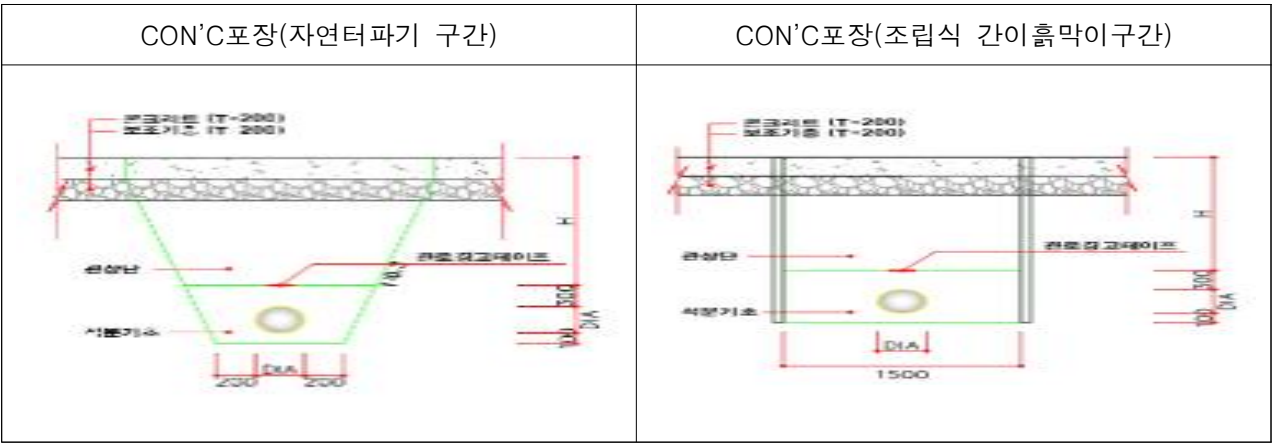
그런데 영월군(●소)에서는 송골 상수도공사와 중복구간 포장공 35,869천 원, 관기초 다짐에 19,802천 원, 배수설비에 39,701천 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95,372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하여야

함에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가. 상수도공사 중복구간 포장 미공제

영월군(●소)에서는 하수처리구역외 송골구간에 대한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그림 2]와 같이 관로매설 이후 콘크리트 포장을 계획하였다.

[그림 2] 송골구간 포장복구 계획 단면도



그런데 영월군(●소)에서는 송골 구간은 하수관로 매설이후 상수관로 매설이 계획되어 있어 콘크리트 포장복구는 상수관로 공정 이후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표 3]과 같이 35,933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계상 하였다.

[표 3] 중복구간 포장 조정 내역

(단위:천원)

| 구 분   | 단위 | 당초(현재내역)<A> |        | 변경(조정내역)<B> |        | 증/△감<B-A> |         |
|-------|----|-------------|--------|-------------|--------|-----------|---------|
|       |    | 수량          | 사업비    | 수량          | 사업비    | 수량        | 사업비     |
| 계     |    |             | 58,314 |             | 22,381 |           | △35,933 |
| 직접공사비 | 식  | 1           | 11,507 | 1           | 7,648  |           | △3,859  |
| 제경비   | 식  | 1           | 7,520  | 1           | 4,886  |           | △2,634  |
| 관급자재대 | 식  | 1           | 39,287 | 1           | 9,847  | -         | △29,440 |

나. 판기초 다짐 파다 설계

영월군(●소)에서는 처리장 압송관로 및 하수관로, 배수설비 공사 시 기초 및

관주위 부분에 석분을 포설한 이후 램머 다짐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영월군(●소)에서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하여 램머다짐이 불가하여 [표 4]와 같이 기초 및 관주위 다짐을 콤팩터로 변경 시공한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해 19,802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계상 되었다.

[표 4] 관기초 다짐 수량 조정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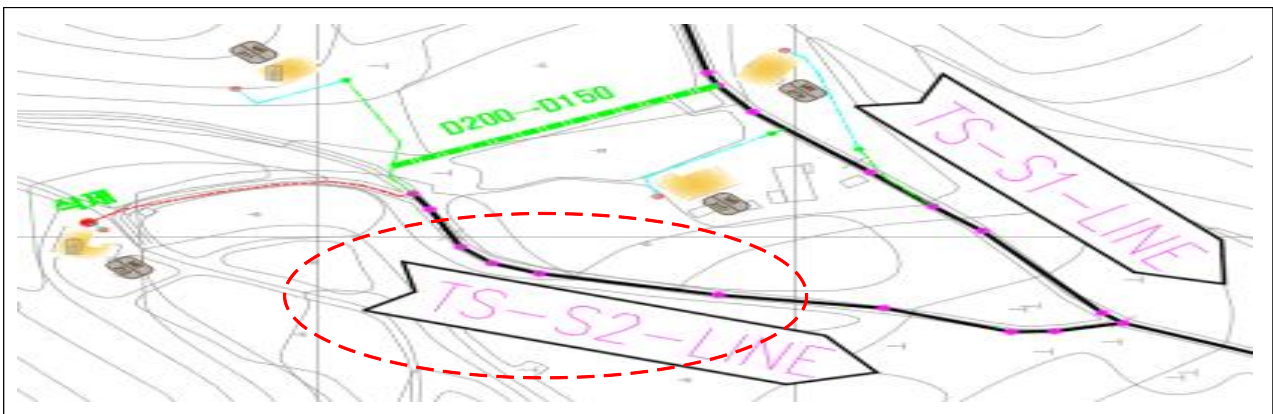
(단위:천원)

| 구 분   | 단위 | 당초(현재내역)<A> |         | 변경(조정내역)<B> |        | 증/△감<B-A> |         |
|-------|----|-------------|---------|-------------|--------|-----------|---------|
|       |    | 수량          | 사업비     | 수량          | 사업비    | 수량        | 사업비     |
| 계     |    |             | 110,642 |             | 90,840 |           | △19,802 |
| 직접공사비 | 식  | 1           | 58,900  | 1           | 48,644 |           | △10,256 |
| 제경비   | 식  | 1           | 51,742  | 1           | 42,196 |           | △9,546  |
| 관급자재대 | 식  | 1           |         | 1           |        |           |         |

#### 다. 배수설비 설치 과다 설계

영월군(●소)에서는 송골지역 S2라인 구간에 [그림 3]과 같이 2가구에 대한 배수 설비를 위해 하수관로(D200) L=173.28m를 계획하였다.

[그림 3] 송골지역 S2라인 배수설비 계획



그런데 영월군(●소)에서는 관로 토지주 반대 및 배수설비 가옥수가 당초 2가구에서 1가구로 변경되고 인근 토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으로 당초 계획한 오수

관로(D200)을 배수설비(D150) 공사로 변경 시공계획으로 [표 5]와 같이 39,752천원 (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계상 하였다.

[표 5] 배수설비 조정 내역

(단위:천원)

| 구 분   | 단위 | 당초(현재내역)<A> |        | 변경(조정내역)<B> |       | 증/△감<B-A> |         |
|-------|----|-------------|--------|-------------|-------|-----------|---------|
|       |    | 수량          | 사업비    | 수량          | 사업비   | 수량        | 사업비     |
| 계     |    |             | 48,639 |             | 8,887 |           | △39,752 |
| 직접공사비 | 식  | 1           | 14,275 | 1           | 2,915 |           | △11,360 |
| 제경비   | 식  | 1           | 10,787 | 1           | 2,405 |           | △8,382  |
| 관급자재대 | 식  | 1           | 23,577 | 1           | 3,567 | -         | △20,010 |

영월군 ◀과(전 ●소) 지방○○ AZ는 2019. 7. 8.부터 2021. 12. 31.까지 ○팀 장으로, ○면(전 ●소) 지방○○ BA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소에 서 “무릉도원(토실)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하수도기본 계획상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을 하수도기본계획 및 인가 변경 없이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공공하수도 설치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강원도 감 사규칙」 제29조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추진 중인 “무릉도원(토실)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반영하여 하수도 기본계획 및 설치 인가에 대해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추진 중 과다 계상한 포장공 35,869천 원, 관기초 다짐에 19,802천 원, 배수설비에 39,701천 원, 총 95,372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31]

# 강 원 도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횡성군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소

내 용

영월군(▽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소)에서는 발주하는 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정산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사용 기준”이라 한다)」(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sup>105)</sup>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sup>106)</sup>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용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

1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공사 ① 2020. 7. 1. 이전 → 4천만 원 ② 2020. 7. 1. 이후 → 2천만 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4호, 2019. 12. 13. 일부개정)

10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3.43%~1.20%까지 적용함.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집행기준에 따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소)에서는 [붙임 1]과 같이 총 25건의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안전시설용품 등에 50,434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집행하였음에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 2.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해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해당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소)에서는 “주천 정수장 현대화사업<sup>107)</sup>”을 준공하면서 [붙임 2]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상한 시설물정기안전점검비 3,397천 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중복지급 되었음에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소)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에 대한 확인 및 정산을 소홀히 하여 [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25건 50,434천 원, 안전관리비에 1건 3,397천 원 총 26건의 건설공사에서 53,831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정산하지 않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107) 주천면 주천리 일원에서 2018.3.1.~2021.12.31. 기간 정수장(Q=1,200㎥/일) 재건설 사업 추진

[표] 영월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부담집행 내역

(단위: 건, 천 원)

| 구분<br>기관 | 공사건수 | 산업안전보건<br>관리비지급액 | 부담집행금액 |           |       |
|----------|------|------------------|--------|-----------|-------|
|          |      |                  | 환수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 합계       | 26   | 591,200          | 53,831 | 50,434    | 3,397 |
| ▽과       | 1    | 27,282           | 10,361 | 10,361    |       |
| ◎과       | 5    | 201,799          | 22,653 | 22,653    |       |
| △과       | 1    | 3,558            | 803    | 803       |       |
| ☯과       | 2    | 53,859           | 2,107  | 2,107     |       |
| ⊕과       | 3    | 47,656           | 2,146  | 2,146     |       |
| ★과       | 6    | 135,160          | 9,150  | 9,150     |       |
| ◁과       | 2    | 23,679           | 1,397  | 1,397     |       |
| ◆과       | 2    | 9,058            | 748    | 748       |       |
| ●소       | 4    | 89,149           | 4,466  | 1,069     | 3,397 |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시정]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50,434천 원 상당액을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천 정수장 현대화사업’의 중복 지급한 시설물정기안전점검비 3,397천 원(부가세포함) 상당액에 대하여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부당 청구하여 지급받은 계약상 대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감사 규칙」 제3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 후 2개월 안에 회수 등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따라 처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자계산서 허위·수정·중복 등으로 부당 청구하여 지급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감사 규칙」 제3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 후 2개월 안에 회수 등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제347조(사기)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액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감사 규칙」 제3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 후 2개월 안에 자진신고 등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세무관련 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⑥ 아울러 감사결과 통보 후 2개월 안에 회수, 자진신고 등의 조치에 불응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⑦ 금회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3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정산 업무를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집행 현황**

( 단위: 천 원 )

| 부서명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상대자<br>(대표자) | 안전관리비<br>(계상금액) | 안전관리비<br>(집행금액) | 부당집행<br>환수금액 |
|-----|-------------------------------------------|----------------------------|----------------|-----------------|-----------------|--------------|
|     | 영월군 (25건)                                 |                            |                | 1,008,870       | 591,200         | 50,434       |
| ▽과  | 계(1건)                                     |                            |                | 27,282          | 27,282          | 10,361       |
|     | 영월군 청사 및<br>장애인 문화복지센터<br>주차장<br>확충공사(토목) | '20.04.02. ~<br>'21.11.30. | ○설             | 27,282          | 27,282          | 10,361       |
| ♠과  | 계(5건)                                     |                            |                | 217,399         | 201,799         | 22,653       |
|     | 탄광지역<br>통합관광지원센터<br>조성사업(기계)              | '19.06.10. ~<br>'21.2.28.  | (주)○천          | 21,964          | 19,194          | 4,765        |
|     | 탄광지역<br>통합관광지원센터<br>조성사업(소방)              | '19.06.10. ~<br>21.02.28.  | (주)○업          | 15,533          | 10,066          | 75           |
|     | 탄광지역<br>통합관광지원센터<br>조성사업(건축, 토목)          | '19.06.10. ~<br>21.02.28.  | ○설 주식회사        | 134,208         | 134,208         | 15,298       |
|     | 특화마을 장산<br>자연숲 편익시설<br>조성공사(건축)           | '18.12.03 ~<br>'19.12.27.  | ○화(주)          | 21,985          | 21,985          | 1,690        |
|     | 영월 스포츠파크<br>전천후 테니스장<br>조성(건축, 토목)        | '20.07.15 ~<br>'21.05.10   | (주)○하          | 23,709          | 16,346          | 825          |
| △과  | 계(1건)                                     |                            |                | 3,558           | 3,558           | 803          |
|     | 제3농공단지<br>옹벽보수공사                          | '21.02.02. ~<br>21.06.14.  | (주)○설          | 3,558           | 3,558           | 803          |
| ●과  | 계(2건)                                     |                            |                | 54,210          | 53,859          | 2,107        |
|     | 공충가공센터<br>증축공사(건축)                        | '20.04.10. ~<br>'20.12.15. | ○발(주)          | 5,731           | 5,380           | 700          |
|     | 한반도습지<br>생태문화시설<br>조성사업 건축공사              | '17.07.06. ~<br>'19.12.20. | ○업(주)          | 48,479          | 48,479          | 1,407        |
| ⊕과  | 계(3건)                                     |                            |                | 47,656          | 47,656          | 2,146        |
|     | 영월 주천강변<br>둘레길 조성사업                       | '20.03.25.~<br>'20.08.21.  | (주)○양          | 10,895          | 10,895          | -            |
|     | 산솔마을숲 조성사업                                | '19.04.12. ~<br>'19.08.09. | ○설 주식회사        | 3,726           | 3,726           | 851          |
|     | 연당구곡지방정원조<br>성사업(장기계속)-토<br>목,조경          | '18.10.24. ~<br>20.10.12.  | ○업(주)          | 33,035          | 33,035          | 1,295        |
| ★과  | 계(6건)                                     |                            |                | 515,391         | 135,160         | 9,150        |
|     | 군도16호선(꽃밭교~<br>연하2리마을회관)보<br>행환경정비사업      | '20.11.10. ~<br>'21.09.01. | ○설             | 6,002           | 6,003           | 913          |

| 부서명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상대자<br>(대표자) | 안전관리비<br>(계상금액) | 안전관리비<br>(집행금액) | 부당집행<br>환수금액 |
|-----|---------------------------------------|----------------------------|----------------|-----------------|-----------------|--------------|
|     | 남면<br>창원리(원골~명전)<br>농어촌도로 포장공사        | '21.06.21.~<br>'21.11.11.  | ○설             | 2,159           | 2,159           | 59           |
|     | 덕상천 소하천<br>정비사업(3공구)-3차분              | '20.02.03. ~<br>'20.12.28. | ○설(주)          | 17,850          | 17,850          | 3,325        |
|     | 결운천 소하천<br>정비사업 - 3차분                 | '21.03.23. ~<br>'22.03.30. | (주)○업          | 14,839          | 14,839          | 1,462        |
|     | 홍월2천 소하천<br>정비사업 - 1차분                | '21.04.30. ~<br>'22.12.02. | ○설(주)          | 11,359          | 11,359          | 1,979        |
|     | 군도9호 형개량공사<br>(분덕재터널)                 | '20.01.10.~<br>'24.12.13.  | ○설(주)          | 463,182         | 82,950          | 1,412        |
| ◁과  | 계(2건)                                 |                            |                | 23,679          | 23,679          | 1,397        |
|     | 운학1리<br>마을만들기사업                       | '20.12.07.~<br>'21.12.10.  | (주)○설          | 13,749          | 13,749          | -            |
|     | 판운2리<br>마을만들기사업                       | '21.03.26.~<br>'21.12.10.  | (주)○설          | 9,930           | 9,930           | 1,397        |
| ◆과  | 계(2건)                                 |                            |                | 10,164          | 9,058           | 748          |
|     | 한반도면 신천리<br>(구)신천교 교량<br>보수보강공사(특허공법) | '21.06.22.~<br>'22.07.18.  | (주)○길          | 6,500           | 6,500           | 448          |
|     | 영월군청사거리<br>야간경관조성 전기공사                | '19.11.25.~<br>'20.02.22.  | 주식회사 ○기        | 3,664           | 2,558           | 300          |
| ○소  | 계(3건)                                 |                            |                | 109,531         | 89,149          | 1,069        |
|     | 무릉도원면(토실)소규모<br>공공하수도<br>설치공사         | '20.04.10.~<br>'22.02.11.  | ○산(주)          | 44,594          | 39,580          | 75           |
|     | 무릉도원면 무릉리<br>지방상수도<br>확장공사(장기계속공사)    | '19.10.11.~<br>'21.06.30.  | (주)○설          | 25,018          | 9,650           | 910          |
|     | 주천정수장<br>현대화사업                        | '20.04.13.~<br>'21.12.27.  | ○설(주)          | 39,919          | 39,919          | 84           |

[붙임 2]

### 안전관리비 미정산 현황

( 단위: 천 원 )

| 부서명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상대자<br>(대표자) | 안전관리비<br>(계상금액) | 안전관리비<br>(집행금액) | 중복계상<br>금액 | 환수금액  |
|-----|----------------|-------------------------------|----------------|-----------------|-----------------|------------|-------|
| ●소  | 계(1건)          |                               |                | 33,968          | 33,968          | 3,397      | 3,397 |
|     | 주천정수장<br>현대화사업 | '20.04.13.<br>~<br>'21.12.27. | ○설(주)          | 33,968          | 33,968          | 3,397      | 3,397 |

[일련번호:32]

# 강 원 도

##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봉래산 전망·편의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                |      |    |
|----------------|------|----|
| 관 련 자 ① 영월군 ◎과 | 지방○○ | AS |
| ② 영월군 ★과(前 ◎과) | 지방○○ | AR |
| ③ 영월군 ◁과(前 ◎과) | 지방○○ | BB |
| ④ 영월군 ◎과       | 지방○○ | BC |

내 용

### [ 사업개요 ]

- 위 치: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54-3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0. ~ 2024.(4년간)
- 사 업 비: 2,996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전망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1식108)

| 층 별   | 주용도           | 면적(㎡) | 건물 높이(m) | 비 고 |
|-------|---------------|-------|----------|-----|
| 지하 1층 | 매표소, 카페, 전시시설 | 3,239 | 45       |     |
| 지상 1층 | 쉼터, 포토존       | 430   |          |     |
| 계     |               | 3,669 |          |     |



지방○○ AS는 2021.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AR은 2018. 10. 15.부터 2021. 6. 30.까지, 지방○○ BB는 2018. 4. 11.부터 2021. 5. 4.까지, 지방○○ BC는 2021. 7.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각각 ◎과에서 감독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담당자로서 봉래산-영월읍-동강 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 거점 조성 및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봉래산 전망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였다.

## 1.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공사를 시행하려면 우선 공사의 필요성,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에정지의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등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계획·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르면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축법」 제23조에 따르면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 용역계약 현황

(단위: 천 원)

| 건 명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계약상대자 |            |     | 용역종지일자<br>(중기기간)              |
|-----------------------------------|---------|------------------------------|-------|------------|-----|-------------------------------|
|                                   |         |                              | 소재지   | 업체명        | 대표자 |                               |
| 소 계                               | 289,397 |                              |       |            |     |                               |
| 봉래산 카페 및 전망시설 설치<br>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 20,644  | 2019.9.20.<br>~ 2020.3.5.    | 춘천    | (주)○경      | ○○○ | 준 공                           |
| 봉래산 전망 및 편익시설<br>계획 및 중간 설계용역(건축) | 21,322  | 2019.12.13.<br>~ 2020.02.10. | 영월    | ○소         | ○○○ | 준 공                           |
| 봉래산 전망 및 편익시설<br>토목(측량·지반)·실시설계용역 | 21,940  | 2019.12.30.<br>~ 2021.04.02. | 영월    | ○설(주)      | ○○○ | 준 공                           |
|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사업<br>실시설계용역           | 194,172 | 2020.09.28.<br>~ 2021.07.21. | 인제    | 주식회사<br>○링 | ○○○ | 2021. 7. 7.<br>(재착수 통보 시 까지)  |
|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사업<br>실시설계용역(통신·소방)    | 13,929  | 2021.11.15.<br>~ 2022.02.14. | 원주    | 주식회사<br>○지 | ○○○ | 2022. 1. 18.<br>(재착수 통보 시 까지) |
|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사업<br>실시설계용역(전기)       | 17,390  | 2021.11.15.<br>~ 2022.02.14. | 원주    | 주식회사<br>○지 | ○○○ | 2022. 1. 18.<br>(재착수 통보 시 까지)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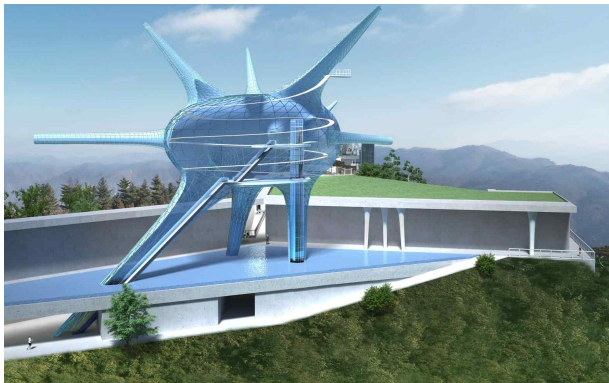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1·2]와 같이 봉래산 전망 및 편익시설 ‘계획 및 중간설계’는 건축설계 용역으로 발주(준공) 후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은 2020. 6. 17. 건축 설계공모 공고 후 2개 업체<sup>109)</sup>(안)이 제출되었

109) 설계공모 업체현황

| 접수번호 | 업체명      | 대 표 | 소재지 |
|------|----------|-----|-----|
| 1    | ○ 건축사사무소 | ○○○ | 영월  |
| 2    | ○ 건축사사무소 | ○○○ | 원주  |

으나, 평가결과 ‘당선작 없음’ 및 ‘설계공모 미선정 관련 조치계획<sup>110)</sup>’에 따라 재공모 절차진행 시 장기간 소요 등 불합리한 사유로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축 설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토목구조물 우선 설치 방침결정 후 엔지니어링사업 설계(토목·조경·구조 등)로 발주하였다.

[표 2] 용역과업 이미지 현황

| 계획·중간설계(안)                                                                         | 실시설계(안)                                                                             |
|------------------------------------------------------------------------------------|-------------------------------------------------------------------------------------|
|  |  |
| ‘건축설계’ 용역으로 발주(준공)                                                                 | ‘토목설계’ 용역으로 발주(용역중지 중)                                                              |

[표 3] 실시설계용역 변경 계약현황

(단위: 천 원)

| 건 명                     | 계약금액    |         | 계약일자           |                | 계약상대자 |            |     | 증·감<br>(진행상황)     |
|-------------------------|---------|---------|----------------|----------------|-------|------------|-----|-------------------|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소재지   | 업체명        | 대표자 |                   |
|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사업<br>실시설계용역 | 172,172 | 194,172 | 2020.9.<br>23. | 2021.4.<br>20. | 인제    | 주식회사<br>○링 | ○○○ | 증22,000<br>(용역중지) |

이후, 2021. 4. 20. 건축분야 아웃소싱을 통한 건축설계기준에 부합되는 실시설계 및 건축구조 대가반영 등<sup>111)</sup>을 사유로 (건축)설계사무소에 분리발주함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표 3]과 같이 당초 토목(구조물)설계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 후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협의를 위하여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용역<sup>112)</sup> 등 3건에 대한 용역을 중지한 사실이 있다.

110)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설계공모 미선정 관련 조치계획) [문서번호: ◎과-25355(2020.8.19.)]

111) 봉래산 전망시설 조서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및 중지해지 시행 [문서번호: ◎과-10506(2021.4.19.)]

112)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 지역개발계획 반영 추진계획 [문서번호: ◎과-7045(2022.3.16.)]

## 2. 건축인허가 등 관계법령 검토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소홀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군수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써,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은 ‘산지’로 정의하고 있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첨 1]과 같이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제1조에 따라 준보전산지에서 ‘도로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가목에 있는 ‘전망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을 근거로 하여 봉래산 전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세부 기준 및 조건’ 취지를 살펴볼 때 여기서 뜻하는 전망대는 [표 2] 실시설계(안)과 같이 설치를 위한 건축인허가 등을 수반하지 않는 (전망)데크, 산불감시(전망)초소 등 소규모시설 개념으로 적용·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예정부지는 천문대 및 교육관 시설이 기건축되어 사용 중인 곳 이기는 하나 건축법 등 현행법령상 도로가 접하여 있지 않은 ‘맹지’로써 건축행위가 불가하며, 진출입을 위한 통행로는 ‘임도(林道)’가 유일하며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임도는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행위를 위한 ‘현황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영월군 ◀과(건축)·㉠과(산지전용) 등 실무부서 역시 해당 진입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건축행위가 불가한 지역으로

진입로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축행위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의 소홀 및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봉래산 전망·편의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영월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영월군 ◎과 지방○○ AS는 2021. 1. 1.부터 현재까지 ◎과장으로 사업총괄, 지방○○ AR은 2018. 10. 15.부터 2021. 6. 30.까지, 지방○○ BC는 2021. 7. 1.부터 현재까지 각각 ○팀장으로 사업감독, 지방○○ BB는 2018. 4. 11.부터 2021. 5. 4.까지 봉래산 전망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실무자로서 설계용역 발주 및 건축행위를 위한 관계법령 검토이행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는 바, 「강원도 감사규칙」 제 29조제2항에 따른 훈계 사유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망대 신축 등 건축행위를 위한 실무부서 간 면밀한 검토(협의)를 통해 적법한 행정절차가 이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주의] 앞으로 설계용역 발주 등 사업추진 시 과업내용 및 입지조건,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시행 2018. 2. 28.] [산림청고시 제2018-25호, 2018. 2. 28., 일부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 대상산지          | 세부기준 및 조건                                                                                                                                                                                                                                                                                                                                                                                                                                                                 |
|---------------|---------------------------------------------------------------------------------------------------------------------------------------------------------------------------------------------------------------------------------------------------------------------------------------------------------------------------------------------------------------------------------------------------------------------------------------------------------------------------|
| 1.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p>가.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사설자연장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광고탑, 기념탑, 전망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 농지(전용하려는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한함), 별기장, 국방·군사시설 등 그 밖에 미와 유사한 시설</p> <p>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농지, 초지</p> <p>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p> <p>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p> <p>마. 문화재·전통사찰의 증·개축·보수 및 복원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p> |
| 2. 공익용산지      |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                                                                                                                                                                                                                                                                                                                                                                                                             |
| 3. 준보전산지      |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25호, 2018.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련번호:33]

##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건축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관내 건축물의 허가업무 처리와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표 1] 건축허가(신고) 처리 현황

(단위: 건)

| 연도별  | 계     | 건축허가 | 건축신고 | 비 고          |
|------|-------|------|------|--------------|
| 합 계  | 1,105 | 153  | 952  |              |
| 2019 | 199   | 25   | 174  | '19.9. 이후 기준 |
| 2020 | 363   | 53   | 310  |              |
| 2021 | 431   | 63   | 368  |              |
| 2022 | 112   | 12   | 100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영월군(◆과)에서는 「경관법」에 따라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표 2]와 같이 경관 (심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2] 경관심의 시행 현황

(단위: 건)

| 연도별  | 건 명                             | 심의결과   | 비 고           |
|------|---------------------------------|--------|---------------|
| 합 계  |                                 | 8 건    |               |
| 2019 | 영월 주천 고령자복지주택사업(2019-1호)        | 조건부 의결 | '19.10. 이후 기준 |
|      | 영월에코윈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2019-2호)     | 원안의결   |               |
| 2020 | 영월군 생활하수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2020-1호)    | 원안의결   |               |
|      | 구래주민 풍력발전소 조성사업(2020-2호)        | "      |               |
| 2021 | 영월에코윈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2021-1호)     | "      |               |
|      | 영월군 가족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2021-2호) | "      |               |
|      | 154KW 주천변전소 토건공사(2021-3호)       | "      |               |
| 2022 | 생활폐기물소각처리 설치사업                  | "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경관심의 미이행 건축물 현황

(단위: m<sup>2</sup>)

| 연번 | 건축<br>구분 | 허가번호             | 건축주명 | 대지위치              | 건축면적      | 연면적       | 증축연면적    | 주용도          | 허가일자       |
|----|----------|------------------|------|-------------------|-----------|-----------|----------|--------------|------------|
| 1  | 신축       | 2020-◀과-공용건축물-7  | ○부   | ○읍 ○리<br>산 ○ 외○필지 | 1,336.57  | 3,767.61  | -        | 교정시설         | 2020-12-16 |
| 2  | 신축       | 2021-◀과-협의건축물-16 | ○군   | ○읍 ○리<br>○-○      | 1,029.70  | 1,984.91  | -        | 공장시설         | 2021-09-06 |
| 3  | 증축       | 2022-◀과-협의건축물-1  | ○부   | ○읍 ○리<br>○외○필지    | 12,655.58 | 23,554.47 | 1,774.32 | 교정시설         | 2022-04-19 |
| 4  | 증축       | 2020-◀과-협의건축물-10 | ○군   | ○읍 ○리 ○           | 15,384.07 | 22,237.91 | 2,949.21 | 운동시설         | 2020-05-28 |
| 5  | 증축       | 2021-◀과-협의건축물-6  | ○군   | ○면 ○리<br>○-○ 외○지  | 1,489.36  | 2,012.04  | 1,413.20 | 업무시설         | 2021-03-29 |
| 6  | 증축       | 2020-◀과-공용건축물-4  | ○군   | ○읍 ○리 ○<br>외○필지   | 3,889.58  | 11,420.71 | 1,370.54 | 업무시설         | 2020-05-01 |
| 7  | 증축       | 2020-◀과-증축허가-4   | ○의원  | ○읍 ○리 ○<br>외○필지   | 4,250.654 | 14,179.03 | 1,222.27 | 의료시설         | 2020-06-03 |
| 8  | 증축       | 2021-◀과-협의건축물-28 | ○군   | ○면 ○리<br>○외○필지    | 3,120.86  | 3,651.6   | 1,207.86 | 자원순환<br>관련시설 | 2021-12-09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경관법」 제28조에 따르면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월군 경관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10층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 이상되는 건축물 포함)의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3]과 같이 영월읍 ○리 산○번지 일원 건축주 ○부 등 공용건축물 8개소에 대한 건축허가(협의)를 처리하면서 경관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해당업무 소관부서인 영월군(◆과)에 협의(심의)요청 등을 미이행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상실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주의] 앞으로 관계법령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관 심의 (사전협의)이행 등 건축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34]

##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드론비행시험 교육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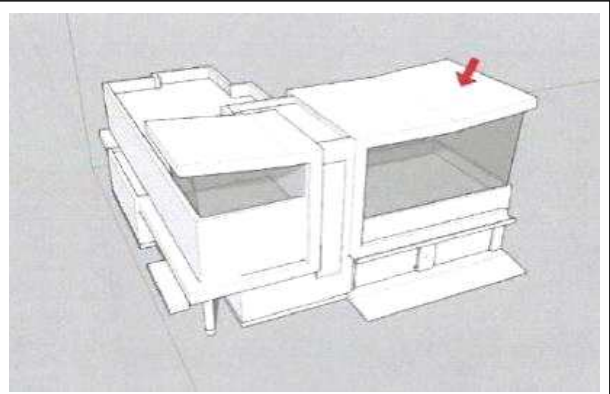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드론인재 육성을 위하여 “드론 테마파크(드론비행시험 교육장)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다.

### [ 사업개요 ]

- 위 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877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1. 12월. ~ 2022. 9월(9개월)
- 사 업 비: 300,000천 원(도비 210,000 / 군비 90,000)
- 세부내역: 일반철골구조, 드론비행시험 실내연습장 160m<sup>2</sup> 증축



### 1. 건축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공사를 시행하려면 우선 공사의 필요성,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에정지의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등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설계”는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첨 1] 과 같이 별표2<sup>113)</sup>에 따르며,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 설계용역 계약현황

(단위: 천원)

| 연번 | 용역명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계약상대자 |       |     |
|----|--------------------|-------|-------------------------------|-------|-------|-----|
|    |                    |       |                               | 소재지   | 업체명   | 대표자 |
| 1  | 드론 테마파크 조성<br>실시설계 | 7,330 | 2021. 12. 1.<br>~ 2022. 2. 8. | 영월군   | ○윤    | ○○○ |
| 2  | 드론 테마파크 조성<br>구조설계 | 3,300 | 2022. 2. 7.<br>~ 2022. 2. 17. | 원주시   | (주)○소 | ○○○ |

※ 영월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표 1]의 ‘설계용역 계약현황’과 같이 드론 테마파크(드론비행시험 교육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축 및 구조설계용역을 추진하면

113)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일부개정)

서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용역 시 해당 건축사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미이행 및 본 용역에 대한 과업의 목적과 범위, 단계별 업무 내용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과업내용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조안전성 검토를 이유로 구조설계용역을 추가로 발주하여 3,300천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 2. 건물 증축을 위한 국·공유 재산관리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소홀

「국유재산법」 제18조 등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기부를 조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시 영월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국(국토교통부) 소유의 건물(드론전용 비행시험장)에 “드론비행시험 교육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국토부 - 영월군’ 간 협약체결 후 증축 건물을 국토부에 귀속하고, 영월군에서는 관리 및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 시 건물 증축을 위한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의 면밀한 검토 소홀(국토부-국유재산 권원 사전협의, 영월군-공유재산심의회 미개최)로 인해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22. 6. 24. 감사일 현재까지 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시정] 건물 증축을 위한 국유재산 권원 확보(협의) 및 영월군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계법령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 종 류 |          | 내 용                          | 도서작성의 구분 |    |    |
|-----|----------|------------------------------|----------|----|----|
|     |          |                              | 기본       | 중급 | 상급 |
| 건축  | 공사비 개산서  |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    | ○  |
|     | 법규검토     |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  | ○  |
|     |          | 설계구상안                        | ○        | ○  | ○  |
|     | 건축계획서    | 설계개요                         | ○        | ○  | ○  |
|     |          | 배치계획                         |          | ○  | ○  |
|     |          | 평면계획                         |          | ○  | ○  |
|     |          | 입면계획                         |          | ○  | ○  |
|     |          | 단면계획                         |          | ○  | ○  |
|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    | ○  |
|     | 모형       | Sketch 또는 Study Model        |          | ○  | ○  |
|     | 건축 도면    | 배치도                          | ○        | ○  | ○  |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  | ○  |
|     |          | 각층 평면도                       | ○        | ○  | ○  |
|     |          | 입면도(2면 이상)                   | ○        | ○  | ○  |
|     |          | 단면도(종·횡단면도)                  | ○        | ○  | ○  |
|     | 심의 도서    | 심의대상인 경우                     |          |    | ○  |
| 구조  | 구조계획서    | 구조계획개요                       |          | ○  | ○  |
|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    | ○  |
|     | 심의 도서    |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    | ○  |
| 기계  | 기계설비 계획서 |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  | ○  |
|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  | ○  |
|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    | ○  |
|     |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    | ○  |
|     |          | 개략 공사비 추정                    |          |    | ○  |
|     | 심의 도서    | 심의 대상인 경우                    |          |    | ○  |
| 전기  | 전기설비 계획서 | 해당 법규 검토                     |          | ○  | ○  |
|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  | ○  |
|     |          | 추정 부하 산정                     |          |    | ○  |
|     | 심의 도서    | 심의 대상인 경우                    |          |    | ○  |
| 토목  | 토목계획서    | 개략 흙막이 계획서                   |          |    | ○  |
|     |          | 흙막이 계획도                      |          |    | ○  |
|     |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    | ○  |
|     |          | 예상공사비 계산서                    |          |    | ○  |
| 조경  | 조경계획서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    | ○  |
|     |          | 식재 계획도                       |          | ○  | ○  |
|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    | ○  |
|     | 심의 도서    | 심의 대상인 경우                    |          | ○  | ○  |
| 방재  | 심의 도서    |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    | ○  |

##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 가. 건 축

| 종 류      |                    | 내 용                                                                                                                    | 도서작성의 구분 |    |    |
|----------|--------------------|------------------------------------------------------------------------------------------------------------------------|----------|----|----|
|          |                    |                                                                                                                        | 기본       | 중급 | 상급 |
| 일반<br>사항 | 개략 시방서             | 공사용 시방서(초안)                                                                                                            |          |    | ○  |
|          | 공사비 개산서            |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br>작성                                                                                         |          |    | ○  |
|          | 건축 계획서             |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  | ○  |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  | ○  |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  | ○  |
|          |                    | 배치계획                                                                                                                   |          |    | ○  |
|          |                    | 주차 및 동선계획                                                                                                              |          |    | ○  |
|          |                    | 평·입·단면 계획                                                                                                              |          |    | ○  |
|          | 법규 검토서             |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  |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  | ○  |
|          | 안내도                |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  | ○  |
|          | 구적도                |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  | ○  |
|          | 실내재료마감표            |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  | ○  |
|          | 배치도                |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br>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br>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br>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br>물과의 관계 | ○        | ○  | ○  |
|          | 주차 계획도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br>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br>및 구조                                                           | ○        | ○  | ○  |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  | ○  |
|          | 각층 및 지붕 평<br>면도    |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br>승강기 위치                                                                                      | ○        | ○  | ○  |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  | ○  |
|          | 입면도(2면 이상)         |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부마감<br>재료                                                                                       | ○        | ○  | ○  |
|          | 단면도(중 · 횡 단<br>면도) |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  | ○  |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  | ○  |
|          | 투시도                | 투시도 또는 조감도                                                                                                             |          | ○  | ○  |

| 종 류     |                      |                       | 내 용                      | 도서작성의 구분 |    |    |
|---------|----------------------|-----------------------|--------------------------|----------|----|----|
|         |                      |                       |                          | 기본       | 중급 | 상급 |
| 상세<br>도 | 수직<br>동선<br>상세도      | 코아 상세도                |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br>위치 |          |    | ○  |
|         |                      | 계단평면 · 단면<br>상세도      |                          |          | ○  | ○  |
|         |                      | 주차경사로<br>평 · 단면상세도    |                          |          |    | ○  |
|         |                      | 주차리프트<br>평 · 단면상세도    |                          |          |    | ○  |
|         | 부분<br>상세도            | 지상층 외벽 평<br>· 입 · 단면도 |                          |          | ○  | ○  |
|         |                      | 지하층 부분 단면<br>상세도      |                          |          | ○  | ○  |
|         | 천정도                  | 천정 평면도                |                          |          |    | ○  |
|         | 창호도                  | 창호 평면도                |                          |          |    | ○  |
|         |                      | 창호 잡철물                |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    | ○  |
| 기타      | 정 화 조                | 정 화 조 평면<br>· 단면도     |                          | ○        | ○  | ○  |
|         |                      | 용량 계산서                |                          | ○        | ○  | ○  |
|         | 특수<br>분야<br>계획<br>검토 | 차음 · 방음, 방<br>진       |                          |          |    | ○  |
|         |                      | 무대 · 조명               |                          |          |    | ○  |
|         |                      | 전시 · 미술장식품            |                          |          |    | ○  |
|         |                      | 분수                    |                          |          |    | ○  |
|         |                      | 주방                    |                          |          |    | ○  |
|         |                      | 음향                    |                          |          |    | ○  |

## 나. 구 조

| 종 류      |                              | 내 용                                 | 도서작성의 구분 |    |    |
|----------|------------------------------|-------------------------------------|----------|----|----|
|          |                              |                                     | 기본       | 중급 | 상급 |
| 일반<br>사항 | 개략 시방서                       |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    | ○  |
|          | 구조 계산서                       |                                     |          | ○  | ○  |
|          | 설계 설명서                       |                                     |          | ○  | ○  |
| 도면       | 기초 일람표                       |                                     | ○        | ○  | ○  |
|          | 구조 평면도                       |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  | ○  |
|          | 가구도                          |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    | ○  |
|          | 앵커배치도 및<br>BASE PLATE<br>설치도 |                                     |          |    | ○  |
|          | 기둥 일람표                       |                                     | ○        | ○  | ○  |
|          | 보 일람표                        |                                     | ○        | ○  | ○  |
|          | 슬래브 일람표                      |                                     | ○        | ○  | ○  |
|          | 옹벽 일람표                       |                                     |          | ○  | ○  |
|          | 계단배근 일람표                     |                                     |          | ○  | ○  |
|          | 잡배근 일람표                      |                                     |          |    | ○  |
|          | 주심도                          |                                     |          | ○  | ○  |

###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 가. 건 축

| 종 류   |                  |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    |
|-------|------------------|-------------------|------------|----------|----|----|
|       |                  |                   |            | 기본       | 중급 | 상급 |
| 일반 사항 | 공사 시방서           |                   |            | ○        | ○  | ○  |
|       | 설개 개요            |                   |            | ○        | ○  | ○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          | ○  | ○  |
|       | 각종 계산서           |                   |            | ○        | ○  | ○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        | ○  | ○  |
| 일반 도면 | 표지               |                   |            | ○        | ○  | ○  |
|       | 도면 목록표           |                   |            | ○        | ○  | ○  |
|       | 안내도              |                   |            | ○        | ○  | ○  |
|       | 구적도              |                   |            | ○        | ○  | ○  |
|       | 지적도              |                   |            | ○        | ○  | ○  |
|       | 면적 산출표           |                   |            | ○        | ○  | ○  |
|       | 대지 종 · 횡단면도      |                   |            | ○        | ○  | ○  |
|       | 배치도              |                   | 1/100이상    | ○        | ○  | ○  |
|       | 주차 계획도           |                   | 1/100이상    |          | ○  | ○  |
|       | 평면도              |                   | 1/100이상    | ○        | ○  | ○  |
|       | 입면도(2면 이상)       |                   | 1/100이상    | ○        | ○  | ○  |
|       | 단면도(종 · 횡단면도 등)  |                   | 1/100이상    | ○        | ○  | ○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                   | 1/100이상    | ○        | ○  | ○  |
| 상세 도면 | 수직 동선<br>관련 상세도  | 코아 평면상세도          | 1/5 ~ 1/50 |          | ○  | ○  |
|       |                  | 계단 평 · 단면상세도      | 1/5 ~ 1/50 | ○        | ○  | ○  |
|       |                  | 승강기.샤프트 평 · 단면상세도 | 1/5 ~ 1/50 |          | ○  | ○  |
|       |                  | 주차 경사로 평 · 단면상세도  | 1/5 ~ 1/50 |          | ○  | ○  |
|       |                  | 주차 리프트 평 · 단면상세도  | 1/5 ~ 1/50 |          | ○  | ○  |

| 종 류      |            |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    |
|----------|------------|-----------------------------------|-----------|----------|----|----|
|          |            |                                   |           | 기본       | 중급 | 상급 |
| 상세<br>도면 | 부분 상세도     | 주요부분 상세도                          | 1/5~1/50  | ○        | ○  | ○  |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 1/5~1/50  |          |    | ○  |
|          |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 1/5~1/50  |          |    | ○  |
|          |            | 샷다 상세도                            | 1/5~1/50  |          |    | ○  |
|          |            | 핏트 상세도                            | 1/5~1/50  |          |    | ○  |
|          |            | 발코니 상세도                           | 1/5~1/50  |          | ○  | ○  |
|          |            | 출입구 상세도                           | 1/5~1/50  |          | ○  | ○  |
|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 1/5~1/100 |          | ○  | ○  |
|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 1/5~1/100 |          |    | ○  |
|          |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 1/5~1/100 |          |    | ○  |
|          | 창호도        | 창호 일람표                            | 1/5~1/50  |          | ○  | ○  |
|          |            | 창호 평면도                            | 1/5~1/50  |          | ○  | ○  |
|          |            | 창호 상세도                            | 1/5~1/50  |          |    | ○  |
|          |            | 창호 입면도                            | 1/5~1/50  |          |    | ○  |
|          |            | 창호 잡철물 목록                         | 1/5~1/50  |          |    | ○  |
|          | 천정도        | 각층 천정 평면도                         | 1/5~1/50  |          |    | ○  |
|          |            | 천정 상세도                            | 1/5~1/50  |          |    | ○  |
|          |            | 부분 상세도                            | 1/5~1/50  |          |    | ○  |
|          |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 1/5~1/50  |          |    | ○  |
|          | 내부 상세도     | 로비바닥 패턴도                          | 1/5~1/50  |          |    | ○  |
|          |            | 로비 전개도                            | 1/5~1/50  |          |    | ○  |
|          |            | 주요실 전개도                           | 1/5~1/50  |          |    | ○  |
|          |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 1/5~1/50  |          |    | ○  |
|          |            | 화장실 전개 상세도                        | 1/5~1/50  |          |    | ○  |
|          |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 1/5~1/100 |          |    | ○  |
|          |            |                                   |           |          |    |    |
|          | 실내부위       | 실내마감 상세도                          | 1/5~1/50  |          |    | ○  |
|          | 부품도        | 각 부품도                             | 1/2~1/50  |          |    | ○  |
| 기타       | 정화조        | 건축용 평·단면도                         | 1/5~1/100 |          | ○  | ○  |
|          |            | 각종 설비도                            |           |          |    | ○  |
|          |            | 계산서                               |           |          |    | ○  |
|          | 특수분야<br>도면 |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           | 별도대가업무   |    |    |

## 나. 구 조

| 종 류   |                            |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    |
|-------|----------------------------|-----------------|--------------|----------|----|----|
|       |                            |                 |              | 기본       | 중급 | 상급 |
| 일반 사항 |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        | ○  | ○  |
|       | 시방서                        |                 |              | ○        | ○  | ○  |
|       | 설계 설명서                     |                 |              |          | ○  |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              | ○        | ○  | ○  |
|       | 구조 평면도                     |                 | 1/30 ~ 1/200 | ○        | ○  | ○  |
|       | 구조 단면도                     |                 | 1/30 ~ 1/200 | ○        | ○  | ○  |
|       | 기초일람표                      |                 | 1/30 ~ 1/100 | ○        | ○  | ○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 1/30 ~ 1/100 |          | ○  | ○  |
|       | 기둥 일람표                     |                 | 1/30 ~ 1/100 | ○        | ○  | ○  |
|       | 보 일람표                      |                 | 1/30 ~ 1/100 | ○        | ○  | ○  |
|       | 슬래브 일람표                    |                 | 1/30 ~ 1/100 | ○        | ○  | ○  |
|       | 옹벽 일람표                     |                 | 1/30 ~ 1/100 | ○        | ○  | ○  |
|       | 계단배근 일람표                   |                 | 1/30 ~ 1/100 | ○        | ○  | ○  |
|       | 잡배근 일람표                    |                 | 1/30 ~ 1/100 | ○        | ○  | ○  |
|       | 주심도                        |                 | 1/30 ~ 1/200 | ○        | ○  | ○  |
| 상세도   | 계단 및 코아 상세도                | 계단 상세도          | 1/30 ~ 1/50  | ○        | ○  | ○  |
|       |                            | 경사로 상세도         | 1/30 ~ 1/50  | ○        | ○  | ○  |
|       |                            | 코아 상세도          | 1/30 ~ 1/50  | ○        | ○  | ○  |
|       | 접합 상세도                     | 기둥접합 상세도        | 1/5 ~ 1/50   | ○        | ○  | ○  |
|       |                            | 보접합 상세도         | 1/5 ~ 1/50   | ○        | ○  | ○  |
|       |                            | BRACE접합 상세도     | 1/5 ~ 1/50   | ○        | ○  | ○  |
|       |                            | DECK PLATE 설치도  | 1/5 ~ 1/50   | ○        | ○  | ○  |
|       |                            | STUD BOLT 설치도   | 1/5 ~ 1/50   | ○        | ○  | ○  |
|       |                            | ANCHOR BOLT 상세도 | 1/5 ~ 1/50   | ○        | ○  | ○  |
|       | 잡 상세도                      |                 | 1/5 ~ 1/50   |          |    | ○  |
|       | 가구도                        |                 | 1/5 ~ 1/50   |          |    | ○  |
|       | 각부구조 상세도                   |                 | 1/5 ~ 1/50   |          |    | ○  |
|       | 기타 상세도                     | 보 OPENING 위치도   | 1/5 ~ 1/50   |          |    | ○  |
|       |                            | 캐노피             | 1/5 ~ 1/50   |          |    | ○  |
|       |                            | 파라펫             | 1/5 ~ 1/50   |          |    | ○  |
|       |                            | TRUSS           | 1/5 ~ 1/50   |          |    | ○  |

# 강 원 도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영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월군(△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하기 위해 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하고 있다.

### 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관리 소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하며,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작성 후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3조, 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영월군(△과)에서는 [별첨 1]과 같이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미제출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sup>114)</sup>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2. 가스시설 정기검사 관리 소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1항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월군(△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제4항 9호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별첨 2] ‘가스시설 정기검사 부적합(미시정)업소 현황’ 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통보한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 부적합(미시정)업소에 대하여 개선권고만 하였을 뿐, 권고 후 경과일수 161일 이상의 21개소에 대하여 정기검사 부적합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이나 지속적인 정기검사 미이행 시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등 가스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114)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위반        |
| 13)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제13호 | 사업정지 또는 제한3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10일 | 사업정지 또는 제한20일 |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

##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시정]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통보한 정기검사 부적합(미시정)업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액화석유가스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제출 세부내역**

2019년

○: 제출, ×: 미제출, △ 판매량

x

| 구분 | 업소명 | 사업소주소       |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    |    |    |    |    |    |    |    |     |     |     | 비고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  | ○사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스  | 영월군 ○읍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사 | 영월군 ○읍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 제출, ×: 미제출, △ 판매량x

| 구분 | 업소명 | 사업소주소       |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    |    |    |    |    |    |    |    |     |     |     | 비고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  | ○사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스  | 영월군 ○읍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사 | 영월군 ○읍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년

○: 제출, ×: 미제출, △ 판매량x

| 구분 | 업소명  | 사업소주소       |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    |    |    |    |    |    |    |    |     |     |     | 비고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  | ○사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가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가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가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가스  | 영월군 ○읍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상사 | 영월군 ○읍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 제출, ×: 미제출, △ 판매량x

| 구분 | 업소명 | 사업소주소       |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    |    |    |    |    |    |    |    |     |     |     | 비고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  | ○사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2  | ○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3  | ○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4  | ○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5  | ○스  | 영월군 ○면 ○로 ○ | ×                | ×  | ×  | ×  | ×  | ×  |    |    |    |     |     |     |    |
| 6  | ○스  | 영월군 ○읍 ○로 ○ | ×                | ×  | ×  | ×  | ×  | ×  |    |    |    |     |     |     |    |
| 7  | ㈜○사 | 영월군 ○읍 ○로 ○ | ×                | ×  | ×  | ×  | ×  | ×  |    |    |    |     |     |     |    |

[별첨 2]

**가스시설 정기검사 부적합(미시정)업소 현황**

| 순번 | 구 분        | 개선권고 통보     | 위반내용                                  | 경과일수 | 행정처분 |
|----|------------|-------------|---------------------------------------|------|------|
| 계  | 미이행 21개소   |             |                                       |      |      |
| 1  | ○트         | 2021.1.29.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비상전력설비 부적정 등)          | 504일 | 미이행  |
| 2  | ○택         | 2021.7.21.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방법)        | 331일 | 미이행  |
| 3  | ○빌         | 2021.12.10.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미검사 가스용품 사용 등)         | 189일 | 미이행  |
| 4  | ○부<br>(○대) | 2022.1.7.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미검사 가스용품 사용 등)         | 161일 | 미이행  |
| 5  | ○사<br>○동   | 2021.7.21.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배관 가압구 미설치 등)          | 331일 | 미이행  |
| 6  | ○택         | 2021.8.13.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가연성 건축물 이격거리 부적정 등)    | 308일 | 미이행  |
| 7  | ○택         | 2021.8.13.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배기통 설치 부적정 등)          | 308일 | 미이행  |
| 8  | ○택         | 2021.9.27.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밀폐식 보일러 급배기설비기준 부적정 등) | 263일 | 미이행  |
| 9  | ○택         | 2021.9.27.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밀폐식 보일러 급배기설비기준 부적정 등) | 263일 | 미이행  |
| 10 | ○택         | 2021.9.27.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배관 가압구 미설치 등)          | 263일 | 미이행  |
| 11 | ○택         | 2021.9.27.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밀폐식 보일러 급배기설비기준 부적정 등) | 263일 | 미이행  |
| 12 | ○택         | 2021.9.27.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밀폐식 보일러 급배기설비기준 부적정 등) | 263일 | 미이행  |
| 13 | ○택         | 2021.9.27.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손상방지 방호조치 미실시 등)       | 263일 | 미이행  |
| 14 | ○택         | 2021.9.27.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손상방지 방호조치 미실시 등)       | 263일 | 미이행  |
| 15 | ○택         | 2021.9.27.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가연성 건축물 이격거리 부적정 등)    | 263일 | 미이행  |
| 16 | ○택         | 2021.9.27.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소형저장탱크 긴급연락처 미게시 등)    | 263일 | 미이행  |
| 17 | ○택         | 2021.9.27.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손상방지 방호조치 미실시 등)       | 263일 | 미이행  |
| 18 | ○택         | 2021.9.27.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배기통 설치 부적정 등)          | 263일 | 미이행  |
| 19 | ○택         | 2021.9.27.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손상방지 방호조치 미실시 등)       | 263일 | 미이행  |
| 20 | ○택         | 2021.12.10.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배기통 설치 부적정 등)          | 189일 | 미이행  |
| 21 | ○회         | 2021.12.10. | 부적합 내역 미시정<br>(가스계량기 설치높이 부적정 등)      | 189일 | 미이행  |